

2019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인도 종합보고서

2019. 12.

주요 수출대상국(인도)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종합보고서

Contents

조사요약	1
일러두기	5

제1장 조사 개요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11
1. 조사의 필요성	
2. 조사 목적	
3. 기대 효과	
제2절. 조사내용 및 방법	13
1. 조사대상 선정 및 설계	
2. 가공식품 교역 현황 및 수입식품 관리제도	
3.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법규 정보 수집	
4. 기타 식품안전 및 수입식품 관련 이슈	
제3절. 조사대상 가공식품	15

제2장 조사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인도 개요	23
1. 국가 개요	
2. 한국과의 관계	
3. 식품관련 규정 및 기관	
제2절. 가공식품 교역 현황	35
1. 인도 식품시장 동향	
2. 한국 식품 수출 동향 및 전망	

주요 수출대상국(인도)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종합보고서

Contents

제3절. 수입식품 관리제도	47
1. 수입 규제	
2. 수입 절차	
3. 인증 제도	
4. 관세제도	
제4절. 식품 표시	67
1. 식품표시 및 포장 개요	
2. 표시사항	
3. 식품표시 예시	
제5절.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115
1. 인도 식품첨가물/유해물질 분류	
2. 식품첨가물 관련 규정	
3. 유해물질 관련 규정	
4. 식품첨가물/유해물질 기준 데이터베이스 활용	
제6절. 기타 식품안전 및 수입식품관련 이슈	171
1. 식품관련 주요 비관세 장벽	
2. 식품안전 이슈	
3. 인도 수출 관련 Q & A	
참고문헌	183

주요 수출대상국(인도)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종합보고서

Contents

부 록

1. 대한민국 신식품공전 식품 분류	187
2. 수입 금지 품목 리스트	197
3. 수입 전매 품목 리스트	201
4. 인도 화물 운송 관련 사항	205
5. 인도 통관 및 관세 기타 사항	209
6. 주요 식품 관세율 현황	213
7. 주요 국가 통관 거부 현황	215

표

[표 1-1] 우리나라 식품공전에서 분류하는 가공식품 분류	16
[표 2-1] 오프라인 식료품 채널 수	41
[표 2-2] 인도의 가공식품 수입현황	44
[표 2-3] 최근 4년 간 對 인도 식품 수출입 현황	45
[표 2-4] 對 인도 주요 부류별 가공식품 수출 동향	45
[표 2-5] 최근 2년 간 對 인도 식품 수출 Top5 품목 목록	45
[표 2-6] 인도 수출입 제한/금지 품목	48
[표 2-7] 인도 수입 절차	49
[표 2-8] 인도 통관 시 필요 서류	51
[표 2-9] 인도 수입 통관절차	52
[표 2-10] 인도 표준청(BIS) 제품등록 절차	59
[표 2-11]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 제품 등록 절차	60
[표 2-12] 관세 항목별 세율 및 관세액	64

주요 수출대상국(인도)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종합보고서

Contents

[표 2-13] 수입통관 시 CEPA 체크리스트	65
[표 2-14] 인도의 식품 기본 표시사항 (붉은색)	74
[표 2-15] 상업 목적용 라벨링 표시사항 (초록색)	74
[표 2-16] 성분과 분류 제목	76
[표 2-17] 한국 식품공전 분류에 따른 인도 식품첨가물 식품유형 분류	117
[표 2-18] 한국 식품공전 분류에 따른 인도 유해물질 식품유형 분류	139
[표 2-19]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검색 결과 예시	169
[표 2-20] 유해물질 사용기준 검색 결과 예시	169

그림

[그림 1-1] 조사 목적 및 개요	12
[그림 2-1] 인도 식품관련 법·규정 및 관련기관	32
[그림 2-2] 인도 식품유통시장 경로	41
[그림 2-3] 인도의 제품인증제도 구분과 관련기관	57
[그림 2-4] 식품첨가물/유해물질 기준 DB 수출지원정보 사이트(aT Kati) ..	168

조사요약

인도는 29개 주와 7개 중앙정부 자치령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으로, 영토는 328만 7,260km²로 남한 면적의 33배이며, 인구는 2017년 기준 13억 1,689만 명이다. 민족은 아리안족, 드라비다족, 몽골족 및 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는 힌디어와 영어 외 21개의 공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식품관련 규정은 식품안전표준법을 근거로 보건가족복지부 산하 식품안전표준청(FSSAI)에서 식품안전표준규정(Food Safety and Standards Regulations)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규정도 이 표준규정 내 세부규정으로 제정되어 있다

인도는 복잡한 인종적 특성과 언어 및 종교, 소득 양극화와 카스트 제도 등 다양성이 공존하고 있는 시장이다. 경제성장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확대되고 소비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인구의 상당수가 젊은 연령층이기 때문에 미래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 정치 등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과거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위한 정부의 보호 정책 등으로 인해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으며, 소비에서도 이들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다

증가하는 중산층 인구, 1인당 소득의 증가,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 등으로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가공식품은 전체 식품 산업에서 약 5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식품 산업부문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인다. 가공식품의 수입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글로벌 식품기업이 다수 진출하여, 몇몇 분야에서는 인도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가공식품 유통시장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비조직화/영세부문이 전자상거래의 도입으로 빠르게 조직화·대형화되고 있어, 소비자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 아마존, 월마트 등이 인도 식품유통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미 진출해 있는 글로벌기업 또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소득상승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고, 바쁜 생활패턴으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확산하면서 간편 가공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도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해 가격 위주로 시장이 편재되어 있으나,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고가 제품의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 하나로 IT 활용률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식품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인도는 세계에서 채식주의자가 가장 많으며, 이들의 육류 섭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족한 단백질 섭취를 위해 유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해 성공을 거둔 바 있기 때문에 한국 제품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한국 제품과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상황이며, 인도 바이어에게 한국 제품은 품질은 좋지만, 가격이 비싼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튜브, 페이스북, SNS 콘텐츠를 통해 한국 식품의 인지도가 높아져 한식 소비가 현지인에게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인도 수출 품목 중에서 금액 기준으로 가장 급격하게 수출액이 증가한 품목군은 주류, 면류, 소스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 통관 시,인도 표준청 인증, 동식물 허가 및 검역 확인서, 식품안

전표준청의 표시 및 포장 규정 등 각종 규정 및 인증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외 식품기업들은 수입식품 관련 규정 중 식품 라벨링(Labelling)을 제일 큰 애로사항으로 거론하고 있다

2016년 1월 식품안전표준규정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수입자는 반드시 해외무역청에 식품 수입자로 등록하고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 파트너를 구하는 경우 라이선스 취득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살아있는 동물 및 신선육, 냉장 및 냉동육, 가금류와 계란분말, 유제품 등의 동물성 제품 및 부산물 등은 검역 절차를 필히 거쳐야 하며, 인도 정부에서 발행한 위생 수입 허가 없이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인도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항만보건소(PHO)에서 샘플 검사를 받고 식품안전표준청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품 통관에 있어서 인증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샘플링 테스트를 위한 실험 시설이 부족해 검사 대기 중인 제품은 유료 보관창고에 장시간 방치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식품첨가물규정 목록에 제시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 관련 제도를 살펴봐야 한다. 식품안전표준청은 2018년에 관련법에 규정되지 않은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따라서 식품안전표준청을 통해 수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과제의 수행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수출진흥정책 및 수출전략 수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향후 조사 기간을 확대하고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러두기

1. 조사 진행 단계

조사 진행 단계	내용
1. 조사계획 및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기본 방향 설정 · 조사대상 항목 설정 및 조사 계획 수립 · 전문가 자문을 통한 조사 대상 및 항목 선정
2. 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현황조사, 면접조사 등 · 전문가 인터뷰, 자문 등을 통한 자료 조사 · 전문가, 유관기관 협조 요청 및 방문조사
3. 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된 자료 정리 및 분류 · 자료에 대한 분석 · 분석결과 해석 및 활용을 위한 전문가, 기업 등 관계자 인터뷰와 자문
4.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내용과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에 관한 보고서 작성

2. 조사 내용

- 인도 식품 관련 법률 및 기관
- 인도 가공식품에 관한 일반현황
- 인도 수입식품 관리제도
- 인도 식품표시제도
- 인도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
- 기타 식품안전 및 수입식품 관련 이슈

3. 조사 방법

3.1. 온라인 검색을 통한 문헌, 홈페이지 및 각종 자료 조사

- 온라인 사이트 및 정보 검색
- 관련 문헌, 연구, 정보 검색 및 수집
- 수입식품 관련 법규 및 규정집 정보 수집
- 인도 정부 기관 홈페이지 자료 수집

3.2. 전문가 및 관계자 인터뷰 조사

- 식품 제조, 유통 관련 업계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 협조
- 관련업체 방문 및 현장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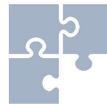
3.3 자료 취합 및 보고서 작성

- 수집된 자료 취합 및 내용 분류
- 분류된 자료를 토대로 장별, 절별 내용 구성 및 보고서 작성
- 추가적인 자료 보완과 보고서 본문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 및 자료 부록으로 취합
- 정부 자료 및 관련 법규나 규정 정보 번역 추가

3.4 검토 및 수정·보완

- 작성된 보고서 내용 검토 및 관련 전문가 검토를 통해 오류 및 수정·보완사항 도출
- 지적된 내용과 실제 자료 비교·검토 후 필요 시 수정 보완
- 번역 자료 및 내용 검토·확인
- 최종 검토

제1장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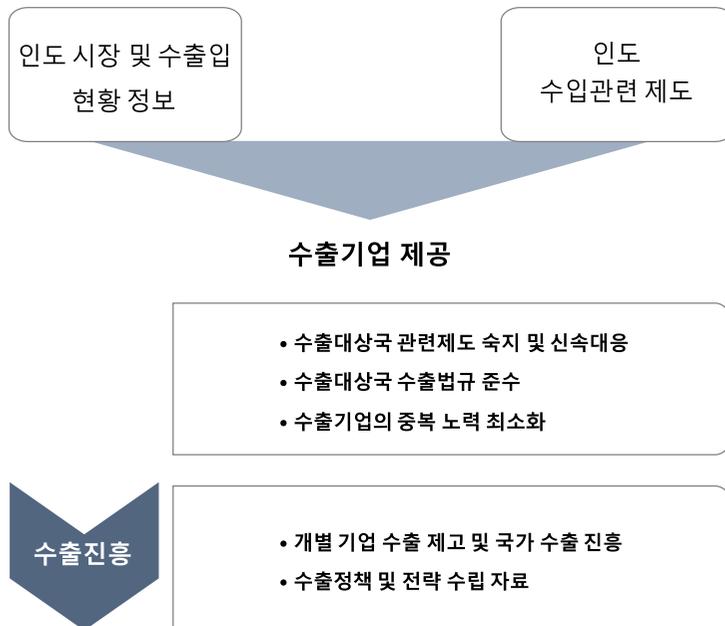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조사의 필요성

- 주요 수출국의 식품 관련 규정이 상이하고 수시로 변경되어 다양한 식품원료와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수출과정에서 부적합 등 수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더불어, 식품관련제도 및 절차 등의 미숙지로 인한 통관 억류 및 부적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저하되어 중·장기적으로 식품 수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정보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에 대한 정보를 통해 제품 개발단계에서 정보 활용을 독려하고 예상되는 통관 상의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국제무역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다양화,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주요 수출국의 식품 수입 규정에 대한 정보, 특히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업데이트가 시급한 실정임
- 현재 수행되고 있는 주요 수출국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 변동사항 업데이트와는 별개로 새롭게 추가되는 국가의 경우 국가사항, 식품안전 기관 및 주요법규,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 주요 규정, 식품안전 관련 기타사항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한 권의 보고서로 수집할 필요성이 제기됨

□ 2. 조사 목적

- 인도의 수입 관련 법규·정보 수집 및 식품첨가물과 유해물질 주요 규정 정보를 제공하여, 가공식품 수출 시 상이한 식품 제도 및 규제로 인한 통관 상의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는 데 활용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또한, 수출기업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수출 법규 위반 방지와 신속한 대응 및 개별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중복 노력을 최소화하며, 수출 정책 및 수출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도출하는 것이 그 목적임



[그림 1-1] 조사 목적 및 개요

□ 3. 기대 효과

- 인도의 관련 제도 및 정보 제공으로 수출 시 신속 대응
- 가공식품 품목에 대한 인도 관련규정 준수
- 식품첨가물 DB 구축 등 정보 제공으로 개별기업의 정보 수집 중복 노력 최소화
-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및 수출 효율화로 국내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 수출 정책 및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수출 진흥에 기여
- 기업 및 국가의 대외 신뢰도 증대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제2절. 조사내용 및 방법

□ 1. 조사대상 선정 및 설계

- 선정방법
 -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수입 관련 법규 정보와 식품첨가물과 유해물질 규정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식품 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를 선정함
 - 식품업체의 요구사항에 따라 조사대상 가공식품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여 조사 진행

- 조사 설계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보고서의 구조 및 내용 확정
 - 식품 가공기업 및 수출회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 2. 가공식품 교역 현황 및 수입식품 관리제도

- 조사내용
 - 인도 수·출입 개요 및 양국 간의 교역상황
 - 수입검사제도(사전준비사항, 수입허가사항, 검역 및 통관절차 등)
 - 수입관세 및 식품표시제도
 - 식품관련 정부기관 내역(기관명, 홈페이지 등)

□ 3.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법규 정보 수집

- 조사내용
 - 인도 가공식품과 기준·규격(정의 및 분류, 식품기준·규격 등)
 - 한국과 인도의 가공식품 품목별 첨가물 규정현황(사용기준, 금지첨가물 종류 및 비교 등)

□ 4. 기타 식품안전 및 수입식품 관련 이슈

- 조사내용

- 식품안전 이슈
- 수입식품 부적합 사례
- 인도 수출 관련 기타 사항
- 조사방법
 - 문헌조사, 전문정보사이트, 현지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제3절. 조사대상 가공식품

- 한국의 (신)식품공전을 기준으로 인도에서 규정하는 가공식품에 대해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 등을 조사
 - 부록 1에 우리나라 식품공전 식품 분류가 제시되어 있음
 - 인도의 가공식품 분류체계는 한국의 가공식품 분류기준과 상이하기 때문에 국내 분류유형을 기준으로 이에 매칭되는 인도 가공식품별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 법규 정보 등을 작성함
- 수출기업에 필요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국내 주요 식품제조업체의 주요 식품 유형, 기업의 주요 관심 가공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 등의 의견 수렴

[표 1-1] 우리나라 식품공전에서 분류하는 가공식품 분류

대분류	중분류	식품유형 개수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5
2. 병과류	2-1. 아이스크림류	5
	2-2. 아이스크림믹스류	5
	2-3. 병과	1
	2-4. 얼음류	2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3-1. 코코아가공품류	4
	3-2. 초콜릿류	5
4. 당류	4-1. 설탕류	2
	4-2. 당시럽류	1
	4-3. 올리고당류	2
	4-4. 포도당	1
	4-5. 과당류	2
	4-6. 엿류	3
	4-7. 당류가공품류	1
5. 잼류	-	2
6. 두부류 또는 묵류	-	4
7. 식용유지류	7-1. 식물성유지류	20
	7-2. 동물성유지류	5
	7-3. 식용유지가공품	8
8. 면류	-	4
9. 음료류	9-1. 다류	3
	9-2. 커피	1
	9-3. 과일·채소류음료	3
	9-4. 탄산음료류	2
	9-5. 두유류	2
	9-6. 발효음료류	3
	9-7. 인삼, 홍삼음료	1
	9-8. 기타음료	2
10. 특수용도식품	10-1. 조제유류	2
	10-2. 영아용 조제식	1
	10-3. 성장기용 조제식	1
	10-4.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1
	10-5. 기타영·유아식	1
	10-6.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3
	10-7.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

대분류	중분류	식품유형 개수
	10-8. 임신·수유부용식품	1
11. 장류	-	14
12. 조미식품	12-1. 식초	2
	12-2. 소스류	4
	12-3. 카레(커리)	2
	12-4.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2
	12-5. 향신료가공품	2
	12-6. 식염	6
13. 절임류 또는 조림류	13-1. 김치류	2
	13-2. 절임류	2
	13-3. 조림류	1
14. 주류	-	12
15. 농산가공식품류	15-1. 전분류	2
	15-2. 밀가루류	2
	15-3.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2
	15-4. 시리얼류	1
	15-5. 찌쌀	1
	15-6. 효소식품	1
	15-7. 기타 농산가공품	5
16. 식육가공품	16-1. 햄류	3
	16-2. 소시지류	3
	16-3. 베이컨류	1
	16-4. 건조저장육류	1
	16-5. 양념육류	4
	16-6. 식육추출가공품	1
	16-7. 식육함유가공품	1
	16-8. 포장육	1
17. 알가공품류	17-1. 알가공품	7
	17-2. 알함유가공품	1
18. 유가공품	18-1. 우유류	2
	18-2. 가공유류	4
	18-3. 산양유	1
	18-4. 발효유류	6
	18-5. 버터유	1
	18-6. 농축유류	5
	18-7. 유크림류	2
	18-8. 버터류	3

대분류	중분류	식품유형 개수
	18-9. 치즈류	2
	18-10. 분유류	4
	18-11. 유청류	3
	18-12. 유당	1
	18-13. 유단백 가수분해식품	1
19. 수산가공식품류	19-1. 어육가공품류	6
	19-2. 젓갈류	4
	19-3. 건포류	3
	19-4. 조미김	1
	19-5. 한천	1
	19-6. 기타 수산물가공품	1
20. 동물성가공식품류	20-1.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2
	20-2. 곤충가공식품	1
	20-3. 자라가공식품	3
	20-4. 추출가공식품	1
21. 벌꿀 및 화분가공품	21-1. 벌꿀류	4
	21-2. 로얄젤리류	2
	21-3. 화분식품	2
22. 즉석식품류	22-1. 생식류	2
	22-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3
	22-3. 만두류	2
23. 기타식품류	23-1. 효모식품	1
	23-2. 기타가공품	1
24. 그 외 분류	장기보존식품	3
	식품원료	2
	그 외 분류	1
총 가공식품 유형 수		277

제2장

조사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인도 개요

□ 1. 국가 개요

□ 가. 일반사항

- 인도(India)의 면적은 328만 7,260km²(한반도의 15배, 남한 면적의 33배)이며, 기후는 열대 몬순, 온대 기후, 고산 기후(북부) 등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음
- 수도는 뉴델리(New Delhi)이며, 인구는 2019년 기준 13억 6천 6백만 명임¹⁾
- 주요 도시는 뉴델리(2,851만 명), 뭄바이(1,998만 명), 콜카타(1,468만 명), 벵갈루루(1,144만 명), 첸나이(1,045만 명), 하이데라바드(948만 명), 암다바드(768만 명)

1) 통계청(2019),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명) 등임

- 민족은 인도 아리안족(72%), 드라비다족(25%), 몽골족 및 기타(3%)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는 힌디어와 영어 외 21개의 공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 종교는 힌두교(79.8%), 회교(14.2%), 기독교(2.3%), 시크교(1.7%), 기타(2.0%)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나. 정부기관

- 국가형태는 29개 주와 7개 중앙정부 자치령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며, 국가원수는 대통령, 국가 행정수반은 총리임
 - 대통령은 상하원 및 주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 선출됨
 - 총리는 중앙정부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추천권을 가지며 대통령이 임명
- 입법체계는 상원(Rajya Sabha, 254석. 하원·주의원·연방자치령에 233석 배정, 대통령이 12석 지명)과 하원(Lok Sabha, 545석. 543석은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 2석은 대통령 지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 정부는 별도의 주 의회를 구성하며 주에 따라 양원제 혹은 단원제

□ 다. 경제지표

- GDP는 2019년 기준 3조 1,550억 달러이며, 실질성장률은 2019년 기준 7.78%, 1인당 GDP는 2019년 기준 2,334달러임(IMF 예상치)
- 실업률은 2018년 기준 2.55%이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9년 기준 4.95%임
- 산업구조는 2016-17 회계연도 기준으로 서비스업(53.66%), 건설업(7.74%), 유틸

리티(2.46%), 제조업(16.57%), 광업(2.25%), 농업(17.32%)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역 규모²⁾**

- 2018-2019 회계연도: (수출) 3,301억 달러 / (수입) 5,141억 달러
- 2017-2018 회계연도: (수출) 3,035억 달러 / (수입) 4,656억 달러
- 2016-2017 회계연도: (수출) 2,759억 달러 / (수입) 3,844억 달러

▪ **주요 교역품**

- 수출품 : 자동차 제품, 철강판, 합성수지, 석유제품, 합성고무, 석유화학 합성연료, 기타기계류, 기타 석유화학제품, 무선통신기기, 금형 등
- 수입품 : 석유제품, 식물성 물질, 합금선철 및 고철, 알루미늄, 천연섬유사, 기초유 분, 정밀화학원료, 농약 및 의약품, 곡류, 아연제품 등

□ 라. 정치·사회동향

- 힌두교 및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 극심한 빈부격차, 교육 수준의 차이, 수천 년을 내려온 카스트 제도의 잔존 등 매우 복잡한 사회 구성을 보이고 있음
- 높은 문맹률과 극심한 빈부 격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일반화되어 있음
- 빈약한 국내 자본과 낙후된 사회간접시설은 경제 계획 수행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음. 그러나 정치적 안정, 풍부한 자원, 광범위한 산업 기반, 양질의 기술 인력, 경제 개방과 자유화 정책 등에 힘입어 성장이 예상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2) 인도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 "Export Import Data Bank"

- 인도는 1991년 경제개방개혁조치와 더불어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추진 하였으며, 최근에는 Act East Policy로 계승되고 있음
 - 상품 수출입을 위한 시장개척과 에너지 수급을 위한 천연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세안 국가와 한국, 일본 등과 협력을 확대하는 반면,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고 있음
- 경제가 성장하면서 도시 지역 거주민을 중심으로 국민의 생활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인터넷의 발달과 해외 TV 프로그램 및 영화의 유입으로 서구 문화에 동화되는 젊은 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의복을 포함해 과거 전통 생활양식이 규정하고 있던 틀을 깨어가는 모습을 보임
 - 농촌 지역의 전력 및 정보 접근성은 열악한 반면, 도시 지역은 우버, 모바일 뱅킹, 삼성페이, 생체정보 기반 전자결제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진보된 모습을 보임
- 국민 대다수가 아직 오랜 전통 생활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종교와 카스트 제도는 인도인의 생활을 지배하는 가장 주된 요소로서 많은 국민이 여전히 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
 - 종교가 생활에 밀착되어 종교라기보다는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며, 헌법상 카스트 제도에 의한 차별이 금지되어 있고 카스트 제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카스트 제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인도의 여름은 물 부족으로 많은 도시가 심각한 식수난을 겪고 있음
 - 인도는 세계 물의 4%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의 54%가 물 부족 스트레스에 직면한 상황이며, 지표면 물의 70% 정도는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 마. 경제동향

-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인도는 2015년 기준 중국 다음으로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신흥국으로, 인도의 GDP는 2019-2020년 6.0% 성장하였고, 2020-2021년 6.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부임한 이후, "Make In India", "Digital India"와 같은 제조업육성정책들로 인해 인도의 제조업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을 비롯하여 인도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모디 정부는 산업 전반에 걸쳐 외국인투자(FDI) 규제를 낮추고 있음
- 대외 수출 의존도는 낮으나 경제개발 자원의 해외자금 의존도가 높은 편임
 - 1990년에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하여 IMF 관리에 들어간 바 있으며, 1991년 대대적인 경제 개방으로 이어졌던 경험이 있음
 - 2012년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로 선진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심각한 자금유출이 일어났으며 이것이 기업의 투자 위축, 실업률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직결되어 경기가 빠르게 위축됨
 - 석유 등 광물자원의 상당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음
 - 기존에는 인도 정부의 정책 일관성 결여 및 관료주의, 투자에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꺼리던 국가였음
 - 2014년에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 및 기업환경 개선을 전면으로 내걸고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서 최근 7%대의 고성장을 이루고 있음
- 빈곤과 실업 문제가 극복해야 할 현안과제로 남아 있음

- 2021년에는 인도의 노동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64%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신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저개발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꾸준히 유입되는 비숙련 노동자로 인해 대도시의 노동 불안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 졸업생이 고용 가능한 인력의 2배 이상 배출되어 대학 졸업생도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음
- 2017년 기준 전체 노동인구 4억 여 명 중 사회보험, 최저임금제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1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 간 빈부 격차
 - 인프라가 취약하고 개발 재원이 넉넉하지 못해 인도는 서해안과 동해안의 주요 항구와 인접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성장함
 - 뉴델리, 벵갈루루를 제외한 내륙에 위치한 지역과 해안지역의 경제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음
 - 제조업 중심 경제성장 정책과 맞물려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음
- 2000년을 전후해 GDP의 10%를 상회하던 재정적자는 인도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과 경제성장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의 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2007년 중 GDP의 4.2%까지 축소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과 빈곤층에 대한 유류, 식량 보조금 지출 등으로 인해 다시 확대됨
- 인도는 10%를 넘나드는 만성적인 고인플레이션을 보이는 국가였으나, 2014년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 관리치를 2-6% 대로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음

□ 바. 농업 동향

- 인도의 농업은 증가하는 인구와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주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으로 국내 소비, 생산성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농업부문은 곡물 생산과 축산업으로 크게 구분되며, 곡물이 70%, 축산업이 30%를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인도에서 농업이 GDP에 기여하는 수준은 약 18%를 담당하는데, 전체 인구의 약 50% 정도가 농업 부문에 종사하면서 극빈층을 형성
- 전세계 10위의 농산물 수출국이며, 연평균 20% 이상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농촌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44.3%이며, 재배면적은 전 국토의 57.1%로, 1억5,735만ha임(2017년 기준, 세계은행)
- 농업 생산량은 강수량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11-2월은 건조한 한랭기, 3-6월은 기온이 매우 높으나 강수량이 적은 건조 혹서기, 6-10월은 남서 계절풍이 불어와 비가 많이 내리고 기온도 높은 습윤고온기로 구분
 - 인도는 카리프(Kharif)와 라비(Rabi)라는 두 가지 농사철이 있음
 - 카리프 시즌은 4-9월까지 진행되며, 쌀이 주된 생산 품목
 - 라비 시즌은 8-3월까지 진행되며, 밀이 주된 생산 품목
 - 쌀, 밀, 땅콩, 사탕수수, 황마 등은 전 세계 생산 규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 2. 한국과의 관계

계결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협정(1974년 8월) ▪ 문화협정(1974년 8월) ▪ 과학기술협정(1976년 3월) ▪ 이중과세방지협정(1985년 7월) ▪ 항공협정(1992년 3월) ▪ 관광협력협정(1993년 9월) ▪ 투자보장협정(1996년 5월) ▪ 형사사법공조협정/범죄인인도조약(2004년 10월) ▪ 외교관 및 관용여권사증면제협정(2005년 8월) ▪ 한-인도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2005년 9월) ▪ 세관협력협정(2006년 2월) ▪ 과학기술협정(2006년 2월) ▪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서명(2009년 8월 체결, 2010년 1월 발효) ▪ 한-인도 사회보장협정(2010년 10월 체결, 2011년 11월 발효) ▪ 한-인도 민간원자력협력협정(2011년 7월) ▪ 한-인도 업무협력양해각서(MOU) 체결(2011년 11월) ▪ 한-인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2011년 7월 체결, 2011년 10월 발효) ▪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2012년 3월) ▪ 한-인도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 격상(2015년 5월) ▪ 한-인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2017년 6월)
-------------	---

▪ 교역규모

- 2019년: (對 인도 수출) 151.0억 달러, (수입) 55.6억 달러
- 2018년: (對 인도 수출) 156.1억 달러, (수입) 58.8억 달러
- 2017년: (對 인도 수출) 150.5억 달러, (수입) 49.4억 달러

- 주요 교역품
 - 對 인도 수출품(2017년): 무선중계기, 자동차부품, 금은세공품, 철비합금, 기타 석유제품 등
 - 對 인도 수입품(2017년): 나프타, 알루미늄괴, 기타합금철, 기타정밀화학, 아연괴 등
- 교민
 - 약 1만 1,000여 명 (2018년 기준)
-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 CEPA는 상품 교역,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 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을 지님
 - 2010년 1월 1일부로 정식 발효됨. 그러나 CEPA 발효 이후 CEPA 활용률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 2014년 1월 현행 CEPA 개정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한 상태이며, 현재 관세 철폐율을 중심으로 한 개정 협상을 진행 중임

□ 3. 식품관련 규정 및 기관

□ 가. 식품관련 법률 체계

» 식품안전표준법(Food Safety and Standards Act,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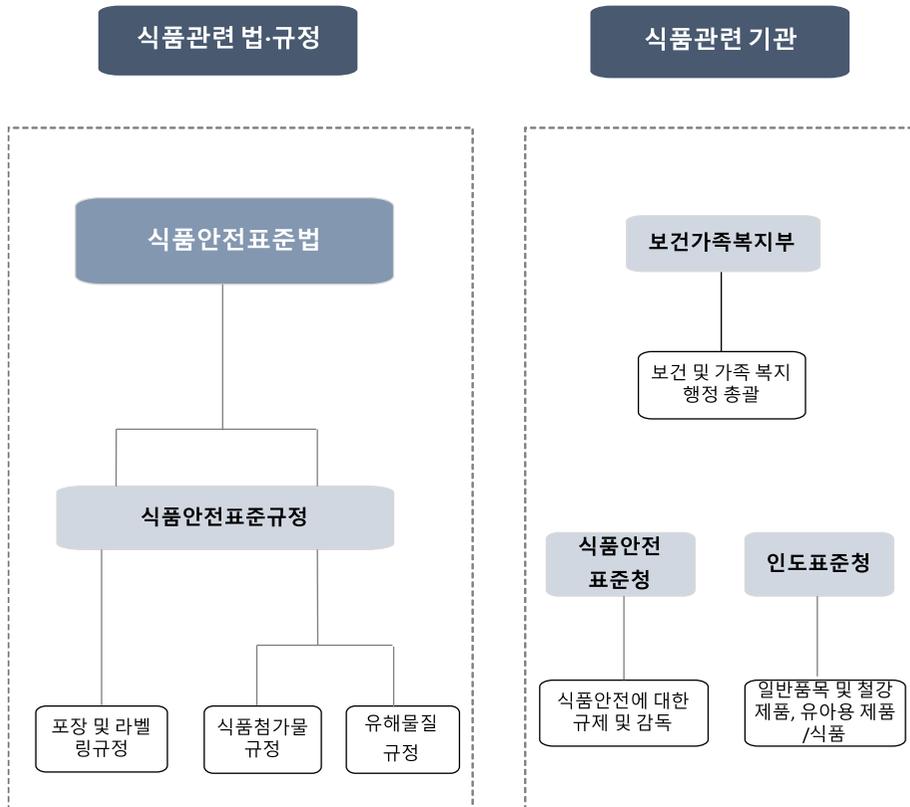
- 식품과 관련된 법규를 통합하여 과학적 사실과 증명에 바탕을 둔 식품안전 및 표준과 관련된 권한 및 기준을 위해 제정된 법률

- 이를 통해 식품 제조, 저장, 유통, 판매, 수입 등을 규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건강한 식품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식품안전표준규정(Food Safety and Standards Regulations, 2011)

▪ 일반개요

- 2011년 인도 보건가족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산하 식품 안전표준청(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FSSAI)에서 최종적으로 도출



[그림 2-1] 인도 식품관련 법규정 및 관련기관

▪ 배경

- 라벨링 규정, 포장 규격, 허용 식품첨가물, 색소, 미생물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식품안전표준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³⁾

1	식품 비즈니스 라이선스 및 등록규정 (Licensing and Registration of Food Businesses)
2	식품 표준 및 식품첨가물 규정 (Food Products Standards and Food Additives)
3	판매 금지 및 제한 규정 (Prohibition and Restriction of Sales)
4	포장 및 라벨링 규정 (Packaging and Labelling)
5	오염물질, 독소 및 잔류물 규정 (Contaminants, Toxins and Residues)
6	실험 및 샘플링 규정 (Laboratory and Sampling Analysis)
7	식품 및 건강보조제, 영양제, 특수영양식품, 기능성식품 및 신소재식품 규정 (Food or Health Supplements, Nutraceuticals, Food for Special Dietary Purpose, Functional Food and Novel Food)
8	식품 리콜 규정 (Food Recall Procedure)
9	식품 수입 규정 (Import)
10	미분류식품 및 원료 승인 규정 (Approval for Non-Specific Food and Food Ingredients)
11	유기농식품 규정 (Organic Food)
12	알코올음료 규정 (Alcoholic Beverages)
13	식품안전강화 규정 (Fortification of Food)
14	식품안전감시 규정 (Food Safety Auditing)
15	실험 재인 및 통지 규정 (Recognition and Notification of Laboratories)
16	광고 및 클레임 규정 (Advertising and Claims)
17	포장 규정 (Packaging)
18	과잉식품의 복구 및 유통 규정 (Recovery and Distribution of Surplus food)

3) <https://fssai.gov.in/cms/food-safety-and-standards-regulations.php>

- 이 중 두 번째에 식품첨가물(Food Additives) 규정이 있으며, 다섯 번째에 오염 물질, 독소 및 잔류물(Contaminants, Toxins and Residues)규정이 제시되어 있음

□ 나. 식품관련 정부기관

- 보건가족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 인도의 보건 행정과 가족 복지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산하에 보건가족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Family Welfare)와 보건연구부(Department of Health Research) 두 개의 부로 크게 구분되어 있음
- 식품안전표준청(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FSSAI)
 - 보건가족복지부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2006년 식품안전표준법(Food Safety and Standards Act, 2006)에 바탕을 두고 설립됨
 -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담당
 - 인도 내 식품의 제조, 보관, 유통, 판매, 수입과 관련해 식품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와 규제를 관할함
 - 세부적인 내용은 2017년 9월 11일에 발표된 식품안전표준규정 2017(Food Safety and Standard Regulation, 2017)에 의거함
 - 뉴델리(New Delhi)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Delhi, Guwahati, Mumbai, Kolkata, Cochin, Chennai에 6개의 지부가 있음



제 2 절. 가공식품 교역 현황

□ 1. 인도 식품시장 동향

□ 가. 소비자를 둘러싼 환경

» 인구 및 소득

- 인도의 인구수는 전 세계 중 중국(18.6%)에 이어 17.7%로 2위를 기록함
 - 우리나라 통계청에 의하면, 인도의 인구는 2019년 기준 13억 6천 6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의 상당수가 젊은 연령층이며, 이에 미래 소비시장으로서도 유망함. 보스턴

컨설팅그룹(2015)은 2020년까지 인도 소비시장의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2019년(IMF 예상) 기준 인도의 1인당 GDP는 2,334 달러이며, 경제성장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확대되고, 소비규모가 커지고 있음
 - 인도 국가경제연구원(NCAER)은 2010년 기준 '7,555 - 3만 3,777달러' 구간의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함. 이는 전체 인구의 13.1%를 차지함. 향후 경제성장 추세를 감안하면 중산층 인구는 2012년 1억 6000만 명에서 2025년 5억 4,700만 명으로 인구 대비 37%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사회구조

- 최근 여성의 경제, 정치 등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과거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위한 정부의 보호정책 등으로 인해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음
 - 여성의 사회진출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의사 결정권 변화, 교육수준 상승과 이로 인한 경제적인 여유와 여가시간 증가 등으로 여성의 소비지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다양한 인종적 특성과 다양한 언어 및 종교, 소득 양극화와 카스트 제도 등 인도 시장은 여러 가지 다양성이 공존하고 있음
 - 인도의 상권은 델리, 뭄바이, 첸나이, 캘커타를 중심으로 하는 4대 권역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 권역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통일된 마케팅을 하기가 어려움

□ 나. 현지 식품시장 동향

» 소비 구조와 식품 소비

- 소득상승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고, 바쁜 생활패턴으로 편리함을 추구

하는 경향이 확산되며 간편 가공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인도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해 가격 위주로 시장이 편재되어 있으나,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고가 제품의 판매도 늘어나고 있음
-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소비 증대
 -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 하나로 IT 활용률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식품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 중임
 - 현재 인도에서는 SNS마케팅이 폭넓게 진행되며 소비자들의 구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인도는 세계에서 채식주의자가 가장 많으며, 이들의 육류 섭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족한 단백질 섭취를 위해 유제품을 선호함
 - 전 세계 우유 생산량 1위 국가답게 우유를 활용한 라씨, 커드, 다히 치즈 등 유제품이 발달함
 - 제과, 제빵업체에는 계란이나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많음
-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
 - 상점에서 파는 포장주스의 대부분은 환원주스였으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저온착즙주스가 많아짐
 - 최근 건강주스(저온착즙주스)를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으며 급성장하고 있음. 이들 제품은 온라인, 오프라인, 배달 등을 통해 쉽게 구매가 가능함

» 가공식품시장 동향

- 지역별 가공식품 소비동향
 - 동쪽 및 동북지역: 가공식품이 다른 지역보다 덜 발달했으며, 저렴한 가격이 중요

- 북쪽지역: 현대적 유통채널의 확장으로 동북지역보다는 시장규모가 큼
- 남쪽지역: 인도에서 부유한 지역으로 가공식품이 발달하고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이 활발
- 서쪽지역: 인도에서 가장 가공식품이 발달한 지역. 뭄바이와 같은 구매력이 높은 부유한 도시들이 밀집되어 있음
- 증가하는 중산층 인구, 1인당 소득의 증가,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 등으로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
 - 인도 가공식품산업부(MoFPI)에 따르면, 인도의 가공식품은 전체 식품 산업에서 약 5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식품 산업부문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가공식품산업
 - 인도 브랜드자산협회(IBEF, 2017)에 의하면, 인도 가공식품산업은 인도 식품시장의 32%가량을 차지하며, 시장규모는 2014-15 회계연도 기준 2,5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5-16 회계연도 기준 인도 GDP의 8.37%가량을 차지하는 수치임
 - 가공식품시장의 42%가량을 차지하는 비조직화/영세(Unorganized and Small Scale)부문이 전자상거래의 도입으로 빠르게 조직화·대형화되고 있어, 소비자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음
 - 2016년 6월 인도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식품가공분야의 해외직접투자(FDI)를 100% 허용하며, 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 아직 대부분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며, 농산물 자체로는 부가가치가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식품가공업의 진흥을 통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음
 - 인도 산업정책진흥국(DIPP)에 따르면, 2000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공식품 분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누적액은 75억 4000만 달러에 이릅니다

- 아마존, 월마트 등이 인도 식품유통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네슬레, 페레로로쉐 등 기존에 진출한 글로벌기업 또한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임
- **글로벌기업의 활발한 진출**
 - 인도에는 글로벌 식품가공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몇몇 분야에서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례도 있음
 - 네슬레는 인도 식품가공업 수위기업이며 매출액은 300억-350억 루피로 추산됨
 - 메기(Maggi)의 경우 인도 라면시장의 50% 가량을 점유하고 있음
 - 페레로로쉐는 초콜릿과 스프레드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킨더조이(Kinder Joy)는 대표상품이자 인도 유아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히 높은 제품임

□ 다. 식품 유통구조

» 전체 유통시장

-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현대화된 소매유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체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상황임
 - 도시화가 지속해서 진행되면서, 현대화된 소매유통구조가 성장하고, 맞벌이 인구 증가로 인해 홈쇼핑과 인터넷쇼핑을 통한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유통시장의 규모는 2000년도 2천 40억 달러에서 2015년 6천억 달러로 성장함. 2020년에는 1조 3천억 달러로 연평균 2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인도 온라인 쇼핑시장은 2009년 38억 달러 규모에서 2013년 126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한 바 있음
 - 보스턴 컨설팅 그룹 Deloitte사에 따르면, 회계연도 2009-2010년에서 2013-2014년 사이에 인도의 현대화된 유통시장은 연평균 19-20% 성장했으며, 2020년까지 현대화된 유통시장은 전체 유통시장의 2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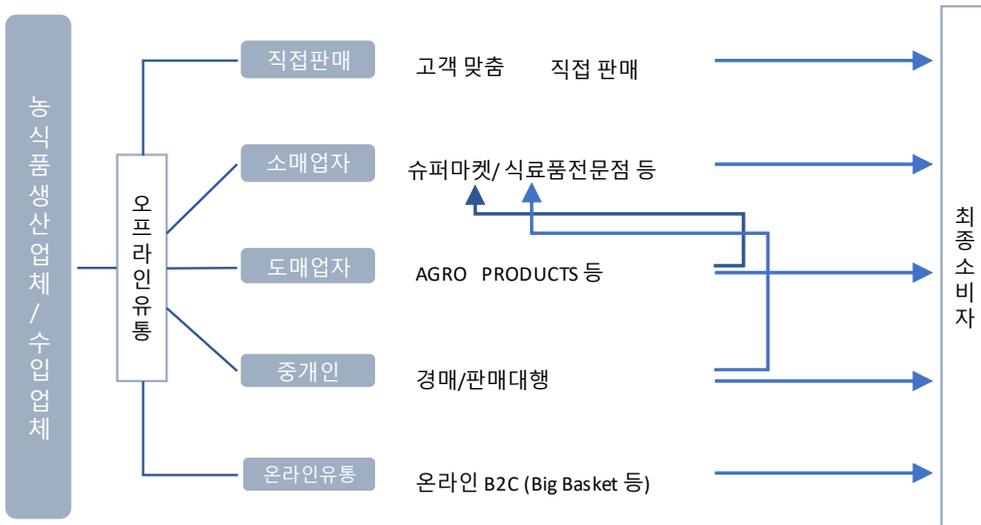
- 인도 유통산업은 대형유통망, 전문유통망, 온라인유통망으로 구분됨
 - 국토면적이 넓고 소매시장에서 전통적 소매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중간업자가 존재
 - 최근 인도 내 유통채널별 현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메이저기업의 매출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Reliance Retail 사를 비롯한 오프라인 유통기업은 물론, Flipkart 사와 같은 온라인 유통기업들의 성장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

» 식품 시장 동향

- 인도의 식품시장은 인도 유통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3월 기준 전체 유통시장에서 6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⁴⁾
- 식품 제조, 수입 라이선스가 있는 현지 벤더를 통한 유통
 - 현지 식품 B2C 채널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납품하는 벤더에게 상품을 수출하여 진출하는 경우가 많음
 - 최근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Big Basket과 같은 대형 식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 식품의 경우 전자상거래플랫폼보다 오프라인매장을 중심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음
 - 인도의 경우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 Food Safety Standard Association of India)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 따라서 거래 시 상대방이 식품 수입을 위한 라이선스를 획득한 기업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유통경로

4) IBEF(India Brand Equity Foundation), 2015년 8월 유통산업 보고서

- 식품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현재는 전통채널인 키라나(KIRANA)와 같은 독립 소형소매점이 주도
 - 키라나는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저렴한 가격과 친근한 이미지로 인도 소비자들에게 신뢰받고 있으며, 배달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구해주기도 함



[그림 2-2] 인도 식품유통시장 경로

[표 2-1] 오프라인 식료품 채널 수

단위 : 개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현대적 식품소매업체	5,902	6,152	6,545	6,670	7,162
전통적 식품소매업체	12,488,703	12,555,234	12,623,561	12,695,235	12,770,413
합계	12,494,605	12,561,386	12,630,106	12,701,905	12,777,575

출처: Euromonitor International

- 현대적 유통채널의 경우 도시를 중심으로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백화점 등의 형태로 성장 중임
- 현대적 유통채널은 전체 식료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통식보다 낮으나 도시화와 디지털화, 그리고 중산층의 증가 등에 힘입어 지속성장이 예상됨
- 온라인 유통채널
 - 전체 유통채널에서 약 2.5% 차지, 도시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 정부의 인프라 확장정책과 증가하는 스마트폰 사용량 등으로 지속해서 성장
 - 도농 간 인프라 차이가 심해 도시를 중심으로 성장
- 글로벌기업들은 인도시장 진출 초기 신용카드 사용률이 낮아 고전했으나, 대금교환제도(Cash on Delivery)를 도입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됨
- 아직까지 현금결제 이용률이 83%에 달해 신용카드보다 훨씬 높은 수준

□ 2. 한국 식품 수출 동향 및 전망

□ 가. 한국상품 인지도

-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해 성공을 거둔 바 있으므로 한국 제품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은 편임
- 일반 서민층의 경우는 이들 대기업의 제품이 한국산인지 인도산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어느 정도의 수준 이상이면 한국 제품과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잘 알고 있음
- 인도 바이어에게 한국 제품은 품질은 좋지만 가격이 비싼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현지인의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

- 인도의 유튜브, 페이스북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매운 라면 먹기 도전 (Fire Noodle Challenge)'과 같은 한식 콘텐츠가 인도 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음
- SNS 콘텐츠를 통해 한국 식품을 인지하게 된 인도인들이 한국 문화원, 인근 한식당, 한인 마트의 시식 행사 등을 통해 한국 식품을 접하고 있으며, 이에 과거 한국, 일본, 중국인 주재원, 교민 일부에게 국한되었던 한식 소비가 현지인에게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한식은 대부분 육류가 포함되기 때문에 채식을 선호하는 인도인들의 현지 한식당에 대한 문턱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육류를 찾는 현지 손님도 있고 제품을 채식으로 구성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
 - 롯데제과가 인도에 일찍 진출하여 초코파이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인도 서북부 구자라트 지역에서는 현지 빙과업체를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과거 현지 한인마트, 한인식당은 현지 교포와 주재원을 대상으로 한국산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현지 로컬 유통망에 한국산 가공식품이 납품되어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나. 한국 식품 수출 동향

- 인도는 식품가공업의 성장과 함께 가공식품의 수입 또한 늘어나고 있음
- 한국산 제품의 대인도 수출확대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국산 식품의 대인도 수출은 전반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표 2-2] 인도의 가공식품 수입현황

품목	수입액(백만\$)		
	FY 2015-16	FY 2016-17	FY 2017-18
땅콩	0.05	0.21	2.02
구아검	2.07	0.36	0.51
흑설탕, 과자류	82.51	83.68	105.93
코코아 제품	212.96	230.02	228.51
정제된 곡물류	87.46	87.31	102.35
기타 가공식품	3.26	2.42	2.02
주류	427.71	519.19	601.18
기타 조제품	279.16	317.86	229.95
합계	1,095.18	1,241.05	1,272.47

출처: 인도 상업정보 및 통계총국(DGCIS)

- [표 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최근 4년 간 우리나라의 對 인도 식품 수출입 현황을 보면, 금액 기준으로 2017년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18년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9년은 전년 대비 증량은 증가하였으나 수출과 수입 모두 금액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표 2-4]의 對 인도 주요 부류별 가공식품 교역현황을 보면, 금액 기준으로 2018년 대비 2019년에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군은 면류, 음료, 소스류이며, 반면에 감소한 품목은 연초류, 과자류, 주류로 나타남
- [표 2-5]를 보면, 최근 2년 간 수출된 품목 중에서 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혼합조제품으로 전년 대비 수출액이 18.83% 증가하였음
 - 한편 2018년 대비 2019년에 수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품목은 라면으로 나타났는데, 32.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다음은 혼합조제품으로 28.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3] 최근 4년 간 對 인도 식품 수출입 현황

단위 : 톤, 천 불

년도	수출		수입	
	증량	금액	증량	금액
2019	29,087	47,013	2,593,798	505,278
2018	22,982	48,949	2,517,883	539,150
2017	20,645	43,554	1,946,047	434,621
2016	27,582	46,930	2,319,863	499,325

출처 : www.kati.net (<http://www.kati.net/nation/basisInfo.do?lcdCode=MD192>)

기준 : 2019. 12

[표 2-4] 對 인도 주요 부류별 가공식품 수출 동향

단위 : 톤, 천 불, %

구분	2018 (A)		2019 (B)		증감률 (B-A)/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연초류	201.9	740.5	114.2	634.7	△28.6	△14.3
과자류	176.8	456.8	167.0	418.8	△5.6	△8.3
면 류	790.5	2,771.7	1,116.9	3,864.2	41.3	39.4
주 류	618.2	658.9	273.5	351.9	△55.8	△46.6
음 료	42.8	59.4	73.7	60.5	72.3	1.8
소스류	275.8	809.1	379.5	1,009.7	37.6	24.8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

[표 2-5] 최근 2년 간 對 인도 식품 수출 Top5 품목 목록

단위 : 톤, 천 불

순위	2018년			2019년		
	품목	증량	금액	품목	증량	금액
1	혼합조제품	15,577	25,085	혼합조제품	21,882	30,907
2	채소종자	132	4,510	채소종자	126	5,025
3	젤라틴	89	3,692	라면	1,068	3,705
4	라면	724	2,503	젤라틴	52	1,955
5	커피조제품	97	1,512	커피조제품	80	1,042

출처 : www.kati.net (<http://www.kati.net/nation/basisInfo.do?lcdCode=MD192>)

기준 : 2019. 12



제 3 절. 수입식품 관리제도

□ 1. 수입 규제

□ 가. 개요

- 인도는 2001년 기존의 수입 수량규제를 전면 철폐한 이후 수입에 있어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음
- 대부분의 품목이 OGL(Open General License)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를 마치면 누구나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에 있어 표면상으로 드러난 특별한 제한 조치는 없다고 볼 수 있음
- 그 외에 국제적으로 수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일부 품목이나, 마약류, 총기류 등 일부 품목과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승인 및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 인도 표준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이 요구하는 제품인증이 대표적이며, 식품, 의약품 분야에도 각 관할 기관별 인증을 취득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
- 일부 품목의 경우, 2개 이상의 인증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출 시 현지 수입 에이전트, 수입상과 관련 규정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나. 수출입 제한/금지 품목 및 수입전매품목

- 아래의 표에 수입전매품목, 수입제한품목, 수입금지품목에 대한 리스트가 제시되어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 2의 수입금지품목 리스트와 부록 3의 수입전매품목 리스트에 제시되어 있음

[표 2-6] 인도 수출입 제한/금지 품목

분류	제한/금지품목	비고
수입전매품목	대두, 요소(비료), 밀, 메슬린, 팜스테아린 등	인도식품공사 등 특정 기관을 통해서만 수입 가능
수입제한품목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통신기기, 타이어(중고타이어 포함), 중고기계 등	수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수입 허가 등 제한적으로 가능한 품목
수입금지품목	주로 동물의 고기, 유지 등	

□ 2. 수입 절차

□ 가. 전제 절차 개요

» 전제 수입 절차

- 인도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인 수입 절차는 다음과 같음

[표 2-7] 인도 수입 절차

번호	단계	내용
1	수입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선 발굴 및 신용조사 • 품질, 수량, 가격, 포장, 선적, 결제, 보험, 클레임 등 계약조건 확인
2	수입허가 또는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의약품, 멸종위기종, 유해폐기물 등은 수입 허가 및 신고 필요
3	신용장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업자: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신용장 금액의 50%를 개설담보금으로 예치
4	수입대금 결제 및 선적서류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업자: 신용장 수령 및 수출품 선적 • 환어음 발행 및 거래은행에 매입 신청 • 수입업자: 대금 결제 후 선적서류 인수
5	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 수입물품의 종류, 과세가격, 납부세액 등 세관에 신고 • 보세구역: 수입신고 후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하는 곳
6	관세 신고 및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신고: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수입물품 가격 신고 • 납세신고: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관세 납부에 대한 신고
7	무역 분쟁 및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절차: 강제성이 없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절차: 강제성이 있고,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통관 절차

- 인도의 통관 절차는 일반 선진국의 관행을 따르고 있어, 이 절차를 준수할 경우 큰 문제는 없음
- 그 외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위생·안전 등의 이유로 표준청(Bureau of Indian Standards) 등 공인기관의 인증/증빙서류를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 제출 필요⁵⁾
- 인도는 통관 인프라 부족, 관료주의 등으로 통관 절차가 필요 이상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최근 정부가 통관제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추세임
- 통관 절차
 - 모든 서류를 세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 담당자는 Bill of Entry, 세관 창고 측의 Manifest copy 와 비교 확인
 - 컴퓨터 입력 및 컴퓨터 코드번호 부여
 - 관세 평가: 모든 서류는 관세평가 담당관에게 넘겨져 적정 관세 평가
 - 관세율 등 확정 후 컴퓨터에 입력
 - 검사: 관련 서류 및 관세 등을 재점검
 - 모든 서류를 부관세관(Assistant Collector)이 확인 후 추가 서명
 - 관세 납부 통지서 넘버 부여
 - 관세 납부 카운터: 관세를 납부하면 세관은 통관신고서(bill of entry) 사본을 1장 떼어 내고 물품 수령증을 발급

5) BIS 홈페이지: www.bis.org.in

▪ 필요 서류

[표 2-8] 인도 통관 시 필요 서류

관련 단계	관련 세부 서류 및 절차
신용장 개설 시 은행 개설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 허가 번호 (IEC No.: Importer-Exporter Code No.) ▪ 구매 오더 (Purchase Order) ▪ 송장 (Invoice) ▪ 공급업체 이름 (Suppliers Name) ▪ 공급자 거래은행 이름 (Name of Suppliers Banker) ▪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인증서
수입화물의 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업자가 바이어에게 보낼 서류 ▪ 선하증권 (B/L 또는 Air-way Bill No.) ▪ 송장 사본 (Invoice Copy) ▪ 물품명세서 (Packing List) ▪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바이어가 통관 시 준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코드번호 (Importers Code no.) ▪ 수입 신고 (Import Declaration along with Bill of Entry) ▪ GATT Declaration (일반적인 건의 경우 불필요, 택배(DHL 등) 이용 시 제출하여야 함)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서

- 일반적인 경우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
 - 해상운송 수입은 약 3-4일(FCL), 5-7일(LCL), 항공운송은 약 2-3 근무일이 소요
 - 인도의 화물 운송 관련 사항이 부록 4에 제시되어 있음
- 전체적인 통관절차는 아래 [표 2-9]에 제시된 바와 같음

[표 2-9] 인도 수입 통관절차

기한	통관절차	비고
Day 0	1. 화물 도착 전 적하목록신고(IGMS)	• 통상 선박 도착 2일 전, 항공기 도착 6시간 전 적하목록 신고
	2. 보세구역 반입	• 조업사의 화물 보세구역 반입(장치 확인)은 항공 약 8시간, 해상 24시간 내
Day 1	3. 수입 신고(Bill of Entry) - 전자데이터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또는 일부 수작업 신고 병행(전산 오류 시)	• 화물도착(통상 보세구역 반입일 기산) 후 24시간 내 미수입 신고 시 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 B/L,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필수 • CEPA 적용 시, C/O COPY본 가능
	4. 1차 수입검사(First Check)	• 중고물품, 분류 불명확 품목, 최초 수입자 또는 국민건강, 사회 안전 위해가능 물품 등이 검사 대상 • 통상 화물은 First Check 생략
	5. 관세 평가(Appraisal Section)	• Appraiser Officer 검토 ⇒ Deputy or Assistant Commissioner 승인 • HS코드, 관세평가 및 수입요건 확인 • CEPA 적용 시, C/O 원본 필요
해상 Day2-3 (항공 Day1-2)	6. 관세 납부	• 수입신고 승인 시 EDI시스템으로 관세액 및 신고 지연 가산세가 자동 책정 • 수입신고 승인 후 12시간 이내 관세 미납 시 가산금 부과 (연이자 18%)
해상 Day3-4 (항공 Day1-2)	7. 2차 수입검사(Second Check)	• 수입요건 및 수입신고 항목에 대한 크로스 체킹 목적의 검사
해상 Day3-4 (항공 Day2-3)	8. OOC(Out of Charge)	• 물품 수령증(최종 승인)
해상 Day3-4 (항공 Day2-3)	9. 화물 Delivery	• 물품 수령증 내고 Gate Pass해서 화물 운송 진행

□ 나. 주요 개별 절차

» 보세구역 반입

- (해상화물) 반입 후 첫 3일까지는 화물반출지체료(Demurrage Charge)가 부여되지 않고, 4일부터 지체료가 부과됨
- (항공화물) 반입 후 48시간 이내는 화물반출지체료가 부여되지 않고, 화물보관료(Warehouse Charge)만 6루피/Kg로 부과됨. 48시간 지난 후에는 지체료가 화물보관료에 가산돼 약 9루피/Kg가 부과됨
- 화물검사에 걸리게 되면 검사 기간이 길어져서 통상적으로 지체료가 부과되며 늘어남

» 수입신고

- 대부분의 세관에서 전자데이터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을 도입했기 때문에 EDI로 수입신고 가능. 일부 세관만 수작업신고 병행
- EDI통관은 인도 관세청 웹사이트(ICEGATE.GOV.IN, e-Commerce Portal of Central Board of Excise & Customs)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후에 통관대리인의 라이선스 코드를 입력 후 신고 가능
- 해상 및 항공화물이 각 포트에 도착하고 세관에서 해당 선박과 항공기의 도착 여부를 시스템 상으로 확인해주는 Inward Date를 발행한 시점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됨
 - 통상 조업사가 화물 보세구역 반입신고 시점을 기산일로 함
 - 가산세는 1-3일까지 5000루피/일이며, 4일 이후로는 1만 루피/일임

» 리뷰 프로세스(통관이 거부될 경우, 구제 방법)

- 본 제도는 2017년 3월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수입 통관 시 자주 발생하는 라벨, 포장 시정명령 등의 이유로 통관이 거부된 화물의 빠른 재처리를 위해 도입됨
- 재검사 요청을 위해, 수입업자는 재검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재검사비와 함께 인도 식품당국 본사로 제출. 재검사 요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2차 재검사 신청

□ 다. 식품 통관 시 주요 절차 및 규정

1) 세관에서의 상품 운송 상태 확인

- 기본적인 개별 상품별로 요구된 적재량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며, 상품의 손상이나 오염을 유발하지는 않음

2) 상품의 손상 가능성 확인을 위한 외관 검사

- 외관상 상품이 부풀거나 볼록하게 튀어 나왔는지 여부와 설치류나 벌레 또는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오염 여부를 확인

3) 라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식품안전 및 표준 규정에 따른 라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라벨이 영어로도 표기돼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포함

4) 기타 필수 규정

- 내림차순으로 나열된 원재료명, 제조날짜, 배치번호, 유통기한 등과 모든 상품의 겹포장에는 유통기한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적혀 있어야 함
- 유통기한과 수입 일자 사이의 기간이 제조 일자로부터 유통기한까지 기간의 최소 60%가 남아 있어야 함

□ 라. 통관 시 유의사항

- 통상적으로 인도의 전산 환경이 낙후돼 있어서 시스템(ICES)의 전산 장애로 인해 24시간 이내 수입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수입자가 억울하게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2017년 3월 31일부터 세관 신고서의 의무 제출기한을 세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함
 - 만약 24시간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일까지는 매일 5000루피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후부터는 1만 루피의 벌금이 부과됨
- 인도는 통관 시, 인도 표준청 (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 동식물 허가 및 검역 확인서(Plant/Animal permit- Quarantine certificate), 식품안전표준청 (FSSAI)의 식품 포장(food and product packaging) 등 주요 인증 절차 외에도 각 품목마다 까다로운 인증과 유효기간 기준이 하나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함
- 수입자의 등록 여부 확인
 - 인도에서 무역업 종사자는 수출입면허(IEC: Import Export Code)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아울러 최근 도입된 GST(통합간접세, Goods and Service Tax) 납부를 위해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인도는 중소, 영세업체의 비중이 큰 국가로 일부 바이어의 경우 이러한 제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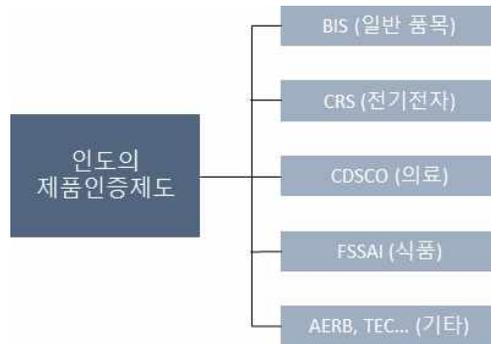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화물이 도착한 이후에야 등록을 시작하여 막대한 물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통합간접세(GST) 요율 체계의 이해
 - GST는 기존에 10여 개 이상의 항목으로 난립해 있던 간접 세목을 합리화, 간소화 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부 도입된 간접세 제도임
 - 중앙정부(CGST), 지방정부(SGST), 지방 간 거래(IGST)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는 세금을 걷는 주체에 따라 나누어져 있는 것이기에 그다지 신경 쓸 필요는 없음
 - 품목별로 0-28%까지 적용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국세율이 관세 적용 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됨. 관세의 경우 IGST로 간주됨
- CEPA의 활용
 - 인도 수출 시 원산지증명을 받을 경우, 기본관세 인하 효과가 있음
 - CEPA 적용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청 혹은 상공회의소가 발행하는 CEPA 적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품목분류의 어려움과 강화되는 수입 규제
 - 한국의 KHS는 10단위를 사용하지만 인도는 8단위를 사용하고 있음.
 - 한국에서는 수입사례 등이 풍부해 품목 분류가 분명한 제품인 경우에도 인도에서는 수입된 적이 없거나 현지 세관 간의 정보소통 부족으로 한국과는 다른 HS를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 한-인도 CEPA 양허세율을 받으려는 경우 한국 상공회의소로부터 원산지증명을 받았더라도 그 원산지증명 상의 HS코드를 인정하지 않고 양허가 없는 품목의 세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보고됨
- 인도 통관 및 관세 기타사항이 부록 5에 제시되어 있음

□ 3. 인증 제도

□ 가. 인증제도 개요

- 품목별 인증제도와 기관 운영
 - 인도의 인증제도는 품목별 구분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당 품목에 대한 관할 정부 부처, 기관, 법령이 세분화되어 있음
- 대표적인 인증제도와 품목은 다음과 같음



[그림 2-3] 인도의 제품인증제도 구분과 관련기관

출처: KOTRA 뉴델리 무역관, 본 보고서에서 재구성

- 제품별로 요구되는 인증 절차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
 - 인도의 제품 인증은 대부분 인도표준청(BIS)을 따르고 있으나, 전기전자제품, 식품, 의료기기, 방사선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준이 있음
 - 1개의 인증만을 필요로 하는 품목이 대부분이나, 일부 품목의 경우 2개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유통이 가능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유아용 식품(Infant Food), 유제품(Milk Product)의 경우 표준청(BIS)과 식품안전표준청(FSSAI) 두 개의 인증을 받아야 함
- 따라서 현지 로펌, 협력 수입상 등을 통해 어떤 종류의 인증이 필요한지 파악해야 함
- 복잡한 제도, 제품 등록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함
 -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인도의 제품인증 절차와 제도는 아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사전준비가 미비할 경우 제품의 등록이 정해진 기간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인도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 이외에도 타기업의 선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나. 인증제도 세부 설명

» BIS - 일반품목 및 철강제품



해당 식품 품목: 유아용 우유 및 유아용 식품

세부리스트: <http://www.bis.org.in/cert/ProdUnManCert.asp>

- 인도 표준청(Bureau of India Standards, BIS)
 - 한국의 KS마크와 같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제품 인증을 심사하고 발행하는 기관
 - 1986년 'BIS Act' 법에 따라 창설되었으며, 인도 소비자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 & Public Distribution) 산하 공공기관
 - BIS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IEC(International

Electronical Commission), WSSN(World Standards Service Network) 등 국제 표준관련단체들과 협조하고 있으며, 총 112개 품목에 대해 의무 등록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 제품 등록 절차

- 수입제품에 대한 제품등록은 BIS 내의 해외생산자인증부(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Division, FMCD)가 담당하고 있으며, 부서는 뉴델리의 BIS 본부에 위치해 있음
- 수입제품의 등록절차는 2000년 제정된 해외생산자인증 절차(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 FMCS)라는 규칙에 의거함

[표 2-10] 인도 표준청(BIS) 제품등록 절차

단계	내용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준비: 지사·연락사무소 등 판매주체의 인도 내 사업등록증, 인도 내 대리자 혹은 에이전트(AIR, Authorized Indian Representative) 지정 서류, 상품 제조과정 설명서, 공장 내 품질보증시스템, 부품과 원료관련 인증자료, 제조기계 및 테스트 장비의 리스트, 기타 서류 • (http://bis.org.in/fmcs/FM_CHECKLIST.pdf)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내 대리자 혹은 에이전트(AIR)의 지정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제출: 상기 서류와 등록비용의 접수 ▪ 등록비용: 신청료(1000루피), 실사비용(7000루피/1인 일당), 테스트 비용(실비), 등록갱신료(1000루피/매년)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S서류 접수 및 등록
5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등록 스케줄 통보 및 BIS 직원의 공장실사 일정 협의
6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실사 및 BIS 자체 검사를 위한 샘플 획득
7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선스 획득 후 제품보증채권에 서명
8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획득 기업은 분기별로 BIS에 제품등록 준수사항을 보고해야 함

출처: 인도 BIS 홈페이지

- 소요기간은 서류 등록 이후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공식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서류의 보완, 공장 실사 일정 협의, 샘플 제출 등으로 인해 상이함
- 최초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1년 혹은 2년 단위 갱신이 이루어짐

» FSSAI - 식품



주요 품목 : 농산품, 가공 및 포장식품, 신소재식품, 영양보조제,
약재료, 식품첨가물

- 제품 등록 절차
 - 수입식품은 식품안전표준청(FSSAI) 내의 Vigilance/Import Department에서 담당하고 있음. 실질적인 업무에는 Standard and Quality Assurance Department 또한 관여하게 됨
-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소요기간은 서류 접수 후 6개월 정도임

[표 2-11]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 제품 등록 절차

단계	내용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준비: form-1 서류(제품명, 주요 원료, 인도 외부기관의 제품등록증, 제조과정 설명서, 제품과 관련된 제조사-유통사의 보증 증빙서, 안전사항 설명서, 인도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 혹은 기술에 대한 언급, 상품의 섭취 결과에 대한 리포트) • http://fssai.gov.in/home/food-standards/Non-Specified-Food---Ingredients-Approval.html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제출: 상기 서류와 등록비용의 접수 ▪ 등록비용: 5만 루피

출처: 인도 FSSAI 홈페이지

□ 4. 관세제도

□ 가. 담당기관

- 관세 업무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재정수입국(Department of Revenue) 산하의 간접세·관세위원회(Central Board of Indirect and Customs, CBIC)가 담당
 - 재무부의 재정수입국은 한국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관세청의 역할을 함
 - 인도의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간접세를 인도의 관세청인 간접세·관세위원회에서 담당
 - 연방정부의 직접세 분야는 한국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직접세위원회(Central Board of Direct Tax, CBDT)가, 간접세 분야는 관세청에 해당하는 간접세·관세위원회(CBIC)가 담당
- 재무부 재정수입국 산하의 간접세·관세심판원(Customs, Excise Service Tax Appellate Tribunal, CESTAT)에서 관세 관련 소송을 취급함
- 이외 관련기관으로 법무부(Ministry of Law and Justice) 산하의 직접세심판원(Income Tax of Appellate Tribunal, ITAT)이 있음

□ 나. 관세 개요

» 전체 개요

- 인도의 관세통관 행정은 그 복잡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악명이 높았음
 - 정보가 투명치 않고 각 지역별 관할 세관별로 절차의 적용과 통관 소요기간이 상이하여 對 인도 무역의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였음

- 그러나 모디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의 모토 아래 인도 관세 당국은 2016년부터 각종 절차를 개선하고 있으며, 관세통관 행정의 시스템 도입을 통해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

» AEO 제도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당국이 기존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상 검사를 실시하던 방식에서 수출입자, 곧 기업을 검사의 대상으로 하는 제도임
- AEO는 검사율 축소, 통관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의 혜택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관세청의 노력으로 인도 측과 MRA 협정을 체결함
- 한국 AEO를 취득한 경우 인도 AEO 또한 활용이 가능함. 인도 AEO 또한 한국의 AEO와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통합간접세(GST)

- 2017년 7월부터 도입된 통합간접세(GST)의 경우 품목별로 0%, 5%, 12%, 18%, 28% 등의 세율로 구분되며 정부의 사정과 민간의 요구에 따라 도입 이후 계속해서 품목별 세율이 조정됨
- 대체적으로 세율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인도와의 교역 시 총관세율 산정을 위해 품목별 내국소비세 변경사항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관세 구조

- 인도는 매년 2월 초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관세 구조와 기본관세율 변동사항을 공시함
 - 그러나 정책적 수요에 따라 인도 재무부 고시로 기본세율이 수시로 바뀔 수 있음

- 식품의 경우 30-50%의 고관세가 부과되며, 여기에 수입부가가치세 또한 12-18%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총 관세는 50%에 이릅니다
- 한-인도 CEPA 양허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총 관세율이 낮아지나, 원산지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세번(Tariff Classification) 변경 및 역내 부가가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한-인도 CEPA 원산지 기준을 맞추어야 함
- 부록 6에 주요 식품 품목 관세율 현황이 제시되어 있음

□ 다. 관세항목

- 통합간접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관세항목들이 대폭 단순화됨
- 통합간접세제도는 기존의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특별부가관세(Special Additional Duty), 기타 지역별로 부과되는 각종 간접세와 진입세를 IGST 1개 항목으로 통합함
- 현재는 기본관세, IGST(현지 간접세 대응)에 일부 품목의 경우에 Compensation Cess가 추가되나 대부분의 수입품목에는 해당되지 않음
- IGST는 품목별로 적용 세율을 달리하는데, 0%, 5%, 12%, 18%, 28%가 차별적으로 부과됨
 - 생활필수품은 낮은 세율에 해당됨
 - 기본 관세율은 CBEC(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www.cbec.gov.in>)

[표 2-12] 관세 항목별 세율 및 관세액

단위: %, 루피

연번	관세항목	세율	관세액	총 관세액
(A)	상품가격(CIF 루피화 기준, Assessable Value)	-	10,000.00	-
(B)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	20.00	2,000.00	2,000.00
(EC)	사회보장 가산세(Social welfare charge)	10.00	-	200.00
(C)	부가가치세 부과 전 총가격(Sub-Total for Calculating IGST) (A+B+SWC)	-	12,200.00	-
(D)	부가가치세(IGST 'C')	18.00	2,196.00	2,196.00
(F)	특정목적세(Compensation Cess 'D')	0.00	0.00	0.00
(J)	총관세액(Total Customs Duty)	-	-	4,396.00

▪ CEPA 통관 시, 통관 전 주요 세부사항 확인이 필요함

- 인도의 특혜무역 협정 내용과 대상 품목, 원산지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FTA 포털 한-인도 CEPA 홈페이지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in/>에서 전문 확인이 가능함
- 원산지 일반 규정은 HS 6단위 세부번호 변경과 역내 부가가치 35% 기준으로, 939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PSR)이 도입됐으며, 기타 미소기준 도입 등으로 인도의 여타 FTA에 비해 전반적으로 완화된 원산지 기준이 도입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역외가공지로 개성공단이 인정돼 108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 원산지 조달 비중이 60%가 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산으로 인정함

라. 수입통관 시 CEPA 체크리스트⁶⁾

[표 2-13] 수입통관 시 CEPA 체크리스트

순서	주요 내용
1) 품목번호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한-인도 CEPA'의 특혜관세가 정해지고, 원산지 결정기준 역시 품목번호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해야 함 ▪ 관세청 FTA 포탈을 통해 상품의 품목번호는 인터넷,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확인: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관세청 홈페이지-품목분류) • 전화 확인: 국내: 1577-8577 / 해외: 02-3438-5199 • 방문 확인: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1번지 서울세관 10층
2) CEPA 관세혜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번호를 찾은 경우 사전에 관세혜택 여부를 확인하여 일반세율과 특혜관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특혜관세는 '관세청 홈페이지-FTA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증빙서류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인도 CEPA는 대한민국 또는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혜택이 부여됨 ▪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야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4) 특혜관세 적용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통관 시, 특혜관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수입신고인이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해야 함
5) 관련서류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의 수입자는 사후에 원산지 등 특혜관세 적용의 적법성을 검증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및 수출자와 생산자 등으로 부터 받은 입증서류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함

6) 출처: 한-인도 CEPA 주요내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 4 절. 식품 표시

□ 1. 식품표시 및 포장 개요

□ 가. 인도 식품 인증 및 표시제도

- 인도 정부는 국제 표준에 맞는 위생 안전 조항들로 구성된 식품안전표준법 (Food Safety and Standards Act, 2006)을 제정하고, 식품 분석을 위한 과학적 기준과 식품 제조, 보관, 유통, 판매와 수입에 관련된 규제사항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 인도 포장 및 라벨링 규정
 - 2011년 인도 보건가족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산하 식품

안전표준청(FSSAI)에서 최종적으로 도출한 식품안전표준규정(Food Safety and Standards Regulations, 2011)에 수록되어 있음

- 이 중 네 번째 규정인 포장 및 라벨링 규정(Packaging and Labelling)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음

* <https://archive.fssai.gov.in/home/fss-legislation/fss-regulations.html>

- 인도로 들어오는 개별 식품은 통관 전 식품안전표준청의 성분검사 의뢰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함
- 라벨링의 경우 아래의 9가지 사항에 대해 표기해야 하며, 통관 시 라벨링 상의 내용이 식품안전표준청의 성분분석 결과와 일치해야만 최종 통관을 위한 동의서(NoC)가 발급되어 통관이 가능함

식품 표시 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명, 식품 설명 2) 중량, 부피 등의 기준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표기된 구성 성분 3) 채식/비채식 여부 4) 제조자명과 주소, 수입상품의 경우 수입상의 이름과 주소 5) 순 중량 혹은 부피 6) 상품의 일련번호 7) 제조 혹은 포장일 8) 유통기한 9) 영양사항
---------------------	--

□ 나. 식품 포장 개요

- 식품의 준비, 포장 및 저장에 사용되는 아래에 명시된 물질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용기는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됨

- 녹슨 용기
- 에나멜 처리된 용기로서 깨지거나 녹슨 것
- 제대로 주석 처리되지 않은 구리 또는 놋쇠 용기
- IS : 20 규격에 적합한 화학 조성을 따르지 않는 알루미늄제의 용기 또는 기구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식품 품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장하거나 보관하기 위해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어진 용기는 다음의 인도 표준규격을 준수해야 함
 - IS : 10146 (식품과 접촉하는 폴리에틸렌에 대한 규격)
 - IS : 10142 (식품과 접촉하는 스티렌중합체에 대한 규격)
 - IS : 10151 (식품과 접촉하는 폴리염화비닐(PVC)에 대한 규격)
 - IS : 10910 (식품과 접촉하는 폴리프로필렌에 대한 규격)
 - IS : 11434 (식품과 접촉하는 아이오노머 수지에 대한 규격)
 - IS : 11704 (에틸렌아크릴산(EAA)에 대한 규격)
 - IS : 12252 (폴리알칼리테레프탈염산(PET)에 대한 규격)
 - IS : 12247 (나일론-6 중합체에 대한 규격)
 - IS : 13601 (에틸렌비닐아세트산염(EVA)에 대한 규격)
 - IS : 13576 (에틸렌메타아크릴산(EMAA)에 대한 규격)
 - 주석 및 플라스틱 용기는 식용유와 지방 포장에서 1회 사용 후 재사용 금지
- 캔 통조림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포장 요구사항
 - 모든 용기는 안전하게 포장되고 밀봉되어야 함
 - 캔의 외부는 찌그러짐이나 녹슴, 구멍, 이음새가 없어야 함

- 캔은 내용물이 새지 않아야 함
- 신선 식품의 목재 포장 요건
 - 목재 포장재가 ISPM-15 국제표준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었다고 표시되거나 취급방식이 명기된 식물위생증명서가 없으면 원목/단단한 목재로 포장된 물품은 세관에 반입이 금지됨
 - 수출 이전의 원목/단단한 목재 포장재는 210°C 이상에서 16시간 동안 48g/m³ 만큼의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소독 처리를 해야 하고, 또는 560°C에서 30분 동안 고온 열처리(HT) 또는 가마 건조(KD, Kiln Drying) 또는 화학적 압력 함침(CPI, Chemical Pressure Impregnation) 또는 기타 소독처리(ISPM-15의 HT규격을 충족하는 경우)를 해야 함
 - 상기 조건은 접착제, 열 및 압력 또는 이들의 조합을 사용하여 가공된 플라이우드, 파티클 보드, 오리엔탈 스트랜드 보드 또는 베니어와 같은 가공목재 포장재에는 적용되지 않음. 또한 위의 조건은 규정된 병해충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베니어 필러 코어, 톱밥, 목재 울 및 부스러기 및 얇은 나무 조각(두께가 6mm 미만)과 같은 목재 포장재에도 적용되지 않음

□ 다. 품목별 포장요건

» 우유 및 유제품

- 용기에 열처리된 우유 및 유제품을 병에 담거나 채우는 것은 기계를 이용해야 하며, 용기의 밀봉은 자동화 장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 포장은 철저한 세척 및 소독 후에 재사용할 수 있는 유형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제품에 대해서는 재사용할 수 없음
- 마지막 열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밀폐장치를 통해 밀폐되어야 하며, 밀봉장치는 일

단 용기가 개봉되면 개봉 증거가 명확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함

- 포장 직후, 유제품은 보관을 위해 알맞은 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함

» 식용유/지방

- 식용유와 지방 포장을 위한 주석 용기 제조에 사용되는 양철(Tin Plate)은 B.I.S 규정 No.1993, 13955, 9025 또는 13954에 명시된 최고 등급 품질규정에 따라야 함
- 이는 식용유와 지방 포장 주석 용기 규정 IS No.10325 또는 10339에 따름

» 과일 및 껌소

- 과일 제품이 포장된 모든 용기는 병 상단 또는 병의 목 부분에 있는 표시한 제품의 라이선스 번호와 특수 식별 마크를 제거하지 않고는 열 수 없도록 밀봉되어야 함
- 과일, 주스, 채소 통조림의 경우, 적합한 양철로 만들어진 위생 캔을 사용해야 함
- 병에 담긴 과일, 주스, 채소에는 오직 용접 밀봉이 가능한 병을 사용해야 함
- 주스, 스쿼시, 크러쉬, 코디얼, 시럽, 보리차 등의 음료는 안전하게 밀봉된 깨끗한 병에 포장되어야 함
 - 이 제품들을 얼려 얼음 형태로 판매할 경우, 적합한 용기에 담겨 판매되어야 함.
주스와 펄프는 황산화되었을 경우 나무통에 포장이 가능함
- 보존 식품, 잼, 젤리, 마멀레이드 등은 새 캔, 깨끗한 병, 새 통, 병, 도자기병, 알루미늄 용기 등이 사용 가능하고 안전하게 밀봉되어야 함
- 피클은 안쪽이 250 게이지의 폴리에틸렌으로 코팅된 깨끗한 병, 유리병, 나무통, 주석 용기 또는 적합한 옷칠 캔으로 포장될 수 있음

- 토마토케첩과 소스에는 깨끗한 병이 사용되어야 함. 만약 아세트산처럼 산성도가 0.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개방형 위생 캔도 사용할 수 있음
- 과일 통조림 및 건조 과일과 채소는 종이 백, 골판지 혹은 나무박스, 새 캔, 병, 도자기병, 알루미늄 용기 혹은 다른 적절한(승인된) 용기를 사용할 수 있음
- 과일과 채소 제품은 무균성이고 신축성 있으며, BIS 규정에 따라 고품질인 포장 자재를 사용해 포장

» 육류 통조림

- 적합한 양철로 만들어진 새 위생 캔이 사용되어야 함. 캔 안쪽은 옷칠 되어야 하며, 내용물을 넣은 이후 밀폐되어야 함. 사용된 옷은 황에 잘 견뎌야 하며, 지방이나 소금물에 용해되지 않아야 함
- 통조림 돼지고기를 넣은 캔은 안쪽이 식용 젤라틴으로 코팅되어야 하며, 내용물을 넣기 전에 채소 황산지로 코팅되어야 함
- 육류 제품은 밀봉된 용기에 포장되어 상업적 저장 및 이동 조건 하에서 부패되지 않아야 함

» 물 (포장수 및 생수 모두)

-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색깔이 없고 투명하고 쉽게 변하지 않는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병 및 용기(IS:10146에 따르면 폴리염화비닐, IS:10151에 따르면 폴리알칼리테레프탈레이트, IS:12252에 따르면 폴리프로필렌, IS:10910과 식품등급에 따르면 폴리카보네이트나 불순물이나 오염을 방지하기에 적합한 살균 유리)를 사용해야 함

□ 2. 표시사항

□ 가. 일반적 요구사항

<p>표시의 일반적 요구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사전포장 음식은 본 표시규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정보가 담긴 라벨을 달고 있어야 한다 2. 본 규정에서 요구하는 표시 세부사항은 영어 또는 데바나가리 문서에서는 힌디어를 사용한다 3. 사전 포장된 식품은 라벨에 거짓,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된다 4. 사전 포장 식품의 라벨은 용기와 분리되지 않도록 부착해야 한다 5. 라벨의 내용은 정상적인 구매 및 사용 조건에서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으며 눈에 잘 띄어야 한다 6. 용기에 포장지가 덮여 있는 경우, 포장지가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용기의 라벨을 포장지에서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가려지지 않아야 한다
------------------------------------	---

□ 나. 사전포장식품 기본 표시사항

» FSSAI요구 사항

- 모든 식품 포장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아래에 명시한 정보가 포함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표 2-14] 인도의 식품 기본 표시사항 (붉은색)

구 분	필수/선택
1) 식품 이름	필수
2) 성분 목록	필수
3) 영양 정보	필수
4) 비채식주의자용 또는 채식주의자용 표시	필수
5) 식품첨가물 표시	필수
6) 제조업체 또는 포장업체의 이름 및 전체 주소	필수
7) 순 중량	필수
8) 코드번호/롯데번호/배치번호	필수
9) 제조일 또는 포장일	필수
10) 유통기한	필수
11) 수입 식품의 원산지	일부 유형 생략 가능
12) 사용지침	일부 유형 생략 가능
13) 라이선스 번호	필수

[표 2-15] 상업 목적용 라벨링 표시사항 (초록색)

구 분	필수/선택
1) 인도 내 수입업자 이름 및 주소	국내 제조된 제품의 경우 생략 가능
2) 포장된 제품의 이름	필수
3) 순 중량	필수
4) 제조일자 또는 수입일자	필수
5) 최고 소매가	필수

□ 다. 개별 세부사항

» 식품 이름

- 식품의 이름은 포장에 포함된 식품의 상표명 또는 설명을 포함해야 함

» 성분 목록(List of Ingredients)

- 단일 성분 식품을 제외하고, 성분 목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라벨에 명시되어야 함
 - 성분 목록은 “성분”과 같은 적절한 이름이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함
 - 제품에 사용된 성분은 제조 당시의 중량 또는 부피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기재되어야 함
 - 성분목록의 성분에는 특정 이름을 사용해야 함. 각 분류에 속하는 성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분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음

[표 2-16] 성분과 분류 제목

분류	분류 제목
식용 식물성 기름 / 식용 식물성 지방	식용 식물성 기름 / 식용 식물성 지방 또는 둘 다 혹은 부분적으로 경화된 기름
동물성 지방 / 유지방 이외 기름	지방을 무엇에서 추출하였는지 명시해야 함. 돼지고기 지방, 라드 및 소고기 지방, 등 추출물은 특정 이름으로 명시해야 함
탄수화물, 화학적 탄수화물 제외	탄수화물
물고기가 다른 음식의 재료가 되는 경우의 모든 종류의 물고기. 해당 식품의 라벨 표시가 특정 물고기 종을 가리키지 않는 경우	물고기
가금육이 다른 음식의 재료가 되는 경우의 모든 종류의 가금육. 해당 식품의 라벨 표시가 특정 가금육을 가리키지 않는 경우	가금육
치즈 또는 치즈 혼합물이 다른 음식의 재료가 되는 경우의 모든 종류의 치즈. 해당 식품의 라벨 표시가 특정 치즈를 가리키지 않는 경우	치즈
모든 향신료 및 조미료 및 이의 추출물	적절한 이름의 향신료 및 조미료 또는 혼합 향신료/조미료
모든 종류의 껌 혹은 츄잉껌 베이스 제조에 사용되는 준비물	껌 베이스
무수 덱스트로스 및 덱스트로스 일수화물	덱스트로스 또는 포도당
모든 유형의 카세인	카세인
압착, 추출 혹은 정제 코코아 버터	코코아 버터
모든 설탕절임 과일	설탕절임 과일
우유 및 우유로만 만들어진 유제품	우유 고형물
코코아 콩, 코코아 닢, 코코아 매스, 코코아 프레스 케이크, 코코아 파우더 (고운 것/거친 것)	코코아 고형물

- 제품 자체가 두 가지 이상 재료의 복합물인 경우, 그러한 재료는 성분 목록에 표시되어야 하며, 괄호 안에 각 재료의 중량 또는 부피가 큰 순서대로 표기되어야 함
 - 식품첨가물 이외의 복합 재료들이 식품의 5%를 차지하지 않을 경우, 성분 목록에 작성할 필요가 없음
- 첨가되는 물은 복합 식품에 사용되는 소금, 시럽 또는 육수와 같은 성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분 목록에 표시되어야 함
 - 제조 과정에서 증발된 물 혹은 기타 휘발성 성분은 표시할 필요 없음
 - 또한, 물을 추가해야 하는 탈수 혹은 농축 식품의 경우, 해당 식품의 성분은 중량 또는 부피의 내림차순으로 표시해야 하며, 라벨의 지시사항에 따라 “제품의 내림차순”과 같은 문구를 명시해야 함
- 혼합물 또는 결합물로 판매되는 모든 식품 포장에는
 - 만약 단어나 그림, 또는 도표를 통해 성분이 표시된다면, 식품 제조 시 사용된 성분의 백분율을 표시해야 함
 - 식품의 명칭 내에 있지는 않지만, 식품의 특성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이며, 소비자가 음식에 넣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성분의 정량 표시를 생략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 식품 제조 시 사용된 성분의 백분율을 표시해야 함

» 영양 정보(Nutritional information)

- 100gm 또는 100ml 이상, 혹은 1인분 이상인 제품은 라벨에 다음과 같은 영양 정보를 표시해야 함
 - (i) 칼로리 단위의 에너지 양
 - (ii) 단백질, 탄수화물(설탕 양 특정) 및 지방의 양 (g 혹은 ml)

(iii)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영양소의 양

지방산의 양이나 종류 또는 콜레스테롤의 양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램(g) 단위의 포화지방산, 단일불포화지방산, 다중불포화지방산, 그리고 밀리그램(mg) 단위의 콜레스테롤 양을 표시하고, 그램(g) 단위의 트랜스지방산 양을 위에 명시된 요구사항 외에 추가로 표시해야 함

(iv) 비타민과 미네랄 수치 정보는 측정 단위로 표시되어야 함

(v) 1인분 당 영양성분 표시를 할 경우, 1인분 측정치 옆에 그램 또는 밀리미터 단위가 표시되어야 함

- 영양분이 풍부한 미네랄, 단백질, 비타민, 금속 혹은 금속 화합물, 아미노산, 효소 등은 라벨에 표시된 영양소의 양을 제공해야 함

(i) 밀, 쌀, 곡물, 향신료, 혼합 향신료, 허브, 조미료, 식탁용 소금, 설탕, 야자즙 조당과 같은 농산물 원물에 해당하는 제품; 가용성 차, 커피-치커리 혼합물, 포장된 음료수, 포장된 생수, 알코올음료, 과일, 채소, 가공되고 사전 포장된 채소, 단일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들, 피클, 포파덤과 같은 영양보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제품; 또는 병원, 호텔, 식품 서비스 판매처와 같은 곳에서 바로 섭취하기 위한 식품; 소비자에게 개별 판매하지 않는 벌크 식품 등에 대해서는 영양 정보 표시가 불필요함

(ii) 라벨에 명시된 영양소량의 적합성은 정해진 관행에 따름

이 조항의 목적상, 양으로 분류되는 영양소의 경우 분석 시 식품의 유통기한, 저장 및 고유 특성에 기반한 적절한 고려사항을 표시해야 함

(iii) 수소화 식물성 지방 또는 베이커리 쇼트닝이 사용되는 식품은 라벨에 '수소화 식물성 지방이 포함되거나 쇼트닝에 트랜스지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시해야 함

또한, 트랜스지방이 식품 1인분 당 0.2gm 미만인 경우 '트랜스지방 없음' 이라는 표시가 가능하며, 포화지방이 100gm당 0.1gm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포화 지방 없음' 이라고 표시할 수 있음

- 건강 정보, 영양 정보, 위험 감소 정보

- (i) “건강 정보”란 식품과 건강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것이며, 신체의 성장, 발달 및 정상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적 역할을 설명하는 영양 강조 표시, 특정 유익성에 관한 기타 기능적 강조 표시를 포함함

전체 식단의 맥락에서, 식품 또는 식품성분들의 섭취가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 생물학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건강 또는 기능의 개선, 또는 질병 위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을 의미함

- (ii) “영양 정보”란 식품이 에너지뿐만 아니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및 미네랄 등의 특정 영양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 암시하는 표현을 의미함

- (iii) 건강 정보의 맥락에서의 “위험 감소”란 질병 또는 건강 관련 상태의 주 위험 요소를 크게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2009년 3월 19일 이후에 해당 음료의 포장용으로 제조 및 사용되는 재사용 가능한 새 유리병의 경우 해당 병에 성분 및 영양 정보 목록이 제공되어야 함

» VEG 또는 NON-VEG 표시

- “비채식주의자” 식품의 모든 포장에는 제품이 비채식주의자 식품임을 나타내기 위해 아래에 명시된 기호 및 색상 코드가 명시되어야 함
 - 기호는 규정 2.2.2(4)(iv)의 표에 명시된 최소 크기 이상 직경을 가진 갈색 채우기 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아래 표시된 원의 직경의 두 배가 되는 측면을 갖는 갈색 테두리가 있는 사각형으로 구성되어야 함



Brown colour

- 계란이 비채식주의자 재료로 포함된 경우, 제조자, 포장업자, 또는 판매자는 해당 기호 외에 이 효과를 명시할 수 있음
- 모든 채식주의자 식품의 포장에는 이 제품이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품임을 표

시하기 위해 아래에 명시된 기호 및 색상 코드를 명시해야 함. 기호는 아래 그림과 같이 원 직경의 두 배가 되는 녹색 테두리가 있는 사각형 안에서 아래 표의 최소 크기 이상의 직경을 가진 녹색 채우기 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Green colour

▪ 로고 크기

주 디스플레이 패널 면적	직경 최소 크기(mm)
100cm까지. 사각형	3
100cm 이상, 넓이 500cm까지	4
500cm 이상, 2500cm까지	6
2500cm 이상 넓이	8

▪ 기호는 다음과 같은 곳에 눈에 잘 띄게 표시해야 함

- (i) 주 디스플레이 패널 반대 면에도 배경이 있는 포장
- (ii) 제품 이름 또는 브랜드 이름과 가까운 곳
- (iii) 모든 매체의 라벨, 용기, 팜플렛, 전단, 광고.

▪ 생수 또는 포장 음용수, 탄산수 또는 알코올음료, 액체 우유 및 우유 분말에는 적용되지 않음

» 식품첨가물 표시(Declaration regarding Food Additives)

▪ 각 분류에 속하며 식품에 사용하도록 허용된 식품첨가물의 목록에 있는 첨가물에 대해서는 다음의 분류명을 구체적인 명칭 또는 인정된 국제식별번호(INS)와 함께 사용해야 함

- 산도조절제, 산, 고결방지제, 발포방지제, 산화방지제, 증량제, 색소, 색소유지제,

유화제, 유화제 염류, 응고제, 밀가루개량제, 향미증진제, 발포제, 겔화제, 피막제, 습윤제, 보존제, 분사제, 팽창제, 안정제, 감미료, 증점제

- 추가적인 색소가 첨가될 경우, 식품 라벨에 아래 문구 중 하나가 대문자로 제품 성분 바로 아래에 표기되어야 함

허가된 천연색소 포함

또는

허가된 복합식용색소 포함

또는

허가된 천연 및 복합식용색소 포함

- 해당 문구가 식품 색상의 이름 또는 INS no.와 함께 표시되는 경우, 제품에 사용된 색상은 성분 목록에서 언급할 필요 없음
- 라벨에 언급되는 향미료 첨가물
 - 식품 물품에 외부 향미료가 첨가된 경우, 식품 포장에 부착된 라벨의 성분 목록 바로 아래에 다음과 같은 대문자로 문구가 표시되어야 함

향미료 포함

(식품안전표준규정(식품 표준 및 식품첨가물) 2011의 3.1.10(1)에 따른
향미료 유형 지정)

- 제품에 색소와 향미료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합된 문구 중 하나를 대문자로 표시해야 함. 즉, 식품 포장에 부착된 라벨의 성분 목록 바로 아래에 표시해야 함

허가된 천연색소 및 향미료 포함

또는

허가된 복합식용색소 및 향미료 포함

또는

허가된 천연 및 복합식용색소와 향미료 포함

- 합성 향미물질의 경우 라벨은 향미물질의 일반적 이름을 표시해야 하지만, 천연 향미물질 또는 천연과 동등한 향미물질의 경우 향미물질의 분류 등급이 라벨에 언급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지정된 라벨 선언 요건을 준수해야 함
 - * 식품안전표준규정(식품 표준 및 식품첨가물)의 규정 2.2.2(5)(ii) 및 규정 3.2.1에 따라 라벨에 색상 및/또는 향미료 첨가 관련 문구가 표시될 경우, 해당 색상 및/또는 향미료 추가는 성분 목록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음. 또한 위의 문구 외에, 향미료의 일반적 이름 또는 분류 등급도 라벨에 언급되어야 함
- 또한 색소 및 향미료가 복합적 사용되었을 때, 사용된 INS 번호도 성분목록 또는 공표와 함께 나타내야 함
- 또한 합성식용색소 및 혼합물의 모든 포장에는 총 염료 함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표시가 인쇄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 제조업체/포장업체 이름과 주소

- 제조자와 제조 단위가 서로 다른 장소에 위치해 있고 제조자가 포장업자 또는 병 포장업자가 아닌 경우, 포장 또는 병 포장 단위의 이름과 전체 주소가 모든 식품 포장에 명시되어야 함
- 만약 식품을 다른 제조업체 또는 회사의 서면 권한으로 제조, 포장 또는 병에 담는 경우, 라벨에는 제조자/회사를 대신하는 사람의 제조, 포장, 병용 장치의 이

름과 전체 주소(경우에 따라)가 표시되어야 함

- 식품이 인도로 수입되는 경우, 식품 포장에 인도에 있는 수입업자의 전체 주소와 이름을 포함해야 함
- 또한 인도 밖에서 제조된 식품을 포장하거나 병에 담는 경우, 해당 식품을 포함한 포장은 라벨, 식품의 원산지, 수입업자, 인도 내 포장 또는 병 포장 시설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해야 함

» 순 증량(Net Quantity)

- 증량, 부피 또는 수량에 따른 순 증량은 경우에 따라 모든 식품 포장에 기재해야 함
- 순 증량 표시 이외에, 액체형 매질(물, 설탕 또는 소금용해액, 과일 및 채소주스, 식초)에 포장된 식품은 수분 증량이 제외된 무게의 표시가 있어야 함
- 포장에 들어있는 상품의 순 증량을 표기할 때, 다음의 경우 포장지와 포장재의 증량은 표기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과자의 경우 많은 수의 작은 날개들이 각각 별도로 포장되어 있고, 포장지의 증량을 상품의 순 증량에서 제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개별 날개를 싼 포장지의 증량, 해당 과자류 포장지의 순 증량, 또는 개별 날개를 싼 포장지를 포함한 라벨지의 증량을 표기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a) 왁스칠된 종이류나 알루미늄호일 증량이 과자 및 포장지를 포함한 전체 증량의 8%를 넘지 않을 경우
- b) 개별 날개를 싼 포장지 무게를 뺀 나머지 포장지의 증량이 과자 및 포장지를 포함한 전체 증량의 6%를 넘지 않을 경우

» 코드/롯데/배치번호

- 제조과정에서 추적이 가능하고 유통과정에서 식별될 수 있는 식별마크인 배치 식별번호, 코드번호 또는 롯데번호는 라벨에 표기되어야 함
- 단, 멸균된 우유를 포함한 빵과 우유가 들어있는 포장의 경우, 롯데/코드/배치 식별번호를 라벨에 표기할 필요가 없음

» 제조일 또는 포장일(Date of manufacture or packing)

- 상품이 제조, 포장 또는 사전포장된 년, 월, 일이 라벨에 표시되어야 함
- 제품이 "특정 날짜 이전에 소비 최상"으로 표기되며, 그러한 유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조, 포장, 사전포장의 연도와 월을 표시해야 함
- 포장에 유통기한 3개월 미만의 상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상품이 제조, 준비되거나 사전포장된 날짜, 월 및 연도가 라벨에 언급되어야 함

» 유통기한

- 제품을 소비하기에 가장 적합한 월 및 연도를 대문자로 다음과 같이 표시함

"..년 ..월 이전 소비가 최상"

또는

"포장일로부터 ..개월까지 최상"

또는

"제조일로부터 ..개월까지 최상"

(주석: 공백 채움)

- 살균 또는 초고온처리 우유, 두유, 향첨가 우유, 빵, 드호클라, 피자, 도넛을 포함한 모든 포장 또는 과일, 채소, 고기, 생선 또는 기타 상품과 같은 무개포장을 포함한 모든 포장의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함

“..년 ..월 ..일 이전에 최상”

또는

“포장일로부터 ..일까지 최상”

또는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최상”

주석 :

(a) 공백 채움

(b) 년/월은 숫자로 쓰여짐

(c) 년도는 두 자리 숫자로 표시

- 아스파탐 포장의 경우, “.. 특정 일 수 이전 소비 최상” 대신 사용/권장 마지막 날짜가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포장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는 안 됨
- 영아용 우유 대용식품 및 영아용 식품의 경우, “.. 특정 일 수 이전 소비 최상” 대신 사용/최종 권장소비일이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또한, “.. 특정 일 수 이전 소비 최상” 표시는 다음에 해당되지 않음
 - (i) 와인 및 주류
 - (ii) 알코올을 10% 이상 함유하는 알코올음료
- 순 중량/순량, 영양 정보, 제조업체 이름 및 주소, 제조 날짜 및 “.. 특정 일 수 이전 소비 최상”을 제외한 위 조항이 재사용 가능한 유리병에 포장된 탄산수

(압력 하에서 이산화탄소가 함유된 식수 및 음용수)에 적용되지 않음

» 수입 식품 원산지

- 인도로 수입된 식품 라벨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함
- 제2국에서 식품의 특성을 바꾸는 가공을 한 경우, 해당 가공이 수행된 국가가 라벨에서 원산지로 간주 되어야 함

» 사용 지침

- 필요한 경우, 식품의 정확한 사용을 위해 라벨에 재구성을 포함한 사용 지침이 명시되어야 함

□ 라. 표시 방식

» 일반적 조건

- 본 규정의 요건과 상충되지 않는 한 서면, 인쇄 또는 그래픽 자료를 라벨에 표시할 수 있음
- 본 규정에 따라 포장에 요구되는 모든 표시는 다음과 같음
 - (i) 읽기 쉽고 눈에 띄며, 확실하고, 평범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함
 - (ii) 사이즈 번호와 색상 등이 눈에 잘 띄어야 함
 - (iii) 포장에 사용된 다른 형식, 문자 또는 그래픽 자료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도록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하며, 라벨의 배경과 현저히 대조되는 색상으로 인쇄되거나 새겨져야 함
 - 이때 유리 또는 플라스틱 표면 라벨 정보가 날아가거나, 침착되거나, 변경되는 경

우 또는 정보가 포장에 양각 또는 새겨진 경우, 대조적인 색상으로 표시될 필요 없음

- 포장의 표시가 필기 또는 손글씨 형태로 인쇄된 경우 표시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읽을 수 있어야 함
- 포장에 포함된 액체를 통해 읽도록 하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 됨
- 포장이 외부 용기 또는 포장지와 함께 제공되는 경우, 용기 또는 포장지는 그 자체가 투명하여 표시를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장에 표시되어야 함
- 라벨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포함하지 않아야 함
 - 라벨은 포장에 포함된 식품 또는 해당 식품의 수량, 영양가치, 또는 원산지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 강조 표시, 설계, 장치, 화려한 이름 또는 약어를 포함할 수 없음

» 주 디스플레이 패널

- 본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는 포장 또는 용기의 주 디스플레이 패널에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함
 - 모든 정보는 함께 분류하여 한 곳에 표시되거나, 사전 인쇄된 정보는 함께 분류하여 한 곳에 제공해야 함
 - 온라인 정보 또는 사전 인쇄되지 않은 정보는 다른 장소에 함께 분류하여 제공해야 함
- 주 디스플레이 패널의 면적은 적어도 다음 이상이어야 함
 - 직사각형 컨테이너의 경우, 같은 컨테이너 패널의 높이와 폭을 가진 제품 중 가장 큰 면적 제품의 40%
 - 원통형 또는 거의 원통형, 원형 또는 거의 원형, 타원형 또는 거의 타원형 컨테이너의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높이와 평균 원주의 20%

- 다른 형태의 컨테이너의 경우, 컨테이너 전체 표면적의 20%에 해당되는 라벨이 용기에 단단히 부착된 경우를 제외하고 컨테이너의 전체 표면적의 10% 이상이어야 함
- 용량이 5cm³ 이하인 포장의 경우, 주 디스플레이 패널은 패키지 또는 용기에 단단히 부착하고, 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카드 또는 테이프를 부착할 수 있음

» 표시의 숫자 높이

- 주 디스플레이 패널에 요구되는 숫자의 높이는 적어도 아래 이상이어야 함
 - 중량 또는 부피 측면에서 순 수량이 제시된 경우

중량/부피	최소 길이, mm 단위	
	일반적 사례	용기를 입김으로 불어서 만들었거나, 주조하였거나, 용기에 구멍이 있는 경우
50g/ml 까지	1	2
50g/ml 이상 200g/ml 이하	2	4
200g/ml 이상 1kg/L 이하	4	6
1kg/L 이상	6	8

- 순 수량이 길이, 면적 또는 숫자로 제시된 경우

주 디스플레이 패널 면적	최소 길이, mm 단위	
	일반적 사례	용기가 입김으로 불어서 만들었거나, 주조하였거나, 구멍이 있는 경우
100cm ² 까지	1	2
100cm 이상, 500cm ² 까지	2	4
500cm 이상, 2500cm ² 까지	4	6
2500cm 이상	6	8

- 표시 글자의 높이는 1mm 이상이어야 함. 용기를 입김으로 불어서 만들었거나, 주조하였거나, 양각하였거나, 용기에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 글자의 높이는 2mm 이상이어야 함
 - 글자 또는 숫자의 넓이는 높이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지만, 숫자 "1"과 문자 i, 1&의 경우 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제품의 사용 또는 준비 지침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의 크기는 3mm 이상이어야 함

□ 마. 라벨링 방식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제한사항

≫ 영아용 우유 대체제 및 영아용 식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

- 2011년 식품안전표준규정(식품규격 및 식품첨가물)에 따라 표준이 규정되지 않은 영아용 우유 대체제 및 영아용 식품은 해당 식품의 물품 및 라벨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판매를 위한 제조, 전시 또는 보관할 수 있음
- 이 규정에 포함된 표시 요건은 다른 조항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영아용 우유 대체제 및 영아용 식품의 모든 포장에 "IMPORTANCE NOTICE"라는 단어를 명확하고 눈에 잘 띄고 쉽게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대문자 표시해야 하며, 아래에 명시한 조건에 따라야 함
 - "MOTHER'S MILK IS BEST FOR YOUR BABY" 문구가 대문자로 표기되어야 함. 사용된 문자의 크기는 5mm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포장의 중앙 패널에 있어야 함. 영아용 우유 대체제 또는 영아용 식품에 부착 및 인쇄된 텍스트의 색상은 라벨의 배경색과 대조되어야 함. 유아용 식품의 경우, "유아 식품은 6개월 이후 2살 이전까지만 사용해야 한다"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함
 - 영아용 우유 대체제 또는 영아용 식품의 사용에 대한 필요성과 적절한 사용방법에 관해 보건 의료인의 조언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문구

- 영아용 우유 대체재 또는 영아용 식품이 영아의 유일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는 경고
- 영아용 식품의 경우 도구, 병 및 젓꼭지 청소 등의 적절하고 위생적인 과정 지침 (예: 스프레이 건조)과 부적절한 과정 이행 시의 건강 위험 경고를 표시해야 함
 - "경고/주의 - 영유아 식품/영유아 우유 대체재를 위생적으로 다루는 것이 건강에 가장 중요함. 희석된 것을 먹일 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므로 지시된 것보다 적은 양을 먹이지 말 것. 농축된 식품의 경우 영아가 필요로 하는 수분이 부족하므로 지시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먹이지 말 것"
- Kilo cal/Joules 단위의 에너지 값을 포함한 제품의 100gms 당 영양소의 대략적인 구성
- "밀폐 용기,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명시하는 보관 조건(개봉 후 언급된 기간 또는 만료일 중 더 이른 기간 내에 내용물을 사용)
- 사용 지침과 남은 식품에 대한 처리 방법
- 스푼 사용법 및 한 스푼의 양
- 제조일 및 유효 일자를 나타내는 배치번호, 월, 연도
- 영아용 우유 대체재를 제외한 제품이 고품질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소 2.5인 단백질 효율성 비율(PER)
- 식품첨가물의 특정 명칭(허용된 경우)은 적절한 등급 명칭 외에 추가로 표시되어야 함
- 영아용 우유 대체재 또는 영아용 식품과 관련한 용기 및 라벨에는 영아나 여성의 사진이 있어서는 안 됨
 - 영아용 우유 대체재나 영아용 식품의 판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그림, 기타 그래픽 자료나 문구가 없어야 함
 - "모유처럼 만든" 또는 "실제와 같은" 또는 기타 유사한 단어는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영아용 우유 대체재 또는 영아용 식품의 포장 및 라벨에는 "완전한 단백질 식품", "에너지 식품", "완전한 식품" 또는 "건강식품"이라는 문구가 표시될 수 없음
- 조산아(37주 이전)/저체중아(2500gm 미만)를 위한 영아용 우유 대체재 용기에는 상기에 명시한 내용 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표시해야 함
 - 제품 중심부에 이름과 함께 "PREMATURE BABY(BORN BEFORE 37 WEEKS)"/"LOW BIRTH WEIGHT (LESS THAN 2.5 KG)"을 대문자로 표기
 - 조산아/저체중아 영아 우유 대체재는 "산모의 모유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즉시 의사의 조언에 따라 철회되어야 한다"라는 문구
 - "TO BE TAKEN UNDER MEDICAL ADVICE" 표기
- 우유 또는 유제품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우유 또는 유제품을 함유하지 않음"이라는 라벨을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함
- 유당 불내성 또는 유당 및 수크로오스 불내성 유아를 위한 영아용 우유 대체재의 용기 라벨은 눈에 띄게 "유당 없음 또는 수크로오스 없음"을 표시해야 하며, "의학적 조언 하에 섭취"라는 문구를 대문자로 표시해야 함
 - "유당 무첨가 영아용 우유 대체재는 유당 소화장애로 인한 설사 시에만 사용해야 한다"
 - "유당/수크로스가 없는 영아용 우유 대체재는 불내성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섭취를 그만둬야 한다"
- 젖소/버팔로 우유 및 콩 단백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영아를 위한 영아용 우유 대체재 용기의 라벨에는 눈에 띄게 "저자극성 분유"라는 문구와 대문자로 "의학적 조언 하에 섭취" 문구를 표시해야 함
- 테두리로 둘러싸인 표시문구
 - "아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문구 주위에는 테두리가 있어야 함

- 테두리의 거리: "아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단어와 둘러싸고 있는 선의 거리는 적어도 1.5 mm 이상이어야 함

» 식용 유지 라벨링

- 식용 유지의 포장, 라벨 또는 광고는 "완전 정제됨", "추가 정제됨", "미세 정제됨", "이중 정제됨", "초강력 정제됨" "반-콜레스테롤", "항-콜레스테롤", "심장 통증 누그러뜨림", "콜레스테롤 친화적", "불포화지방" 또는 기타 상품을 과장하는 표현들을 사용할 수 없음
- 용매-추출 기름, 지방 제거 제품 또는 식용 밀가루를 판매하기 위해 포장되는 모든 용기는 생산자가 판매 시 영어 또는 힌두어로 다음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함 (데브나그리 문자)

- 용매-추출 기름 또는 지방 제거 제품 또는 식용 밀가루의 이름, 상표명(있는 경우)

- 식품안전표준규정(식품 표준 및 식품첨가물) 2.2.6(1)에 명시된 "정제" 등급의 추출유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름의 경우, 식물성 식용유/바나스파티에는 다음과 같이 50mm 이상 크기의 표시를 라벨에 적어야 함

(a) 2011년 식품안전표준규정(식품 표준 및 식품첨가물) 2.2.6(1) 하의 "반-정제된" 혹은 "원료 등급 1" 기름일 경우, "직접 섭취하기에 알맞지 않음"

(b) 위 (a) 항목에 따른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기름의 경우 "비식용, 오직 공업용 목적"

- 생산자의 이름과 사업 정보
- 용기 내용물의 순 중량
- 제조 년, 월, 배치 번호

용매-추출 기름이 레일 탱크 웨건 또는 노면 탱커로 대량으로 운송되거나, 지방 제거 제품 또는 식용 밀가루가 사일로에 보관하기 위해 대량으로 운송되거나, 대량 선적을 위해 운송되는 경우, 상기 세부 사항이 첨부 문서에 수록되면 규정

을 만족함

- 용매가 포장된 모든 용기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판매할 때 인도 표준기관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함
- 본 규정에 제공된 다른 라벨 표시 요건 외에 바나스파티, 마가린, 베이커리 쇼트닝, 혼합 식물성 식용유, 혼합 지방스프레드 및 정제 식물성오일을 포장하는 모든 용기에는 데브나그리 스크립트의 영어 또는 힌두어로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a) 내용물의 이름과 설명, “아르게모네 오일 불포함”
 - b) 내용물의 크기와 부피
- 모든 정제 기름 용기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이 있어야 함

정제 (기름 이름) 기름

- 수입 식용유의 경우 용기에 접두사로 "수입"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함
- 야자유와 땅콩유의 혼합물을 포함한 모든 포장은 다음과 같은 라벨을 부착해야 함

팜올레인과 땅콩유 혼합

**팜올레인 ...퍼센트
땅콩유 ...퍼센트**

- 겨자유와 함께 수입된 유채유를 포함한 모든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수입 유채유의 겨자유

**수입 유채유 ...퍼센트
겨자유 ...퍼센트**

- 쌀겨유를 30% 이상 함유하는 바나스파티의 모든 포장은 다음과 같은 라벨을 부착해야 함

**이 포장된 바나스파티는 쌀겨유를
무게상 3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있음**

- 지방 스프레드를 포함한 모든 포장은 다음과 같은 라벨을 부착해야 함

우유지방 스프레드
.....이전 사용
포장 날짜

총 우유지방 함량 비율 (중량 기준).....

....

혼합 지방 스프레드
.....이전 사용
포장 날짜

중량 비율

우유지방 함량

총 우유지방 함량 비율 (중량 기준)

계소지방 스프레드
.....이전 사용
포장 날짜

총 지방함량 비율 (중량 기준)

- 식물성 기름에 아나토 색상을 포함한 용기 포장은 다음 라벨을 부착해야 함

기름(기름 이름)에 아나토 색상 사용

- 혼합 식용유를 포함한 모든 포장은 다음 라벨을 부착해야 함

이 혼합 식물성 식용유는 다음 혼합물을 포함함
(i).....퍼센트 (무게상)
(ii).....퍼센트 (무게상)
**(식물성 식용유의 이름 및 특성 (원물 또는 정제된 형태)
포장 날짜.....)**

- 제품의 전면/중앙 패널에는 이름과 함께 굵은 대문자로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어야 함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 금지

» 허용된 식품색소 라벨링

- 용기에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기재한 라벨이 부착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사람도 식품 내 또는 식품 사용이 허용된 합성 식품색소를 판매할 수 없음
 - (i) “식품색소” 라는 단어
 - (ii) 염료의 화학 물질 및 일반적, 상업적 이름 및 색상 지수
- 합성 식품색소의 경우
 - (i) “혼합 식품색소” 라는 단어
 - (ii) 혼합물에 사용된 염료의 화학 물질 및 일반적, 상업적 이름 및 색상 지수
- 합성 식품색소제제의 경우
 - (i) “식품색소제제” 라는 단어
 - (ii) 제제에 사용된 다양한 재료들의 이름

» 방사선조사식품 라벨링

- 방사선조사식품-이온화 방사선으로 처리된 식품의 라벨에는 해당 식품의 명칭에 근접하게 처리를 나타내는 서면 문구가 표시되어야 함
 - 또한 모든 방사선조사식품의 포장은 다음과 같은 표시 로고를 포함해야 함

방사선조사 방법으로 가공됨
방사선조사 처리 날짜



방사선조사 허가 번호

방사선조사 목적

» 기타 식품 라벨링 요구사항

☞ 커피-치커리 혼합물

- 커피와 치커리의 혼합물을 포함한 모든 포장에는 다음 표시를 인쇄한 라벨을 부착해야 함

치커리 혼합 커피
이 혼합물은 다음을 포함함
커피.....퍼센트
치커리.....퍼센트

- 인스턴트 커피와 치커리 혼합물을 포함한 모든 포장에는 다음 표시를 인쇄한 라벨을 부착해야 함

**커피와 치커리 혼합물로부터 만들어진
인스턴트 커피-치커리 혼합물**
커피.....퍼센트
치커리.....퍼센트

☞ 농축우유 또는 건조우유

- 농축우유 또는 건조우유를 포함한 모든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 중 하나를 인쇄하거나 주정부가 허용할 수 있는 유사한 다른 표시를 라벨에 부착해야 함
- 농축우유의 경우(무가당)

무가당 농축우유
(연유) 이 캔은 (x).....리터의 우유와 동등한 양을 가짐

- 농축우유의 경우(가당)

가당 농축우유
이 캔은 (x).....리터의 설탕 첨가 우유와 동등한 양을 가짐

- 농축 탈지우유의 경우 (무가당)

무가당 농축 탈지우유
(농축 탈지 우유) 이 캔은 (x) 리터의 탈지우유와 동등한 양을 가짐

- 농축 탈지우유의 경우 (가당)

가당 농축 탈지우유
이 캔은 (x) 리터의 설탕 첨가 탈지우유와 동등한 양을 가짐

- 농축우유의 경우(가당, 향첨가)

이 제품은의 맛이 첨가됨
6개월 이하의 영아 섭취 금지

- 농축우유/농축 탈지우유(무가당), UHT(Ultra High Temperature) 처리로 멸균되었을 경우

이 제품은 UHT 처리로 멸균됨

- 우유 분말의 경우

우유 분말
이 캔은 (x)....리터의 우유와 동등한 양을 가짐

- 레시틴을 함유하는 우유 분말의 경우

이 포장의 우유 분말은 레시틴을 함유하고 있음

- 부분 탈지우유 분말의 경우

부분 탈지우유 분말
이 캔은 (x)....리터의우유지방을 함유하는
(x)....리터의 부분 탈지우유와 동등한 양을 가짐

- 탈지우유 분말의 경우:

탈지우유 분말

이 캔은 (x)....리터의 탈지우유와 동등한 양을 가짐

- 각 사례에서 표시 (x)에 적절한 숫자를 단어와 그림으로 첨부하여야 함. 예를 들어, "one and half (1 1/2)", 혹은 8/4 또는 1/2로 표현되는 분수
- 희석 규정을 제외하고, 농축우유 또는 건조우유 포장에 표시에 유사 문구 또는 "기계사용 탈지" "탈지" 또는 "아기에 적합하지 않음"과 같은 문구를 포함할 수 없음

“이 포장의 내용물과 함께 우유 또는 탈지유(경우에 따라)의 구성 이상으로 내용물을 만들려면, 이 농축우유나 건조우유에 부피별로 물을 넣어야 함”

영아에게 적합하지 않은 감미료 첨가 연유 및 기타 유사 제품은 영아에 대한 수정 지침을 포함할 수 없음
- 농축 탈지우유 또는 건조 탈지우유 포장의 라벨 내용물의 설명 일부에 "우유"라는 단어가 표시되는 경우, "기계 탈지" 또는 "부분 탈지"라는 단어 바로 앞이나 뒤에 와야 함

❖ 액상우유

- 액상우유의 우유병/파우치/테트라팩의 뚜껑에는 함유된 우유 특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 표시는 전체 또는 아래에 표시된 약어로 표시될 수 있음
 - (i) 버팔로 우유는 'B'자로 표기될 수 있음
 - (ii) 젓소 우유는 'C' 자로 표기될 수 있음
 - (iii) 산양유는 'G' 자로 표기될 수 있음
 - (iv) 표준 우유는 'S' 자로 표기될 수 있음

- (v) 톤드우유는 'T' 자로 표기될 수 있음
- (vi) 더블 톤드우유는 'DT' 로 표기될 수 있음
- (vii) 탈지우유는 'K' 로 표기될 수 있음
- (viii) 저온 살균 우유는 'P'라는 문자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 뒤에 우유 등급이 표시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저온 살균 버팔로 우유에는 'PB'라는 문자가 포함되어야 함
- (ix) 포장/캡/백은 우유에 함유된 우유 특성, 우유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전시되는 색상의 분류를 적절한 색으로 표시해야 함. 단, 이는 해당 지정 담당자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매체를 통해 정보가 전파된 경우여야만 함

❖ 아이스크림

- 거리 또는 공공장소 혹은 가판대, 카트, 손수레, 수레, 직원이나 차량 없이 사용되는 바구니, 작은 유리병, 쟁반 또는 기타 용기에 아이스크림 또는 혼합 아이스크림을 파는 경우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를 수레, 차량 또는 컨테이너에 직접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함

❖ 힌그라

- 힌그라를 포함한 모든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인쇄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이 컨테이너에는 힌그라(이란,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입한 것)가 포함되어 있으며 식품안전표준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증됨”

❖ 그 외 식품

- 검은 후추의 모든 포장에는 아그마크 밀봉 외에 다음 라벨을 부착해야 함

검은 후추

- "카시아 바크"를 포함한 모든 포장에는 다음 라벨을 부착해야 함

카시아 바크(TAJ)

- 시나몬을 함유하는 모든 포장에는 다음 라벨을 부착해야 함

시나몬(계피)

- 식용유가 첨가된 모든 칠리 포장에는 다음 라벨을 부착해야 함

이 포장의 칠리는 2퍼센트 이하의 혼합(기름 이름) 식용유를 포함하고 있음

- 전분을 함유한 아이스크림, 컵피, 컵파 및 초콜릿 아이스크림 포장은 라벨에 표시를 부착해야 함
- 마르살라 : 기름에 튀긴 혼합 마르살라의 모든 포장에는 다음 라벨을 부착해야 함

혼합 마르살라 (튀김)

이 마르살라는 (기름 이름)으로 튀겨졌음

- 합성 아사포에티다의 모든 용기에는 화합물에 사용된 식용 전분 또는 식용 시리얼 밀가루의 대략적인 구성을 라벨에 표시해야 함
- 개량제 또는 표백제로 처리된 마이다를 포함한 모든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을 부착해야 함

개량제/표백제로 처리된 밀가루, 베이커리에서만 사용 가능

-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카라멜을 제외한 천연 착색물질을 첨가한 모든 우유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이 포장의 우유에는 허가된 천연 색소가 포함되어 있음

- MSG를 포함한 식품의 모든 광고 또는 포장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함

이 (첨가된 식품 이름)의 포장에MSG
12개월 이상의 영아 섭취는 권장하지 않음

- 정제된 설탕 기름의 용기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을 표시해야 함

베이커리 및 과자류에만 사용 가능한 정제 설탕 기름

- 허가된 고결방지제를 함유하는 식탁용 요오드화 소금과 철분강화 일반소금의 용기나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식탁용 요오드화 소금과 철분강화 일반소금* 허용된 고결방지제 함유

- 철분 강화 일반소금의 모든 용기 또는 포장에 다음과 같은 라벨을 부착해야 함

철분 강화 일반소금

- 이산화황 함량 40ppm을 초과하는 건조 포도당시럽의 모든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설탕과자류에만 사용되는 건조 포도당시럽

- 향첨가 차를 포함한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을 부착해야 함

“향첨가 차 (어용 향미료의 일반적 이름/비율)
번호

- 식품안전표준규정(식품 표준 및 식품첨가물)에 명시된 합성 감미료를 포함하는 식품의 모든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을 부착해야 함

- (i) 이는(합성 감미료의 이름)을 포함함
- (ii) 아이들에게는 권장하지 않음
- (iii) (a) *감미된 설탕의 양gm/100 gm
- (b) 제품에 설탕 비첨가
- (iv) *페닐케톤뇨 증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아스파탐 첨가된 경우)

- 식품안전표준규정(식품 표준 및 식품첨가물)에 언급된 합성 감미료를 포함하는 모든 식품 포장과 광고는 다음과 같은 라벨을 부착해야 함

합성 감미료 포함 및 열량 인지

- 감미료 표시는 제품의 이름 또는 상표명과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명칭/무역명 크기의 절반이어야 함. 표시는 두 문장 혹은 한 문장으로 가능함
- 테이블용 감미료로 판매되는 아스파탐(메틸 에스테르), 아세설팜 K, 수크랄로스 및 사카린 나트륨의 모든 포장 및 광고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을 표시해야 함

- (i) (합성 감미료 이름).....포함
- (ii) 아이들에게는 권장하지 않음

- 테이블용 감미료로 판매되는 아스파탐(메틸 에스테르) 포장 및 그러한 제품의 광고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이 표시해야 함

“페닐케톤뇨 증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 식품안전표준규정(식품 표준 및 식품첨가물)에 언급된 아스파탐(메틸 에스테르)과 아세설팜칼륨 감미료 혼합물을 포함하는 식품의 모든 포장은 다음과 같은 라벨을 부착해야 함

이(음식 이름)은 아스파탐(메틸에스테르)과 아세설팜칼륨 혼합물을 포함하고 있음
어린이에게는 권장하지 않음

(a) *첨가된 설탕의 양gm/100gm

(b) 제품에 설탕 비첨가

* 페닐케톤뇨병 증상에는 해당되지 않음(아스파탐 첨가 시)

- 식품안전표준규정(식품 표준 및 식품첨가물)에 언급된 아세설팜 칼륨과 수크랄로스 감미료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모든 식품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을 부착해야 함

(i) 이(식품 이름)은 수크랄로스와 아세설팜염 혼합물을 포함함

(ii) 어린이에게 권장하지 않음

(c) *(a) 첨가된 설탕의 양gm/100gm

* (b) 제품에 설탕 비첨가

* 페닐케톤뇨병 증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아스파탐 첨가 시)

- 팬 마사라의 모든 포장과 관련된 광고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전달해야 함

팬 마사라를 씹는 것은 건강에 위험함

- 수파리와 그에 관련된 모든 광고는 눈에 띄고 굵은 글씨로 다음과 같은 경고를 전달해야 함

수파리를 씹는 것은 건강에 위험함

- 추가 나트륨 또는 칼륨 소금을 포함한 과일착즙의 모든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이 표시되어야 함

추가 나트륨/칼륨 소금을 포함하고 있음

- 나타마이신으로 처리된 치즈(하드)의 모든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표면이 나타마이신으로 처리되었음

- 30% 이상의 쌀겨유로 만든 베이커리 및 공업용 마가린의 모든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이 베이커리용/공업용 마가린은 30% 이상의 쌀겨 기름을 함유함

- 탄산음료 또는 비탄산음료에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향미 에멀션 및 향미 페이스트의 용기 및 포장은 희석 지침 외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포함해야 함

향미 에멀션 및 향미 페이스트를 탄산음료와 비탄산 음료에 사용함

- 식수의 모든 포장에는 대문자로 다음 표시들을 포함해야 함

포장된 식수

- 포장된 음용수의 일회용 플라스틱 병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어야 함

사용 이후 병을 찌그러트려야 함

- 미네랄워터의 모든 포장은 규정에 명시된 글자 크기를 가진 대문자로 다음과 같은 표시를 포함해야 함

미네랄워터

- 일회용 미네랄워터 플라스틱 통은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함

사용 이후 병을 찌그러트려야 함

- 카페인을 함유한 모든 식품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을 부착해야 함

카페인 함유

- 제품에 카페인 첨가된 경우, 용기/병의 본체에 카페인 함유를 표시해야 함
- 또한 재활용 유리병의 경우, 꼭대기에 표시할 수 있음
- 저지방 패너/차나의 모든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을 부착해야 함

저지방 패너/차나

- 식용 왁스 폴리필름으로 싸여진 치즈의 모든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을 부착해야 함

섭취 전 외부포장 제거

- 냉동 디저트/빙과류의 모든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본 냉동 디저트/빙과류는 유지방/식용 식물성 기름/식물성 지방을 함유함

*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줄을 그어 삭제할 수 있음

- 모든 일반 소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을 부착해야 함

요오드화 / 철분 강화 / 동물용 / 보관용 / 의료용 / 공업용 일반소금

*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줄을 그어 삭제할 수 있음

- 올리고프룩토스를 포함한 비스킷, 빵 및 케이크의 모든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어야 함

올리고프룩토스 포함(식이섬유) - gm/100gm

- 왁스로 코팅된 경우 신선한 과일의 모든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을 부착해야 함

왁스 코팅 (왁스 이름)

- 식용 젤라틴은 “젤라틴 식품 등급”으로 표시되어야 함
- 폴리올을 포함한 모든 식품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을 부착해야 함

폴리올은 완화(설사)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폴리덱스트로스 함유 식품의 모든 포장에는 다음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폴리덱스트로스는 완화(설사)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상품 라벨에 대한 특정 규제사항**

- 라벨은 특정 조항이나 규정의 어떠한 암시, 모순, 변화를 포함하는 규정을 언급하거나, 제시하거나, 혹은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됨
- "의료인이 권장함" 문구 또는 해당 식품을 의료인이 권장, 처방 또는 승인하거나 의료 목적으로 승인한 것을 암시하거나 제시하는 문구가 포장의 라벨에 표시될 수 없음
- 모조임을 보여주는 단어의 무단 사용 금지
 1. 규정에 따라 해당 단어나 단어의 사용이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식품을 포함한 포장에 부착된 문구 또는 라벨에는 '모조'라는 단어 또는 해당 제품이 식품의 대체품임을 암시하는 문구가 표시될 수 없음
 2. 과일시럽, 과일주스, 과일 스쿼시, 과일음료 등 식품안전표준규정에 따라 표준화된 기타 과일제품의 경우 규정에 제시된 양의 과일주스, 과일 펄프 또는 과일 함량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 과일주스, 과일 스쿼시, 과일음료, 코디얼, 크러쉬 또는 다른 과일제품으로 표기해서는 안됨
 3. 명시된 양의 과일을 포함하지 않고, 단어 또는 그림 표현에 의해 과일이 포함된 제품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소비자에게 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식품은 라벨에 '향첨가(과일의 이름)'를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4. 천연 향미료 및 천연 향미물질 또는 천연제품과 동등한 향미물질, 합성 향미물

질을 단일 또는 그 조합으로 포함한 식품 혹은 과일 향미료만을 포함한 모든 식품은 과일 제품으로 설명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제품을 설명하는 데 "향첨가"(과일 이름)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함

5. 과일 주스나 과육이 들어 있지 않은 탄산수는 소비자가 과일 제품이라고 믿도록 유도할 수 있는 라벨을 부착해서는 안 됨

6. 비타민 C로 강화된 모든 과일과 채소 제품은 제품의 40 mg 이상의 아스코르브산을 포함해야 함

- 모조제품들에 "순수"라는 표시를 할 수 없음
- 음용수에 대해 표시할 수 없는 사항들 (포장 및 미네랄워터 모두)
 - (i) 소비자의 건강과 관련된 기타 유익한 효과에 대한 표준 클레임이 적용되는 제품의 특성과 관련하여 의약품(예방, 완화 또는 치료) 효과에 관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음
 - (ii) 지역 또는 특정 장소의 명칭은 해당 상표명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수집된 포장수를 가리키지 않는 한, 상표명의 일부에 들어갈 수 없음
 - (iii) 판매 중인 물의 특성, 출처, 구성 및 특성에 대해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진술 또는 그림 장치의 사용은 금지됨

□ 바. 라벨링 요구사항 예외

- 포장의 표면적이 100 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해당 포장의 라벨은 재료 목록, 로트 번호 또는 배치 번호 또는 코드 번호, 영양정보 및 사용지침의 요건에서 면제되지만, 도매를 위한 패키지 또는 멀티피스 패키지에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표면적이 30평방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에 '제조일' 또는 '특정 날짜 이전 섭취' 또는 '유통기한'을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정보는 도매를 위한 패키지 또는 멀티피스 패키지에 제공되어야 함

- 병에 담아 시판되는 액체 제품의 경우, 이러한 병을 재사용하려는 경우 성분 목록의 요건은 면제되어야 하지만, 영양정보는 라벨에 표시되어야 함
 - 2009년 3월 19일 이후에 제조된 유리병의 경우, 병에 대한 성분 및 영양정보 목록이 제공되어야 함
- 유통기한이 7일 이하인 식품의 경우, 포장된 식품의 라벨에 '제조일'을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제조자나 포장업자가 라벨에 '특정 날짜까지 섭취'를 언급해야 함
- 도매를 위한 패키지의 경우 재료 리스트에 관한 세부 사항, 제조/포장일, 방사선 조사식품의 유효기간 라벨 및 채식주의/비채식주의 로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됨

□ 사. 첨가, 혼합 또는 결핍에 대한 통지

- 식품이 특정 성분의 첨가, 혼합, 결핍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의 모든 광고, 가격표, 거래목록 또는 라벨은 식품이 특정 성분의 첨가, 혼합 또는 결핍과 관련되어 있다는 설명이 있어야 하며, 해당 추가, 혼합 또는 결핍의 특성과 양을 명시해야 하고, 이러한 식품의 광고, 가격표, 거래목록 또는 라벨에 해당 식품이 순수하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단어를 포함할 수 없음
 - 다음 사항을 혼합물 또는 추가물로 간주하지 않음
 - 버터나 마가린의 소금
 - 음식의 비타민
- 첨가, 혼합 또는 결핍에 의해 순수하지 않은 식품을 포함한 모든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는 접착 라벨을 부착해야 함

이 (a).....는 (b)...이아 (c)...퍼센트의 혼합/첨가물을 포함하고 있음

(a) 음식의 이름 삽입

(b) 첨가물의 양 삽입

(c) 부족한 재료의 이름이나 첨가물 이름 삽입

- '혼합물 포함'이라는 단어는 '추가 포함' 또는 '-가 부족'이라는 문구로 대체해야 함
- 첨가, 혼합 또는 결핍과 관련된 식품의 구매자가 라벨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는 한,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 판매 당시 구두로 선언문 라벨에 포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첨가, 혼합, 결핍과 관련된 그 어떤 식품도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식품을 순수한 상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첨가, 혼합, 결핍과 관련된 규정은 감미료, 당과류, 비스킷, 베이커리제품, 가공 과일, 탄산수, 채소, 향미료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3. 식품표시 예시

100% VEG
content



Malabar Chicken Curry

Spicy and flavourful, this popular and authentic Malabar recipe, is prepared by adding roasted coconut with spices to the chicken & is seasoned with curry leaves and whole red chillies to give it a hot spicy twist.

1

Method of Preparation | Cooking Time : **10 mins**



4
SERVES



Contents of Pack

+



Water

+



Chicken

=



Malabar Chicken Curry Ready

----- This mix already contains oil and salt -----

STOVE TOP METHOD

Take entire content of Malabar Chicken Curry Mix in a bowl add 1 1/2 cup (350ml) water and Mix well. Pour this in a pan. Add chicken pieces (With Bone 500g or Boneless 400g). Mix Well. Bring the contents to boil, Simmer covered on low flame for 10 - 15 min or until chicken is done. Add 3 tbsp coconut milk, simmer further for few minutes. Stir occasionally.

स्टोव पर बनाने का तरीका

मलबार चिकन करी मिक्स की पूरी सामग्री को एक बाउल में लीजिए, इसमें १ १/२ कप (३५० मि.ली.) पानी डालिए और अच्छी तरह से मिलाइए. मिश्रण को एक पैन में लीजिए. इसमें चिकन के टुकड़े (बोन के साथ ५०० ग्राम या बोनलेस ४०० ग्राम) डालिए. अच्छी तरह से मिलाइए. सामग्री में पहले उबाल लाइए, फिर इसे ढक्कन धीमी आंच पर १०-१५ मिनट पकाइए या तक तक जब तक चिकन अच्छी तरह से पक न जाए. इसमें ३ बड़े चम्मच नारियल का दूध मिलाइए, कुछ मिनटके लिए और पकाइए. बीच-बीच में हिलाते जाइए.

PRESSURE COOKER METHOD

Take entire content of Malabar Chicken Curry Mix in a bowl. Add 1cup (250 ml) water. Mix Well. Pour this in a pressure cooker. Add chicken pieces (with Bone 500g or Boneless 400g). Mix well. Cook for 1 whistle and keep on low flame for 6 min. Stop cooking. After opening cooker add 3 tbsp coconut milk, simmer further for few minutes.

प्रेसर कुकर में बनाने का तरीका

मलबार चिकन करी मिक्स की पूरी सामग्री को एक बाउल में लीजिए, इसमें १ कप (२५० मि.ली.) पानी डालिए और अच्छी तरह से मिलाइए. मिश्रण को प्रेशर कुकर में डालिए. अब इसमें चिकन के टुकड़े (बोन के साथ ५०० ग्राम या बोनलेस ४०० ग्राम) डालिए. अच्छी तरह से मिलाइए. एक सीटी तक पकाइए और धीमी आंच पर ६ मिनट तक रखिए. अब पकाना बंद कीजिए. कुकर खोलने के बाद इसमें ३ बड़े चम्मच नारियल का दूध मिलाइए, कुछ मिनटके लिए और पकाइए.

Mother's Tip : For milder taste, add 50 ml coconut milk.
माँ की सलाह: चौथ्य स्वाद के लिए ५० मि.ली. नारियल का दूध मिलाइए.

Garnishing: Garnish with Fried curry leaves & chopped coriander leaves.
सजावट: तले हुए कड़ी पत्तों और कटी हुई धनिया पत्तियोंसे सजाइए और स्वाद भी बढ़ाइए.

Serving Suggestions: Serve hot with Paratha or Steamed rice.
परोसने का सुझाव: परांठों या भाप से पके चावल के साथ गर्म-गर्म परोसिए.

Store in cool, dry and hygienic place.
An ISO 9001 & FSSC 22000 Certified Plant

A Quality Product of
Desai Brothers Ltd.
1436, Kasbe Peth, Pune - 411 011.
Manufactured at : Gat No. 204 to 206, Saroke, Bhos, Pune - 412 205.
Visit us at: www.mothersrecipe.com

For any questions, comments or complaints contact Manager or write on above address or email at:
Customer care on: +91 20-26004168
consumercare@dbllfood.com

Ingredients: Garlic, Cottonseed Oil, Ginger, Coconut Milk Powder, Onion, Coconut Oil, Salt, Coriander, Chili, Dried Coconut, Curry Leaf, Green Chili, Tamarind and Spices (Turmeric, Mustard, Curmin, Black Pepper, Fenugreek, Bay Leaf, Cassia).

Nutrition Information for 100 g (approx)	
Energy	377 kcal
Protein	5 g
Fat	28 g
Carbohydrate	25 g
of which sugars	6 g



8 9 0 6 0 0 1 0 5 2 6 4 7

For sale in India only

BEST BEFORE NINE MONTHS FROM PACKAGING.
MRP (in ₹) (Inclusive of all taxes)

Net Wt.:

Batch No.

Pk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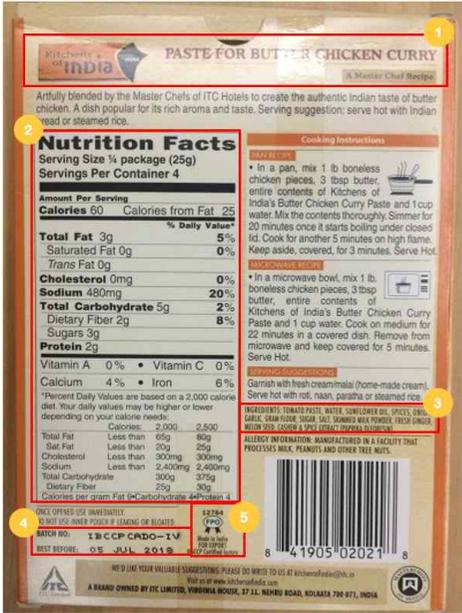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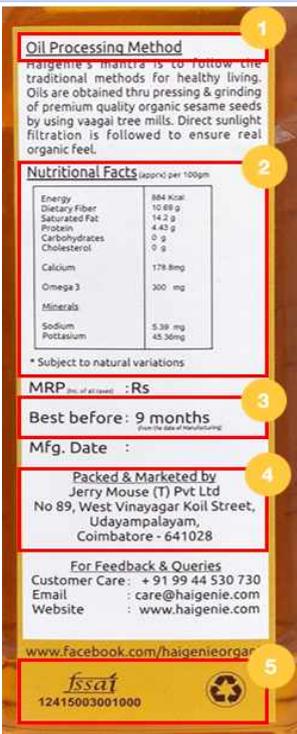
3

4

1

- ① 제품명 ② 재료 ③ 영양정보 ④ 인도식품안전표준청 승인

<p>① 제품명</p> <p>② 영양정보</p> <p>③ 재료</p> <p>④ 유통기한</p> <p>⑤ FPO 마크</p>	 <p>1 Product Name: Kitchens of India PASTE FOR BUTTER CHICKEN CURRY</p> <p>2 Nutrition Facts: Serving Size 1/4 package (25g), Servings Per Container 4. Total Fat 3g (5%), Saturated Fat 0g (0%), Total Carbohydrate 5g (2%), Protein 2g (8%).</p> <p>3 Ingredients: TOMATO PASTE, WATER, SUNFLOWER OIL, SPICES, ONION, GARLIC, CHAIN STALK SUGAR, SALT, SPICED MILK POWDER, FRESH ONION.</p> <p>4 Best Before: 05 JUL 2018</p> <p>5 FPO Mark: 12284 (FPO) 8 41905 02021 8</p>
--	--

<p>① 제품명</p> <p>② 영양정보</p> <p>③ 유통기한</p> <p>④ 제조사</p> <p>⑤ 인도식품안전표 준칭 승인</p>	 <p>1 Oil Processing Method: Haigenie's intention is to follow the traditional methods for healthy living. Oils are obtained thru pressing & grinding of premium quality organic sesame seeds by using vaagai tree mills. Direct sunlight filtration is followed to ensure real organic feel.</p> <p>2 Nutritional Facts (approx per 100gm): Energy 884 kcal, Saturated Fat 14.2 g, Total Carbohydrates 0 g, Calcium 178.8mg, Omega 3 300 mg, Sodium 5.38 mg, Potassium 42.36mg.</p> <p>3 Best before: 9 months</p> <p>4 Packed & Marketed by Jerry Mouse (T) Pvt Ltd, No 89, West Vinayagar Koil Street, Udayampalayam, Coimbatore - 641028</p> <p>5 FSSAI 12415003001000</p>
--	---



제 5 절.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 1. 인도 식품첨가물/유해물질 분류

- 본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에서 식품을 분류하는 방법은 두 가지임

① 식품첨가물 관련 식품분류체계:

- 식품첨가물규정은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에서 제정한 식품안전표준규정 (Food Safety and Standards Regulations, 2011)의 두 번째 규정인 식품표준 및 식품첨가물규정(Food Products Standards and Food Additives)에 제시되어 있음

* <https://fssai.gov.in/cms/food-safety-and-standards-regulations.php>

- 식품분류체계는 식품표준 및 식품첨가물규정 중 Appendix A의 I Food Category System에 제시되어 있음. 각 식품첨가물의 사용 기준을 명시하는 분류체계는 바로 Food Category System를 활용함

② 유해물질 관련 식품분류체계:

- 유해물질규정은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에 제정한 식품안전표준규정(Food Safety and Standards Regulations, 2011)의 세 번째 규정인 오염물질, 독소 및 잔류물 규정(Contaminants, Toxins and Residues)에 제시되어 있음

* <https://fssai.gov.in/cms/food-safety-and-standards-regulations.php>

- 유해물질은 오염물질, 독소 및 잔류물 규정 내 중금속, 오염물질, 독소, 농약에 제시된 식품 및 식품군을 중심으로 연구진이 분류체계를 만들
- 인도의 경우 '동물용의약품'은 가공식품이 아닌 농축수산물 원물을 중심으로 식품 및 식품군에 대해서 상세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유해물질 식품분류체계에 포함하지 않음
- 한국의 식품공전에 따른 식품유형에 인도의 유사기준을 적용하여 해석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도의 현행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표 2-17] 한국 식품공전 분류에 따른 인도 식품첨가물 식품유형 분류

신식품공전			인도 :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5.0	제과류
			5.2	제과류, 하드 및 소프트캔디, 누가 포함 (카테고리 5.1, 5.3, 5.4 제외)
			5.2.3	누가 및 마지팬
			7.1.2	크래커
			15.0	즉석섭취 사보리스낵
			15.1	스낵 -감자, 곡물, 밀가루 및 전분 기반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로부터)
			15.3	스낵- 수산물 기반
	캔디류		5.2	제과류, 하드 및 소프트캔디, 누가 포함 (카테고리 5.1, 5.3, 5.4 제외)
			5.2.1	하드캔디
			5.2.2	소프트캔디
	추잉껌	5.3	추잉껌	
	빵류		7.0	베이커리제품
			7.1	빵과 일반 베이커리 및 믹스
			7.1.1	빵과 롤
			7.1.1.1	이스트 빵 및 스페셜티 빵
		7.1.1.2	소다 빵	
		7.1.3	기타 일반 베이커리제품	
		7.1.4	빵 고물과 빵가루를 포함한 빵타입 제품	
		7.1.5	짬빵 및 번	
		7.1.6	빵류 및 일반 베이커리제품 믹스	
		7.2	파인베이커리(스위트, 짬, 사보리) 및 믹스	
떡류		7.2.1	케이크, 쿠키 및 파이	
		7.2.2	기타 파인베이커리	
		7.2.3	파인베이커리용 믹스	
2. 빙과류	2. 빙과류의 모든 중/세분류는 인도의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의 식품유형("3.0 식용 빙과류, 셔벗 및 소르베		3.0	식용 빙과류, 셔벗 및 소르베 포함

신식품공전			인도 :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포함")에 모두 해당됨			
	2-1.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저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2-2.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2-3. 빙과	빙과		
	2-4. 얼음류	식용얼음 어업용얼음		
3.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3-1. 코코아가공품류	코코아매스	5.1	코코아 및 초콜릿 (모조 및 대체품 포함)
		코코아버터	5.1.1	코코아 믹스(파우더) 및 코코아 매스/케이크
		코코아분말 기타 코코아가공품	5.1.2 5.1.3	코코아 믹스 (시럽) 코코아 및 초콜릿
	3-2. 초콜릿류	초콜릿	5.1	코코아 및 초콜릿 (모조 및 대체품 포함)
밀크초콜릿		5.1.3	코코아 및 초콜릿	
화이트초콜릿		5.1.4	모조초콜릿, 초콜릿 대체품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4. 당류	4. 당류의 모든 중/세분류는 인도의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의 식품유형("11.0 감미료(꿀 포함")에 모두 해당됨		11.0	감미료(꿀 포함)
	4-1. 설탕류	설탕	11.1	정제 설탕 및 원당
			11.1.1	백설탕, 무수덱스트로스(dextrose anhydrous),
			11.1.2	함수덱스트로스(dextrose monohydrate), 과당 가루설탕 및 분말포도당
			11.1.3	연질백설탕, 연질갈색설탕, 포도당 시럽(glucose syrup), 건조 포도당 시럽(dried glucose syrup),

신식품공전			인도 :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11.1.5	비정제 사탕수수 설탕(raw cane sugar)	
			11.1.6	경지백당	
			11.1.6.1	인도 흑설탕(jaggery)	
			11.1.6.2	사탕수수 인도 흑설탕	
			11.1.6.3	야자 인도 흑설탕	
			11.2	대추야자 인도 흑설탕	
		기타설탕	11.4	갈색설탕 (카테고리 11.1.3 제외) 기타 설탕 및 시럽	
	4-2.	당시럽류	당시럽류	11.1.3	연질백설탕, 연질갈색설탕, 포도당 시럽(glucose syrup), 건조 포도당 시럽(dried glucose syrup), 비정제 사탕수수 설탕(raw cane sugar)
			11.1.3.2	사탕과자 제조용 포도당시럽	
			11.3	설탕 용액 및 시럽(부분 전환된), 당밀 포함 (카테고리 11.1.3 제외)	
			11.4	기타 설탕 및 시럽	
	4-3.	올리고당류	올리고당		
		올리고당가공품			
4-4.	포도당	포도당	11.1.1	백설탕, 무수덱스트로스(dextrose anhydrous), 함유덱스트로스(dextrose monohydrate), 과당	
			11.1.2	가루설탕 및 분말포도당	
			11.1.3	연질백설탕, 연질갈색설탕, 포도당 시럽(glucose syrup), 건조 포도당 시럽(dried glucose syrup), 비정제 사탕수수 설탕(raw cane sugar)	
			11.1.3.1	사탕과자 제조용 건조 포도당시럽	
			11.1.3.2	사탕과자 제조용 포도당시럽	
4-5.	과당류	과당	11.1.1	백설탕, 무수덱스트로스(dextrose anhydrous), 함유덱스트로스(dextrose monohydrate), 과당	
		기타과당	11.1.1	백설탕, 무수덱스트로스(dextrose anhydrous), 함유덱스트로스(dextrose monohydrate), 과당	
4-6.	엿류	물엿			
		기타엿			
		덱스트린			
4-7.	당류가공품류		5.4	장식용 당과류(예. 파인베이커리용), 토핑(과일	

신식품공전			인도 :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당류가공품류		11.0 11.3 11.6	제외) 및 스위트소스 감미료(꿀 포함) 설탕 용액 및 시럽(부분 전환된), 당밀 포함 (카테고리 11.1.3 제외) 식탁용 감미료 (고농도 감미료 포함)
5. 잼류	잼	잼	4.1.2.5	잼, 젤리, 마멀레이드, 과일 바/토피 및 과일 치즈
		기타잼	2.2.2 2.4.1 4.1.2.6 12.7	지방, 유지방 및 혼합 스프레드 코코넛 기반 스프레드 (필링 제외) 과일 기반 스프레드(예.치트니) (카테고리 4.1.2.5 제외) 샐러드 및 샌드위치 스프레드 (카테고리 4.2.2.5, 5.1.3의 코코아 및 견과류 기반 스프레드 제외)
	유바	두부	6.8 6.8.3	대두 제품(카테고리 12.9의 대두 기반 양념 및 콘디멘트 제외) 고형두부
		가공두부	6.8 6.8.4 6.8.4.1 6.8.4.2 6.8.4.3 6.8.5 6.8.7	대두 제품(카테고리 12.9의 대두 기반 양념 및 콘디멘트 제외) 반건조 고형두부 소스에 졸인 반건조 고형두부 튀긴 반건조 고형두부 반건조 고형두부 (카테고리 6.8.4.1, 6.8.4.2 제외) 건조 고형두부 발효 고형두부
6. 두부류 또는 목류	목류			
	7. 식용 유지류	7. 식용유지류의 모든 중/세분류는 인도의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의 식품유형("2.0 유지 및 지방 에멀션")에 모두 해당됨	2.0	유지 및 지방 에멀션
		7-1. 식물성 유지류	7-1. 식물성유지류의 모든 세분류는 인도의 식품첨가물	2.1 2.1.2

신식품공전			인도 :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 두가지의 식품유형("2.1 무수 유지 및 오일", "2.1.2 식물성 유지")에 모두 해당됨		
		콩기름(대두유)		
		옥수수기름(옥배 유)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미강유(현미유)		
		참기름 추출참깨유		
		들기름 추출들깨유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면실 유)		
		땅콩기름(낙화생 유)		
		올리브유		
		팜유 팜올레인유 팜스테아린유 팜핵유		
		야자유		
		고추씨기름		
		기타식물성유지		
	7-2. 동물성 유지류	7-2. 동물성유지류의 모든 세분류는 인도의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 두가지의	2.1 2.1.3	무수 유지 및 오일 라드, 수지, 생선 기름 및 기타 동물성지방

신식품공전			인도 :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식품유형("2.1 무수 유지 및 오일", "2.1.3 라드, 수지, 생선 기름 및 기타 동물성지방")에 모두 해당됨			
		식용우지			
		원료우지			
		식용돈지			
			원료돈지		
			기타동물성유지		
	7-3. 식용유지 가공품	혼합식용유	2.1 2.1.2	무수 유지 및 오일 식물성 유지	
		향미유	2.1 2.1.2	무수 유지 및 오일 식물성 유지	
		가공유지	2.1 2.1.2	무수 유지 및 오일 식물성 유지	
			2.1.3	라드, 수지, 생선 기름 및 기타 동물성지방	
		쇼트닝	2.1 2.1.2	무수 유지 및 오일 식물성 유지	
			2.1.3	라드, 수지, 생선 기름 및 기타 동물성지방	
		마가린류	2.1.2 2.1.3	식물성 유지 라드, 수지, 생선 기름 및 기타 동물성지방	
		모조치즈	2.1.2	식물성 유지	
식물성크림	2.1.2	식물성 유지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2.1 2.1.2 2.1.3	무수 유지 및 오일 식물성 유지 라드, 수지, 생선 기름 및 기타 동물성지방			
	2.2 2.2.2	WO 에멀션 지방, 유지방 및 혼합 스프레드			
	2.3	OW 에멀션 (지방 에멀션 기반 혼합 및 향첨가 제품 포함)			
	2.4	지방 기반 디저트 (카테고리 1.7의 유제품 기반 디저트 제외)			

신식품공전			인도 :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8. 면류	8. 면류의 모든 세분류는 인도의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의 식품유형("6.4 파스타 및 면류 및 유사제품")에 모두 해당됨		6.4	파스타 및 면류 및 유사제품	
		생면	6.4.1	생파스타 및 면류 및 유사제품	
		숙면			
		건면	6.4.2	건조 파스타 및 면류 및 유사제품	
		유당면			
9. 음료류	9-1. 다류	침출차	14.1.5	커피, 커피 대체품, 차, 허브음료 및 기타 핫시리얼 및 곡물 음료 (코코아 제외)	
		액상차	14.1.5	커피, 커피 대체품, 차, 허브음료 및 기타 핫시리얼 및 곡물 음료 (코코아 제외)	
		고형차	14.1.5	커피, 커피 대체품, 차, 허브음료 및 기타 핫시리얼 및 곡물 음료 (코코아 제외)	
	9-2. 커피	커피	14.1.5	커피, 커피 대체품, 차, 허브음료 및 기타 핫시리얼 및 곡물 음료 (코코아 제외)	
	9-3. 과일·채소류 음료	농축과·채즙	14.0	음료 (유제품 제외)	
		과·채주스	14.1.2	과일 및 채소주스	
		과·채음료	과일주스	14.1.2.1	과일주스
			채소주스	14.1.2.2	채소주스
		과일주스 농축액	14.1.2.3	과일주스 농축액	
		채소주스 농축액	14.1.2.4	채소주스 농축액	
		과일 및 채소넥타	14.1.3	과일 및 채소넥타	
		과일넥타	14.1.3.1	과일넥타	
	채소넥타	14.1.3.2	채소넥타		
	과일넥타 농축액	14.1.3.3	과일넥타 농축액		
	채소넥타 농축액	14.1.3.4	채소넥타 농축액		
9-4. 탄산 음료류	탄산음료	14.0	음료 (유제품 제외)		
	탄산수	14.1	무알코올 (탄산) 음료		
		14.1.1.1	천연광천수		
		14.1.1.2	식용 물 및 소다류		
14.1.4.1		향첨가 탄산음료			
9-5. দুয়ু류	원액두유	6.8.1	두유		
	가공두유	14.0	음료 (유제품 제외)		

신식품공전			인도 :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9-6. 발효 음료류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14.0 1.1.2	음료 (유제품 제외) 유음료, 향첨가 및 발효
	9-7. 인삼, 홍삼음료	인삼, 홍삼음료	14.0	음료 (유제품 제외)
	9-8. 기타음료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14.0 14.1.4 14.1.4.2 14.1.4.3 14.1.5	음료 (유제품 제외) 향첨가 음료수 (스포츠, 에너지, 전해질 및 미립자음료 포함) 향첨가 무탄산음료 (편치, 에이드 포함) 향첨가 음료 농축 (액상 및 고형) 커피, 커피 대체품, 차, 허브음료 및 기타 핫시리얼 및 곡물 음료 (코코아 제외)
10. 특수용도 식품	10. 특수용도식품의 모든 중/세분류는 인도의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의 식품유형에 모두 해당됨		13.0	특수영양식품
	10-1.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1.5.1 1.5.2	우유 분말 및 크림 분말 (플레인) 우유분말 및 크림분말 유사제품
	10-2. 영아용 조제식	영아용 조제식	13.1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아용 특수의료용도 조제식
			13.1.1	영아용 조제식
			13.2	영유아용 보충식
	10-3. 성장기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13.1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아용 특수의료용도 조제식
			13.1.2	성장기용 조제식
	10-4.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영·유아용곡류조제식	13.1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아용 특수의료용도 조제식
	13.1.1		영아용 조제식	
	13.2		영유아용 보충식	
10-5. 기타 영·유아식	기타영·유아식	13.1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아용 특수의료용도 조제식	
		13.1.1	영아용 조제식	
		13.2	영유아용 보충식	
10-6.	환자용식품	13.1.3	영아용 특수의료용도 조제식	

신식품공전			인도 :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유단백알레르기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13.3	특수의료용도 식사요법식품
	10-7.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3.4 13.5	체중조절용 조제식 다이어트식품(식사요법식품) (카테고리 13.1-13.4, 13.6 제외)
	10-8. 임신·수유 부용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		
11. 장류		한식메주 개량메주	6.8.6	발효 대두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12.9 12.9.2 12.9.2.1	대두 추출 조미료와 콘디멘트 대두 소스 발효 대두 소스
		한식된장 된장	12.9 12.9.1 12.9.2.1	대두 추출 조미료와 콘디멘트 대두 발효 페이스트 (된장, 미소 등) 발효 대두 소스
		고추장	12.9 12.9.1 12.9.2.1	대두 추출 조미료와 콘디멘트 대두 발효 페이스트 (된장, 미소 등) 발효 대두 소스
		춘장	12.9 12.9.1 12.9.2 12.9.2.1	대두 추출 조미료와 콘디멘트 대두 발효 페이스트 (된장, 미소 등) 대두 소스 발효 대두 소스
		청국장	12.9 12.9.1 12.9.2.1	대두 추출 조미료와 콘디멘트 대두 발효 페이스트 (된장, 미소 등) 발효 대두 소스
		혼합장	12.9 12.9.1 12.9.2.1	대두 추출 조미료와 콘디멘트 대두 발효 페이스트 (된장, 미소 등) 발효 대두 소스
		기타장류	12.9	대두 추출 조미료와 콘디멘트

신식품공전			인도 :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12.9.1 12.9.2 12.9.2.1 12.9.2.2 12.9.2.3	대두 발효 페이스트 (된장, 미소 등) 대두 소스 발효 대두 소스 비발효 대두 소스 기타 대두 소스
	12-1. 식초	발효식초 희석초산	12.3	식초
	12-2. 소스류	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12.0 12.2.2 12.4 12.6 12.6.1 12.6.2 12.6.3 12.6.4 12.9	소금, 향신료, 수프, 소스, 샐러드와 단백질 제품 양념 및 콘디멘트 머스타드 소스류 에멀션 소스와 딥 비에멀션 소스 소스나 그레이비소스용 믹스 맑은 소스(물 기반, 어간장, 굴소스 등) 대두 추출 조미료와 콘디멘트
	12-3. 카레(커리)	카레(커리)분 카레(커리)	12.0 12.2.1	소금, 향신료, 수프, 소스, 샐러드와 단백질 제품 허브, 향신료, 마살라(인도 향신료), 향신료 혼합물 (올레오레진 및 추출물 포함)
	12-4.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고춧가루 실고추	12.0	소금, 향신료, 수프, 소스, 샐러드와 단백질 제품
	12-5. 향신료 가공품	천연향신료 향신료조제품	12.0 12.2 12.2.1	소금, 향신료, 수프, 소스, 샐러드와 단백질 제품 허브, 향신료, 양념 및 콘디멘트 허브, 향신료, 마살라(인도 향신료), 향신료 혼합물 (올레오레진 및 추출물 포함)
	12-6. 식염	천일염 재제소금(재제조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12.0 12.1 12.1.1 12.1.2	소금, 향신료, 수프, 소스, 샐러드와 단백질 제품 소금 및 소금 대체품 소금 소금 대체품
13.	13-1.	김치속	4.2.2.7	숙성 채소 (버섯 및 균류, 뿌리 및 줄기(괴경),

신식품공전			인도 :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절임류 또는 조림류	김치류	김치		콩류 및 콩과식물, 알로에베라 포함), 해조류 (카테고리 6.8.6, 6.8.7, 12.9.1, 12.9.2.1, 12.9.2.3의 숙성 대두제품 제외)	
	13-2. 절임류	절임식품 당절임	4.1.2.3	식초, 오일, 소금물에 절인 과일	
			4.1.2.7	당절임과일	
4.2.2.3			식초, 오일, 소금물, 대두소스에 절인 채소 (버섯 및 균류,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 알로에베라 포함), 해조류		
13-3. 조림류	조림류	4.2.2.6	채소(버섯 및 균류,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 알로에베라 포함), 해조류, 견과류 및 씨앗류 펄프 및 2차가공재료 제품 (예. 채소 디저트 및 소스, 당절임 채소), 카테고리 4.2.2.5 제외		
		4.1.2.10	숙성 과일제품		
14. 주류	14. 주류의 모든 세분류는 인도의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의 식품유형("14.2 알코올음료 (무알코올, 저알코올 포함)"에 모두 해당됨		14.2	알코올음료 (무알코올, 저알코올 포함)	
	과실주	탁주			
		약주			
		청주			
		맥주	14.2.1	맥주 및 맥아음료	
		소주	소주	14.2.2	사과주 및 페리
				14.2.3	와인
				소스	스틸와인
				14.2.3.2	탄산/반탄산 와인
위스키	위스키	14.2.3.3	알코올 강화와인, 포도 리큐어 와인, 스위트 와인		
		14.2.4	와인 (포도 외)		
소주	소주	14.2.6	알코올 함유 15% 이상 증류주		
위스키	위스키	14.2.6	알코올 함유 15% 이상 증류주		

신식품공전			인도 :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브랜드	14.2.6	알코올 함유 15% 이상 증류주
		일반증류주	14.2.6	알코올 함유 15% 이상 증류주
		리큐르	14.2.6	알코올 함유 15% 이상 증류주
		기타 주류	14.2.5 14.2.7	꿀술 향첨가 알코올음료
		주정		
15. 농산 가공 식품류	15-1. 전분류	전분 전분가공품	6.2	밀가루 및 전분 (대두 분말 포함)
			6.2.2	전분
			6.5	곡류 및 전분 기반 디저트
			15.1	스낵 -감자, 곡물, 밀가루 및 전분 기반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로부터)
	15-2. 밀가루류	밀가루 영양강화 밀가루	6.2	밀가루 및 전분 (대두 분말 포함)
			6.2.1	밀가루
	15-3.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류	땅콩 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4.0	과일 및 채소 (버섯 및 균류,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 식물, 알로에), 해조류, 견과류 및 씨앗류
			4.1.2.2	건조 과일, 견과류 및 씨앗류
			4.2	채소 (버섯 및 균류,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 알로에베라 포함), 해조류, 견과류 및 씨앗류
			4.2.1.2	표면처리 신선 채소 (버섯 및 균류,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 알로에베라 포함), 해조류, 견과류 및 씨앗류
			4.2.1.3	껍질을 벗기거나 자르거나 세절한, 최소한으로 가공한 채소 (버섯 및 균류,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 알로에베라 포함), 해조류, 견과류 및 씨앗류
			4.2.2	가공 채소 (버섯 및 균류,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 알로에베라 포함), 해조류, 견과류 및 씨앗류
			4.2.2.1	냉동 채소 (버섯 및 균류,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 알로에베라 포함), 해조류, 견과류 및 씨앗류
4.2.2.2	건조 채소 (버섯 및 균류, 뿌리 및 줄기(괴경),			

신식품공전			인도 :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4.2.2.5	콩류 및 콩과식물, 알로에베라 포함), 해조류, 견과류 및 씨앗류
			4.2.2.6	채소 (버섯 및 균류,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 알로에베라 포함), 해조류, 견과류 및 씨앗류 푸레 및 스프레드(예. 땅콩버터)
			15.2	채소(버섯 및 균류,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 알로에베라 포함), 해조류, 견과류 및 씨앗류 펄프 및 2차가공재료 제품 (예. 채소 디저트 및 소스, 당절임 채소), 카테고리 4.2.2.5 제외 가공 견과류 (코팅된 견과류 및 견과류 믹스 포함)
	15-4. 시리얼류	시리얼류	6.3	아침식사용 시리얼 (으깬 귀리 포함)
	15-5. 찌낱	찌낱		
	15-6. 효소식품	효소식품		
	15-7. 기타 농산 가공품	과채가공품	4.0	과일 및 채소 (버섯 및 균류,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 식물, 알로에), 해조류, 견과류 및 씨앗류
		곡류가공품	4.1	과일
		서류가공품	4.1.1.2	표면처리 신선 과일
		기타 농산가공품	4.1.1.3	껍질을 벗기거나 자른, 최소한으로 가공된 과일
				가공 과일
			4.1.2.1	냉동 과일
			4.1.2.2	건조 과일, 견과류 및 씨앗류
			4.1.2.8	2차가공재료 과일 (펄프, 푸레, 과일 토평 및 코코넛밀크 포함)
			4.1.2.9	과일 기반 디저트(과일향첨가 물 기반 디저트 포함)
			4.1.2.10	숙성 과일제품
			4.1.2.11	페이스트리용 과일 필링
		4.1.2.12	조리된 과일	
		4.2	채소 (버섯 및 균류,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 알로에베라 포함), 해조류, 견과류 및	

신식품공전			인도 :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씨앗류
			4.2.1.2	표면처리 신선 채소 (버섯 및 균류,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 알로에베라 포함), 해조류, 견과류 및 씨앗류
			4.2.1.3	껍질을 벗기거나 자르거나 세절한, 최소한으로 가공한 채소 (버섯 및 균류,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 알로에베라 포함), 해조류, 견과류 및 씨앗류
			4.2.2	가공 채소 (버섯 및 균류,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 알로에베라 포함), 해조류, 견과류 및 씨앗류
			4.2.2.1	냉동 채소 (버섯 및 균류,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 알로에베라 포함), 해조류, 견과류 및 씨앗류
			4.2.2.2	건조 채소 (버섯 및 균류,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 알로에베라 포함), 해조류, 견과류 및 씨앗류
			4.2.2.5	채소 (버섯 및 균류,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 알로에베라 포함), 해조류, 견과류 및 씨앗류 푸레 및 스프레드(예. 땅콩버터)
			4.2.2.6	채소(버섯 및 균류,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 알로에베라 포함), 해조류, 견과류 및 씨앗류 펄프 및 2차가공재료 제품 (예. 채소 디저트 및 소스, 당절임 채소), 카테고리 4.2.2.5 제외
			4.2.2.7	숙성 채소 (버섯 및 균류,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 알로에베라 포함), 해조류 (카테고리 6.8.6, 6.8.7, 12.9.1, 12.9.2.1, 12.9.2.3의 숙성 대두제품 제외)
			4.2.2.8	조리되거나 튀긴 채소 (버섯 및 균류,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 알로에베라 포함), 해조류
			6.0	곡류 및 곡류가공품 (곡물,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콩과식물 및 중과피 또는 야자 속) (카테고리 7.0의 베이커리용 제외)
			6.1	통곡, 분쇄곡 및 플레이크 곡물 (쌀 포함)

신식품공전			인도 :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6.5 6.6 6.7 6.8.8 12.10 15.1	곡류 및 전분 기반 디저트 배터(튀김반죽) 조리 및 가공된 곡류/곡물/콩과식물 제품 기타 대두 단백질 제품 대두 이외 단백질 제품 스낵 -감자, 곡물, 밀가루 및 전분 기반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로부터)
16. 식육 가공품	16. 식육가공품의 모든 중/세분류는 인도의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의 식품유형("8.0 육류 및 식육가공품 (가금육 포함)"에 모두 해당됨		8.0	육류 및 식육가공품 (가금육 포함)
	16-1. 햄류	햄 생햄 프레스햄	8.2	가공 육류 및 가금육 (덩어리 및 자른)
			8.2.1	비가열 가공 육류 및 가금육 (덩어리 및 자른)
			8.2.1.1	알코올 함유 15% 이상 증류주
			8.2.1.2	큐어링(염장 포함)한 건조 비가열 가공 육류 및 가금육 (덩어리 및 자른)
			8.2.1.3	숙성 비가열 가공 육류 및 가금육 (덩어리 및 자른)
			8.2.2	가열 가공 육류 및 가금육 (덩어리 및 자른)
	16-2. 소시지 류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8.3	분쇄 가공 육류 및 가금육
			8.3.1	비가열 분쇄 가공 육류 및 가금육
			8.3.1.1	큐어링(염장 포함)한 비가열 분쇄 가공 육류 및 가금육
8.3.1.3			숙성 비가열 분쇄 가공 육류 및 가금육	
8.3.2	가열 분쇄 가공 육류 및 가금육			
16-3. 베이컨류	베이컨류	8.2	가공 육류 및 가금육 (덩어리 및 자른)	
		8.2.2	가열 가공 육류 및 가금육 (덩어리 및 자른)	
16-4. 건조저장 육류	건조저장육류	8.2.1.2	큐어링(염장 포함)한 건조 비가열 가공 육류 및 가금육 (덩어리 및 자른)	
		8.3.1.2	큐어링(염장 포함)한 건조 비가열 분쇄 가공 육류 및 가금육	
16-5. 양념육류	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8.2	가공 육류 및 가금육 (덩어리 및 자른)	
		8.2.1	비가열 가공 육류 및 가금육 (덩어리 및 자른)	

신식품공전			인도 :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갈비가공품 천연케이싱	8.2.1.1	큐어링(염장 포함)한 비가열 가공 육류 및 가공육 (덩어리 및 자른)
	16-6. 식육추출 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12.5 12.5.1 12.5.2	수프와 브로스 즉석섭취 수프와 브로스 (통조림, 병포장, 냉동 포함) 수프와 브로스 믹스
	16-7. 식육함유 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8.2 8.3	가공 육류 및 가공육 (덩어리 및 자른) 분쇄 가공 육류 및 가공육
	16-8. 포장육	포장육	8.1.1 8.1.2	신선 육류 및 가공육 (덩어리 및 자른) 신선 육류 및 가공육 (다진)
17. 알가공 품류	17-1. 알가공품	전란액	10.0	계란 및 계란가공품
		난황액	10.2	계란가공품
난백액		10.2.1	액란	
전란분		10.2.2	냉동 계란	
난황분		10.2.3	건조 및 가열 응고 계란	
	17-2. 알함유 가공품	알함유가공품	10.3 10.4	보존처리 계란 (알칼리, 염장, 통조림 계란 포함) 계란 기반 디저트
18. 유가공품	18. 유가공품의 모든 중/세분류는 인도의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의 식품유형("1.0 유제품 (카테고리 2.0) 제외")에 모두 해당됨		1.0	유제품 (카테고리 2.0 제외)
	18-1. 우유류	우유	1.1	우유 및 유음료
		환원유	1.1.1 1.1.1.1	우유 및 버터밀크 (플레인) 우유 (플레인)
	18-2. 가공유류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1.1	우유 및 유음료
18-3.	산양유			

신식품공전			인도 :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산양유			
	18-4. 발효유류	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1.2 1.2.1 1.2.1.1 1.2.1.2 1.2.2	발효우유 및 레닛우유 (플레인), 유음료 제외 발효우유 (플레인) 발효우유 (플레인), 발효 후 비가열 발효우유 (플레인), 발효 후 가열 레닛(발효)우유 (플레인)
	18-5. 버터유	버터유	1.1.1 1.1.1.2	우유 및 버터밀크 (플레인) 버터밀크 (플레인)
	18-6. 농축유류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1.1 1.3 1.3.1	우유 및 유음료 연유제품 연유 (플레인)
	18-7. 유크림류	유크림 가공유크림	1.3.2 1.4 1.4.1 1.4.2 1.4.3 1.4.4	음료 화이트너 크림 및 유사제품 (플레인) 저온살균 크림 (플레인) 살균크림, UHT 크림, 휘핑크림, 휘핑크림, 저지방 크림 (플레인) 응고크림 (플레인) 유사크림
	18-8. 버터류	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2.1.1 2.2.1	버터오일, 무수유지방, 기(ghee) 버터
	18-9. 치즈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1.6 1.6.1 1.6.2 1.6.2.1 1.6.2.2 1.6.2.3 1.6.3 1.6.4 1.6.4.1	치즈 및 유사제품 미숙성 치즈 숙성치즈 숙성치즈 (겉질 포함) 숙성치즈 겉질 치즈분말 유청치즈 가공치즈 플레인 가공치즈

신식품공전			인도 :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1.6.4.2	향첨가 가공치즈 (과일, 채소, 고기 함유)
			1.6.5	치즈 유사제품
			1.6.6	유청 단백질 치즈
	18-10. 분유류	전지분유	1.5	우유분말 또는 크림분말 및 유사제품 (플레인)
		탈지분유	1.5.1	우유 분말 및 크림 분말 (플레인)
		가당분유	1.5.2	우유분말 및 크림분말 유사제품
		혼합분유		
	18-11. 유청류	유청	1.8	유청 및 유청제품(유청치즈 제외)
		농축유청	1.8.1	유청 및 유청 제품(액체류) (유청치즈 제외)
		유청단백분말	1.8.2	유청 및 유청 제품(분말류) (유청치즈 제외)
	18-12. 유당	유당	11.1.4	젓당
	18-13. 유단백가수 분해식품	유단백가수분해식품		
19. 수산 가공 식품류	19. 수산가공식품의 모든 중/세분류는 인도의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의 식품유형("9.0 수산 및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에 모두 해당됨		9.0	수산 및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19-1. 어육 가공품류	어육살	9.2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연육	9.2.1	냉동 수산가공품 및 필릿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어육반제품	9.2.2	반죽을 입힌 냉동 수산가공품 및 필릿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어묵	9.2.3	다진 냉동 수산가공품 및 냉동 연육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어육소시지	9.2.4	조리 및 튀긴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기타 어육가공품	9.2.4.3	튀긴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19-2. 젓갈류	젓갈	9.2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양념젓갈	9.2.5	훈제, 건조, 숙성 및 염장한 수산가공품 (연체류,

신식품공전			인도 :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액젓	9.3.1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조미액젓	9.3.2	젤리 및 마리네이드한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9.4	식초나 소금물에 절인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보존 처리(통조림 및 숙성)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19-3. 건포류	조미건어포	9.2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건어포	9.2.5	훈제, 건조, 숙성 및 염장한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기타 건포류		
	19-4. 조미김	조미김		
	19-5. 한천	한천		
	19-6. 기타 수산물 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9.2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9.2.1	냉동 수산가공품 및 필릿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9.2.2	반죽을 입힌 냉동 수산가공품 및 필릿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9.2.3	다진 냉동 수산가공품 및 냉동 연육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9.2.4	조리 및 튀긴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9.2.4.1	조리된 수산가공품
			9.2.4.2	조리된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9.2.4.3	튀긴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9.2.5	훈제, 건조, 숙성 및 염장한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9.3	부분 보존 처리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9.3.1	젤리 및 마리네이드한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9.3.2	식초나 소금물에 절인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신식품공전			인도 :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9.3.3	연어 대체품, 캐비어 및 기타 어란류 부분 보존 처리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예. 생선 페이스트) (카테고리 9.3.1-9.3.3 제외) 보존 처리(통조림 및 숙성)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스낵- 수산물 기반
			9.3.4	
			9.4	
			15.3	
20. 동물성 가공 식품류	20-1.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제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기타동물성가공식품		
	20-2. 곤충 가공식품	곤충가공식품		
	20-3. 자라 가공식품	자라분말 자라분말제품 자라유제품		
	20-4. 추출 가공식품	추출가공식품		
21. 벌꿀 및 화분 가공품	21-1. 벌꿀류	벌집꿀 벌꿀 사양벌집꿀 사양벌꿀	11.5	꿀
	21-2. 로얄 젤리류	로얄젤리 로얄젤리제품		
	21-2. 화분식품	가공화분 화분함유제품		
22. 즉석 식품류	22-1. 생식류	생식제품	4.2.1.3	껍질을 벗기거나 자르거나 세절한, 최소한으로 가공한 채소 (버섯 및 균류,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 알로에베라 포함), 해조류, 견과류 및 씨앗류
		생식함유제품	4.2.2.2	건조 채소 (버섯 및 균류, 뿌리 및 줄기(괴경),

신식품공전			인도 :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6.1	콩류 및 콩과식물, 알로에베라 포함), 해조류, 견과류 및 씨앗류 통곡, 분쇄곡 및 플레이크 곡물 (쌀 포함)
	22-2. 즉석섭취·편의 식품류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즉석조리식품	6.4.3	조리된 파스타 및 면류 및 유사제품
			9.2.4.1	조리된 수산가공품
			9.2.4.2	조리된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12.5	수프와 브로스
			12.5.1	즉석섭취 수프와 브로스 (통조림, 병포장, 냉동 포함)
			12.5.2	수프와 브로스 믹스
			15.0	즉석섭취 사보리스넥
			15.1	스낵 -감자, 곡물, 밀가루 및 전분 기반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로부터)
			15.2	가공 견과류 (코팅된 견과류 및 견과류 믹스 포함)
			15.3	스낵- 수산물 기반
	22-3. 만두류	만두 만두피		
23. 기타 식품류	23-1. 효모식품	효모식품	12.8	이스트류
	23-2. 기타 가공품	기타가공품	1.3.2.1 13.6 1.4.1.1 14.1.1.1	음료 화이트너, 비유제품 기반 식품보충제 음용수 천연광천수
24. 그 외 분류	장기보존 식품	병통조림식품	4.1.2.4	통조림 및 병조림(저온살균) 과일
			4.2.2.4	통조림, 병조림(저온살균) 및 레토르트 포장 채소 (버섯 및 균류, 뿌리 및 줄기(괴경), 콩류 및 콩과식물, 알로에베라 포함), 해조류
			9.4	보존 처리(통조림 및 숙성) 수산가공품 (연체류, 갑각류, 극피동물류 포함)
			10.3	보존처리 계란 (알칼리, 염장, 통조림 계란 포함)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식품원료	식물성 원료		

신식품공전			인도 : 식품첨가물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Food category number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동물성 원료		
	그외 분류	그외 분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들은 그 외의 분류로 구분하였으며, at KATI에도 올라가 있음.

*식품첨가물 문서 내 식품유형 중 원물에 해당하는 품목 제외

[표 2-18] 한국 식품공전 분류에 따른 인도 유해물질 식품유형 분류

신식품공전			인도 : 유해물질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모든 식품 제과류 누가, 마지팬 및 대체품 또는 유사품
		캔디류	모든 식품 사탕과자 (고온가열) 카라멜
		추잉껌	모든 식품
		빵류	모든 식품 빵류: 땅콩 케이크
		떡류	모든 식품
2. 빙과류	2-1.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저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모든 식품 아이스크림, 아이스캔디 및 기타 빙과류
	2-2.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모든 식품 아이스크림, 아이스캔디 및 기타 빙과류
	2-3. 빙과	빙과	모든 식품 아이스크림, 아이스캔디 및 기타 빙과류
	2-4. 얼음류	식용얼음 어업용얼음	모든 식품
3.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3-1. 코코아 가공품류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기타 코코아가공품	모든 식품 코코아파우더
	3-2. 초콜릿류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모든 식품

신식품공전			인도 : 유해물질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4. 당류	4-1. 설탕류	4-1. 설탕류의 모든 세분류는 인도의 유해물질 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의 식품유형에 모두 해당됨	모든 식품 모든 종류의 설탕, 설탕시럽, 전화당 및 색설탕 (황산화분 함량 1.0% 초과)
		설탕	당류: 정제 설탕 하드보일드 설탕
		기타설탕	당류: 원당 (정제 설탕 제조용 외 직접 소비용 및 가공용 제외)
	4-2. 당시럽류	당시럽류	모든 식품 모든 종류의 설탕, 설탕시럽, 전화당 및 색설탕 (황산화분 함량 1.0% 초과)
	4-3. 올리고당류	올리고당	모든 식품
		올리고당가공품	모든 식품
	4-4. 포도당	포도당	모든 식품 무수덱스트로스 및 함유덱스트로스, 정제 백설탕 (황산화분 함량 0.03% 미만) 당류: 당밀, 액상 카라멜, 고품 포도당, 전분당 제품 (황산화분 함량 1.0% 초과)
	4-5. 과당류	과당	모든 식품
		기타과당	모든 식품
	4-6. 엿류	물엿	모든 식품
기타엿		모든 식품	
	덱스트린	모든 식품	
4-7. 당류 가공품류	당류가공품류	모든 식품 차, 건조 양파, 건조 허브 및 향신료, 알긴산(당류), 알긴산염, 한천, 카라긴 및 기타 해조류 기반 유사식품 당류: 당밀, 액상 카라멜, 고품 포도당, 전분당 제품 (황산화분 함량 1.0% 초과)	
5. 잼류	잼	잼	모든 식품 잼 (과일 프리저브) 및 젤리 잼, 젤리 및 마멀레이드
		기타잼	모든 식품 망고 처트니 잼 (과일 프리저브) 및 젤리 잼, 젤리 및 마멀레이드

신식품공전			인도 : 유해물질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6. 두부류 또는 목류		두부	모든 식품
		유바	모든 식품
		가공두부	모든 식품
		목류	모든 식품
7. 식용 유지류	7-1. 식물성 유지류	7. 식용유지류의 모든 중/세분류는 인도의 유해물질 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의 식품유형에 모두 해당됨	모든 식품 유지 유지 (개별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7-1. 식물성유지류의 모든 세분류는 인도의 유해물질 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의 식품유형에 모두 해당됨	식물성오일, 미정제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및 기타 오일(코코아버터 제외)) 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및 기타 오일(코코아버터 제외))
		콩기름(대두유)	기름: 대두유 식물성오일, 미정제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옥수수기름(옥배 유)	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식물성오일, 미정제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미강유(현미유)	
		참기름	식물성오일, 미정제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신식품공전			인도 : 유해물질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추출참깨유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들기름	식물성오일, 미정제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추출들깨유	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식물성오일, 미정제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해바라기유	기름: 해바라기유 식물성오일, 미정제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목화씨기름(면실 유)	기름: 목화씨기름 기름: 목화씨기름(raw) 기름: 목화씨기름(crude) 식물성오일, 미정제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땅콩기름(낙화생 유)	기름: 땅콩 기름 기름: 땅콩 씨앗 기름 식물성오일, 미정제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신식품공전			인도 : 유해물질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올리브유	기름: 버진 올리브오일 기름: 올리브 포마스 오일 기름: 정제 올리브오일 식물성오일, 미정제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팜유	식물성오일, 미정제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팜올레인유	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팜스테아린유	
		팜핵유	
		야자유	식물성오일, 미정제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고추씨기름	식물성오일, 미정제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기타식물성유지	기름: 겨자씨 및 겨자기름 기름 및 기름씨앗: 기름씨앗 (가공용) 기름 및 기름씨앗: 즉석섭취 유채씨 및 겨자오일 (미정제)

신식품공전			인도 : 유해물질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p>식물성오일, 미정제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p> <p>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p>
	7-2. 동물성 유지류	7-2. 동물성유지류의 모든 세분류는 인도의 유해물질 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의 식품유형에 모두 해당됨	동물성지방: 라드, 정제돼지지방, 우지(프리미에 주스), 수지(텔로)
		식용우지	
		원료우지	
		식용돈지 원료돈지	
		기타동물성유지	<p>식육가공품: 소, 양, 돼지고기 (육류 지방 적용)</p> <p>식육가공품: 가금육 지방</p>
	7-3. 식용유지 가공품	혼합식용유	<p>식물성오일, 미정제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및 기타 오일(코코아버터 제외))</p> <p>식물성오일, 미정제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p> <p>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및 기타 오일(코코아버터 제외))</p> <p>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p>

신식품공전			인도 : 유해물질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향미유	식물성오일, 미정제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및 기타 오일(코코아버터 제외)) 식물성오일, 미정제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및 기타 오일(코코아버터 제외)) 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가공유지	식물성유지: 수소화 혹은 부분 수소화된 에스테르화 식물성유지 (바나스파티, 식탁용 마가린, 베이커리 혹은 가공용 마가린, 베이커리 쇼트닝, 지방 스프레드 및 부분 수소화 마가린, 지방 스프레드 및 부분 수소화 대두유) 동물성지방: 라드, 정제돼지지방, 우지(프리미에 주스), 수지(탈로) 식물성오일, 미정제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및 기타 오일(코코아버터 제외)) 식물성오일, 미정제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및 기타 오일(코코아버터 제외)) 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쇼트닝	식물성유지: 수소화 혹은 부분 수소화된 에스테르화

신식품공전			인도 : 유해물질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p>식물성유지 (바나스파티, 식탁용 마가린, 베이커리 혹은 가공용 마가린, 베이커리 쇼트닝, 지방 스프레드 및 부분 수소화 마가린, 지방 스프레드 및 부분 수소화 대두유)</p> <p>동물성지방: 라드, 정제돼지지방, 우지(프리미에 주스), 수지(텔로)</p> <p>식물성오일, 미정제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및 기타 오일(코코아버터 제외))</p> <p>식물성오일, 미정제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p> <p>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및 기타 오일(코코아버터 제외))</p> <p>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p>
		마가린류	<p>마가린</p> <p>마가린: 저지방 마가린</p> <p>식물성유지: 수소화 혹은 부분 수소화된 에스테르화</p> <p>식물성유지 (바나스파티, 식탁용 마가린, 베이커리 혹은 가공용 마가린, 베이커리 쇼트닝, 지방 스프레드 및 부분 수소화 마가린, 지방 스프레드 및 부분 수소화 대두유)</p> <p>동물성지방: 라드, 정제돼지지방, 우지(프리미에 주스), 수지(텔로)</p> <p>식물성오일, 미정제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및 기타 오일(코코아버터 제외))</p> <p>식물성오일, 미정제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p> <p>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및 기타 오일(코코아버터 제외))</p>

신식품공전			인도 : 유해물질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모조치즈	식물성오일, 미정제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및 기타 오일(코코아버터 제외)) 식물성오일, 미정제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및 기타 오일(코코아버터 제외)) 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식물성크림	식물성오일, 미정제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및 기타 오일(코코아버터 제외)) 식물성오일, 미정제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및 기타 오일(코코아버터 제외)) 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식물성유지: 수소화 혹은 부분 수소화된 에스테르화 식물성유지 (바나스파티, 식탁용 마가린, 베이커리 혹은 가공용 마가린, 베이커리 쇼트닝, 지방 스프레드 및 부분 수소화 마가린, 지방 스프레드 및 부분 수소화 대두유) 동물성지방: 라드, 정제돼지지방, 우지(프리미에 주스), 수지(탈로) 식물성오일, 미정제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신식품공전			인도 : 유해물질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p>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및 기타 오일(코코아버터 제외))</p> <p>식물성오일, 미정제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p> <p>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 및 기타 오일(코코아버터 제외))</p> <p>식물성오일, 식용 (땅콩, 바바수야자, 코코넛, 목화씨, 포도씨, 옥수수, 겨자씨, 야자핵, 야자, 유채씨, 홍화씨, 참깨, 대두, 해바라기씨, 야자 올레인, 스테아린, 수퍼올레인(야자))</p>
8. 면류		생면	모든 식품
		숙면	모든 식품
		건면	모든 식품
		유당면	모든 식품
9. 음료류	9-1. 다류	9-1. 다류의 모든 세분류는 인도의 유해물질 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의 식품유형에 모두 해당됨	<p>모든 식품</p> <p>차</p> <p>차, 건조 양파, 건조 허브 및 향신료, 알긴산(당류), 알긴산염, 한천, 카라긴 및 기타 해조류 기반 유사식품</p>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9-2. 커피	커피	<p>모든 식품</p> <p>커피</p> <p>커피 (원두)</p> <p>건조 및 볶은 치커리, 원두, 향미료/액상펙틴</p>
	9-3. 과일·채소류 음료	농축과·채즙	모든 식품
		과·채주스 과·채음료	<p>음료: 과일 및 채소 주스(토마토주스 포함, 라임 및 레몬주스 제외)</p> <p>음료: 주스-오렌지, 포도, 사과, 토마토, 파인애플, 레몬</p> <p>음료: 무알코올 음료</p> <p>음료: 코코넛워터</p>

신식품공전			인도 : 유해물질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음료: 탄산음료 제조용 농축액, 라임 및 레몬주스 주스: 과일주스 (넥타, 즉석섭취 포함) 주스: 사과주스 및 기타 음료용 사과주스 재료 주스: 석류 주스 주스: 오렌지, 사과, 토마토, 파인애플, 레몬주스 주스: 핵과류 주스 토마토튀레, 페이스트, 파우더, 주스 및 칵테일
	9-4. 탄산음료류	탄산음료 탄산수	모든 식품 음료: 무알코올 음료 음료: 탄산수 음료: 탄산음료 (농축액 및 탄산수 제외) 음료: 탄산음료 (희석용) (탄산수 제외) 음료: 탄산음료 농축액 (탄산음료 제조용 제외) 음료: 탄산음료 제조용 농축액 음료: 탄산음료 제조용 농축액, 라임 및 레몬주스 천연광천수 (mg/L로 표기)
	9-5. 두유류	원액두유 가공두유	모든 식품 음료: 무알코올 음료
	9-6. 발효음료류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모든 식품 음료: 무알코올 음료 모든 식품
	9-7. 인삼, 홍삼음료	인삼, 홍삼음료	음료: 무알코올 음료
	9-8. 기타음료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모든 식품 음료: 무알코올 음료 음료: 탄산음료 농축액 (탄산음료 제조용 제외) 음료: 탄산음료 제조용 농축액 음료: 탄산음료 제조용 농축액, 라임 및 레몬주스
10. 특수용도식품	10-1.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모든 식품 영아용 우유 대체품 및 영아용 식품
	10-2. 영아용 조제식	영아용 조제식	모든 식품 영아용 우유 대체품 및 영아용 식품 영아용 조제식 (분말) 영아용 조제식 (즉석섭취) 영아용 조제식 (액상)

신식품공전			인도 : 유해물질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10-3. 성장기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모든 식품 영아용 우유 대체품 및 영아용 식품 영아용 조제식 (분말) 영아용 조제식 (즉석섭취) 영아용 조제식 (액상)
	10-4.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영·유아용곡류조제식	모든 식품 영아용 우유 대체품 및 영아용 식품 영아용 조제식 (분말) 영아용 조제식 (즉석섭취) 영아용 조제식 (액상)
	10-5. 기타 영·유아식	기타영·유아식	모든 식품 영아용 우유 대체품 및 영아용 식품 영아용 조제식 (분말) 영아용 조제식 (즉석섭취) 영아용 조제식 (액상)
	10-6.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환자용식품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유단백알레르기영·유아 용특수조제식품	모든 식품 영아용 조제식 (분말) 영아용 조제식 (즉석섭취) 영아용 조제식 (액상)
	10-7.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모든 식품
	10-8. 임산·수유 부용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	모든 식품
11. 장류		한식메주 개량메주	모든 식품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모든 식품
		한식된장	모든 식품

신식품공전			인도 : 유해물질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된장	
		고추장	모든 식품
		춘장	모든 식품
		청국장	모든 식품
		혼합장	모든 식품
		기타장류	모든 식품
	12-1. 식초	발효식초 희석초산	모든 식품 식초: 양조식초 및 합성식초
	12-2. 소스류	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모든 식품 수프 및 소스 토마토케첩
	12-3. 카레 (커리)	카레(커리)분 카레(커리)	모든 식품 조미식품: 강황 및 강황 분말
	12-4.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고춧가루 실고추	모든 식품 조미식품: 건조 칠리고추
12. 조미 식품	12-5. 향신료 가공품	천연향신료 향신료조제품	모든 식품 건조 허브, 청징제, 모든 등급의 고품 펙틴, 향신료 식품: 메이스와 육두구 함유 조미식품: 쿠민 조미식품: 후추 차, 건조 양파, 건조 허브 및 향신료, 알긴산(당류), 알긴산염, 한천, 카라긴 및 기타 해조류 기반 유사식품 향신료 향신료: 박하 향신료: 카르다몸 (생강, 씨앗 건조 향신료) 건조 및 볶은 치커리, 원두, 향미료/액상펙틴
	12-6. 식염	천일염 재제소금(재제조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모든 식품 소금 소금: 철분 강화 소금
13.	13-1.	김치속	모든 식품

신식품공전			인도 : 유해물질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절임류 또는 조림류	김치류	김치	
	13-2. 절임류	절임식품 당절임	모든 식품 식탁용 올리브 채소가공품: 오이피클
	13-3. 조림류	조림류	모든 식품
14. 주류	14. 주류의 모든 세분류는 인도의 유해물질 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의 식품유형에 모두 해당됨		모든 식품 알코올음료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주류: 와인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음료: 토디 (위스키 음료)
주정			
15. 농산 가공 식품류	15-1. 전분류	전분 전분가공품	모든 식품 전분: 사고, 카사바전분, 타피오카전분, 마니호트전분 및 가공품 곡류 및 곡류가공품 당류: 당밀, 액상 카라멜, 고휘 포도당, 전분당 제품 (황산화분 함량 1.0% 초과)
	15-2. 밀가루류	밀가루 영양강화 밀가루	모든 식품 곡류 및 곡류가공품
	15-3.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류	땅콩 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모든 식품 견과류: 가공용 견과류 견과류: 즉석섭취
	15-4. 시리얼류	시리얼류	모든 식품 곡류 및 곡류가공품

신식품공전			인도 : 유해물질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15-5. 찐쌀	찐쌀	모든 식품 곡류 및 곡류가공품
	15-6. 효소식품	효소식품	모든 식품
	15-7. 기타 농산 가공품	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	모든 식품 건조 양파, 식용 젤라틴, 액상 펙틴 곡류 및 곡류가공품 곡류: 도정된 곡물 곡류: 도정된 곡물 (쌀 제외) 곡류: 쌀 (도정된) 곡류: 쌀겨 곡류: 옥수수 낱알 과일가공품: 건조 과일가공품: 건조 무화과 과일펠프 및 가공품 두류: 대두 껍묵 두류: 대두 껍묵 (기름 제거) 생선통조림, 고기통조림, 젤라틴, 고기 추출물 및 가수분해 단백질, 건조 채소 (양파 제외) 서류: 감자 (껍질 벗긴) 식품: 버섯 함유 차, 건조 양파, 건조 허브 및 향신료, 알긴산(당류), 알긴산염, 한천, 카라긴 및 기타 해조류 기반 유사식품 참깨 채소가공품: 건조 및 볶은 치커리 채소가공품: 토마토 농축액 토마토튀레, 페이스트, 파우더, 주스 및 칵테일 건조 및 볶은 치커리, 원두, 향미료/액상펙틴
16. 식육 가공품	16-1. 햄류	햄 생햄 프레스햄	모든 식품 식육가공품: 염장 소고기 (통조림용) 식육가공품: 염장 소고기 (포장용) 식육가공품: 염장 소고기, 런천미트, 조리된 햄, 다진 육류, 닭 통조림, 양고기 통조림, 염소 고기 식육가공품: 염장 소고기, 런천미트, 조리된 햄, 다진 육류, 닭 통조림, 양고기 통조림, 염소 고기 및 기타 육류 식육가공품: 육류 및 식육가공품

신식품공전			인도 : 유해물질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식육가공품: 조리 및 큐어링된 다진 육류 (통조림용) 식육가공품: 조리 및 큐어링된 다진 육류 (포장용) 식육가공품: 조리 및 큐어링된 돼지 어깨살 (통조림용) 식육가공품: 조리 및 큐어링된 돼지 어깨살 (포장용) 식육가공품: 조리 및 큐어링된 햄 (통조림용) 식육가공품: 조리 및 큐어링된 햄 (포장용)
	16-2. 소시지류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모든 식품 식육가공품: 육류 및 식육가공품
	16-3. 베이컨류	베이컨류	모든 식품 식육가공품: 육류 및 식육가공품
	16-4. 건조저장 육류	건조저장육류	모든 식품 식육가공품: 육류 및 식육가공품
	16-5. 양념육류	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천연케이싱	모든 식품 식육가공품: 런천미트(통조림용) 식육가공품: 런천미트(포장용) 식육가공품: 염장 소고기, 런천미트, 조리된 햄, 다진 육류, 닭 통조림, 양고기 통조림, 염소 고기 식육가공품: 염장 소고기, 런천미트, 조리된 햄, 다진 육류, 닭 통조림, 양고기 통조림, 염소 고기 및 기타 육류 식육가공품: 육류 및 식육가공품 식육가공품: 2차가공용 육류 및 육류가공품 (가금육 및 수렵육 포함) 식육가공품: 조리 및 큐어링된 다진 육류 (통조림용) 식육가공품: 조리 및 큐어링된 다진 육류 (포장용) 식육가공품: 조리 및 큐어링된 돼지 어깨살 (통조림용) 식육가공품: 조리 및 큐어링된 돼지 어깨살 (포장용)
	16-6. 식육추출 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모든 식품 생선통조림, 고기통조림, 젤라틴, 고기 추출물 및 가수분해 단백질, 건조 채소 (양파 제외) 식육가공품: 육류 및 식육가공품
	16-7. 식육함유 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모든 식품 생선통조림, 고기통조림, 젤라틴, 고기 추출물 및 가수분해 단백질, 건조 채소 (양파 제외) 식육가공품: 가금육 지방

신식품공전			인도 : 유해물질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식육가공품: 소, 양, 돼지고기 (육류 지방 적용) 식육가공품: 육류 및 식육가공품
	16-8. 포장육	포장육	모든 식품 식육가공품: 육류 및 식육가공품 식육가공품: 2차가공용 육류 및 육류가공품 (가금육 및 수렵육 포함)
17. 알가공품류	17-1. 알가공품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모든 식품
	17-2. 알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모든 식품
18. 유가공품	18. 유가공품의 모든 중/세분류는 인도의 유해물질 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의 식품유형에 모두 해당됨		모든 식품 우유 및 유제품
	18-1. 우유류	우유 환원우	우유 우유 (농도는 부분 또는 완전 탈지우유에 적용)
	18-2. 가공우유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우	우유 2차 가공품
	18-3. 산양유	산양유	
	18-4. 발효우유	발효우 농후발효우 크림발효우 농후크림발효우 발효버터우 발효유분말	우유 2차 가공품
	18-5. 버터우	버터우	우유 2차 가공품
	18-6. 농축우유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우유 2차 가공품

신식품공전			인도 : 유해물질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18-7. 유크림류	유크림 가공유크림	우유 2차 가공품
	18-8. 버터류	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우유 2차 가공품
	18-9. 치즈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우유 2차 가공품
	18-10. 분유류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우유 2차 가공품
	18-11. 유청류	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우유 2차 가공품
	18-12. 유당	유당	우유 2차 가공품
	18-13. 유단백가 수분해 식품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우유 2차 가공품
	19. 수산가공식품류의 모든 중/세분류는 인도의 유해물질 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의 식품유형에 모두 해당됨		모든 식품 수산가공품
19. 수산 가공 식품류	19-1. 어육 가공품류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어육소시지 기타 어육가공품	수산가공품: 열처리 어류: 연육 및 유사제품
	19-2. 젓갈류	젓갈 양념젓갈 액젓	수산가공품: 건조/염장 수산가공품: 숙성 어류: 젓갈

신식품공전			인도 : 유해물질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조미액젓	
	19-3. 건포류	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 건포류	수산가공품: 건조/염장 수산가공품: 훈제
	19-4. 조미김	조미김	차, 건조 양파, 건조 허브 및 향신료, 알긴산(당류), 알긴산염, 한천, 카라긴 및 기타 해조류 기반 유사식품
	19-5. 한천	한천	차, 건조 양파, 건조 허브 및 향신료, 알긴산(당류), 알긴산염, 한천, 카라긴 및 기타 해조류 기반 유사식품
	19-6. 기타 수산물 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생선통조림, 고기통조림, 젤라틴, 고기 추출물 및 가수분해 단백질, 건조 채소 (양파 제외) 수산가공품: 건조/염장 수산가공품: 기타 수산가공품: 반죽을 입힌 수산가공품: 열처리 수산가공품: 훈제 어류: 기타 생선 기반 식품 어류: 신선, 냉장, 냉동 생선 어류: 2차가공용 생선
20. 동물성 가공 식품류	20-1.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제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기타동물성가공식품	모든 식품 젤라틴 생선통조림, 고기통조림, 젤라틴, 고기 추출물 및 가수분해 단백질, 건조 채소 (양파 제외)
	20-2. 곤충 가공식품	곤충가공식품	모든 식품
	20-3. 자라분말 가공식품	자라분말 자라분말제품 자라유제품	모든 식품
	20-4. 추출 가공식품	추출가공식품	모든 식품
21. 벌꿀 및 화분가 공품	21-1. 벌꿀류	벌집꿀	모든 식품
		벌꿀 사양벌집꿀 사양벌꿀	
	21-2.	로얄젤리	모든 식품

신식품공전			인도 : 유해물질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로얄 젤리류	로얄젤리제품	
	21-2. 화분식품	가공화분 화분함유제품	모든 식품
22. 즉석식품류	22-1. 생식류	생식제품 생식함유제품	모든 식품
	22-2. 즉석섭취 편의 식품류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즉석조리식품	모든 식품 견과류: 즉석섭취 기름 및 기름씨앗: 즉석섭취 수산가공품: 기타 즉석섭취용 수프 및 소스
	22-3. 만두류	만두 만두피	모든 식품
23. 기타식품류	23-1. 효모식품	효모식품	모든 식품 이스트류
	23-2. 기타 가공품	기타가공품	모든 식품 베이킹파우더 천연광천수 (mg/L로 표기) 베이킹파우더 분류되지 않은 식품
24. 그 외 분류	장기보존 식품	병통조림식품	모든 식품 생선통조림, 고기통조림, 젤라틴, 고기 추출물 및 가수분해 단백질, 건조 채소 (양파 제외) 통조림 식품 통조림: 감귤류 과일 통조림: 과일 칵테일 통조림: 꿀 통조림: 꼬투리강낭콩 및 강낭콩 통조림: 당근 통조림: 딸기 통조림: 라즈베리 통조림: 망고 통조림: 밤, 밤 껍데 통조림: 버섯 통조림: 생선 통조림: 숙성 완두콩

신식품공전			인도 : 유해물질 규정 내 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인도 식품유형(한국어)
			통조림: 스위트콘 통조림: 아스파라거스 통조림: 야자순 통조림: 열대과일 샐러드 통조림: 음료 통조림: 음료 이외 식품 통조림: 자몽 통조림: 채소 통조림: 토마토 통조림: 파인애플 통조림: 풋완두콩 통조림: 핵과류 식육가공품: 런천미트(통조림용) 식육가공품: 염장 소고기, 런천미트, 조리된 햄, 다진 육류, 닭 통조림, 양고기 통조림, 염소 고기 식육가공품: 염장 소고기, 런천미트, 조리된 햄, 다진 육류, 닭 통조림, 양고기 통조림, 염소 고기 및 기타 육류 식육가공품: 조리 및 큐어링된 다진 육류 (통조림용) 식육가공품: 조리 및 큐어링된 돼지 어깨살 (통조림용) 식육가공품: 조리 및 큐어링된 햄 (통조림용)
		레토르트식품	모든 식품
		냉동식품	모든 식품
	식품원료	식물성 원료	모든 식품
		동물성 원료	모든 식품
	그외 분류	그외 분류	모든 식품 분류되지 않은 식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들은 그 외의 분류로 구분하였으며, at KATI에도 올라가 있음.

*식품첨가물 문서 내 식품유형 중 원물에 해당하는 품목 제외

□ 2. 식품첨가물 관련 규정

□ 가. 규정 개요 및 내용

≫ 규정 제정 기관 및 규정 게시 사이트

▪ 인도 식품첨가물 규정

- 2011년 인도 보건가족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산하 식품 안전표준청(FSSAI)에서 최종적으로 도출한 식품안전표준규정(Food Safety and Standards Regulations, 2011)에 수록되어 있음
- 이 중 두 번째 규정인 식품표준 및 식품첨가물 규정(Food Products Standards and Food Additives)에 식품첨가물(Substances Added to Food)에 대해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음

* <https://archive.fssai.gov.in/home/fss-legislation/fss-regulations.html>

≫ 식품첨가물 규정 주요 내용

- 규정에 허용된 색소 이외에 사용 금지, 사용될 수 있는 천연색소 목록, 무기 착색 물질 및 색소 첨가 금지, 사용될 수 있는 합성 식품색소 목록, 레이크안료의 착색제 사용, 허용되는 합성 식품색소의 최대 제한량 등
- 합성 감미료 목록과 해당 식품 및 최대 한계치, 식품 또는 식탁용 감미료에 합성 감미료 혼합물 사용 금지, 식탁용 감미료의 레이블 규정, 식품에서의 폴리올, 폴리덱스트로스 사용 규정 등
- 보존제의 정의, 분류, 사용 제한, 사용 가능 식품, 혼합식품에서의 보존제 사용,

영아용식품과 치즈에서의 보존제 사용 규정 등

- 산화방지제의 정의, 사용 제한, 사용 가능 식품 등
- 유화제 및 안정제의 정의, 사용 제한, 사용 가능 식품 등
- 고화방지제의 사용 제한
- 식용유와 지방의 항기포제 사용 제한 및 항기포제의 정의
- 당과류에서 이형제 사용 제한
- 향미료 및 관련 물질들의 정의, 향미료와 산화방지제, 유화제 및 안정제 및 식품 보존제의 사용 규정, 향미료와 고화방지제 사용 규정, 사용 제한, 향미료와 용제의 사용 등
- 향미증진제 MSG 사용 기준 및 사용될 수 없는 식품 목록
- 금속조절제 및 완충제의 정의, 사용 제한
- 나무 송진의 글리세롤 에스테르 사용 제한
- 자당 아세트산염 이소부티르산아밀 사용 제한
- 락툴로오스 시럽 사용 제한
- 디메틸디카본산염 사용 제한
- 기타 식품첨가물 사용 제한

□ 나. 식품첨가물 정의

» 인도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의

- 식품표준 및 식품첨가물 규정(Food Products Standards and Food Additives)의 3장 식품첨가물(Substances Added to Food)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련 규정 내용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 식품에 원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로, 식품의 제조, 처리 또는 포장에서의 사용 결과에 따라 식품의 구성요소가 되나 식품 자체의 그 어떠한 물리적 또는 기술적 효과를 주기 위한 물질이 아님

» 한국 식품첨가물 정의

- 한국 식품첨가물의 정의는 식품위생법 제 2조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함. 이 경우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이전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함
 - 한국의 식품첨가물 정의와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제시되어 있음⁷⁾
-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첨가물의 “용도”란 식품의 제조·가공 시 식품에 발휘되는 식품첨가물의 기술적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서 각 용어에 대한 뜻은 다음과 같음
 - (1) “감미료”란 식품에 단맛을 부여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 (2) “고결방지제”란 식품의 입자 등이 서로 부착되어 고형화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7) https://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04_01.jsp

- (3) “거품제거제”란 식품의 거품 생성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4) “껌기초제”란 적당한 점성과 탄력성을 갖는 비영양성의 씹는 물질로서 껌 제조의 기초 원료가 되는 첨가물을 의미함
- (5) “밀가루개량제”란 밀가루나 반죽에 첨가되어 제빵 품질이나 색을 증진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6) “발색제”란 식품의 색을 안정화시키거나, 유지 또는 강화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7) “보존료”란 미생물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여 식품의 보존기간을 연장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8) “분사제”란 용기에서 식품을 방출시키는 가스 첨가물을 의미함
- (9) “산도조절제”란 식품의 산도 또는 알칼리도를 조절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 (10) “산화방지제”란 산화에 의한 식품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 (11) “살균제”란 식품 표면의 미생물을 단시간 내에 사멸시키는 작용을 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 (12) “습윤제”란 식품이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 (13) “안정제”란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성분을 일정한 분산 형태로 유지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14) “여과보조제”란 불순물 또는 미세한 입자를 흡착하여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을 의미함
- (15) “영양강화제”란 식품의 영양학적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제조과정 중 손실된 영양소를 복원하거나, 영양소를 강화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16) “유화제”란 물과 기름 등 섞이지 않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상(phases)을 균질하게 섞어주거나 유지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17) “이형제”란 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원료가 용기에 붙는 것을 방지하여 분리하기 쉽도록 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 (18) “응고제”란 식품 성분을 결합 또는 응고시키거나, 과일 및 채소류의 조직을 단단하거나 바삭하게 유지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19) “제조용제”란 식품의 제조·가공 시 촉매, 침전, 분해, 청징 등의 역할을 하는 가공보조제를 의미함
- (20) “젤형성제”란 젤을 형성하여 식품에 물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 (21) “증점제”란 식품의 점도를 증가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22) “착색료”란 식품에 색을 부여하거나 복원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23) “청관제”란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스팀을 생산하는 보일러 내부의 결석, 물때 형성,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 (24) “추출용제”란 유용한 성분 등을 추출하거나 용해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25) “충전제”란 산화나 부패로부터 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의 제조 시 포장 용기에 의도적으로 주입시키는 가스 첨가물을 의미함
- (26) “팽창제”란 가스를 방출하여 반죽의 부피를 증가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27) “표백제”란 식품의 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을 의미함
- (28) “표면처리제”란 식품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거나 정돈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을 의미함
- (29) “피막제”란 식품의 표면에 광택을 내거나 보호막을 형성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 (30) “향미증진제”란 식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31) “향료”란 식품에 특유한 향을 부여하거나 제조과정 중 손실된 식품 본래의 향을 보강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32) “효소제”란 특정한 생화학 반응의 촉매 작용을 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 다. 식품첨가물 범례

» 인도 식품첨가물의 범례

- ①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준수: 식품첨가물 목록에 등재되어 해당 품목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기준이 없는 경우로, 우수제조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따라 사용이 가능함
- ② 식품첨가물 이행(carry over)

이행을 통해 식품에 존재하는 첨가물은 각 식품에 허용된 최대량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됨

이행은 해당 공정에서 사용하지 않았지만 식품첨가물이 식품 원재료 자체에서 천연적으로 유래하거나 식품첨가물이 이미 들어간 재료를 사용하여 이행되어 검출되는 경우를 의미
- ③ 특정 식품 사용 금지

식품첨가물 규정에 수록되어 있으나 해당 품목에 사용할 수 없음

» 한국 식품첨가물의 범례

- ① 일반사용기준 :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있어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함에 있어 사용량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는 경우로 식품첨가물 일반 사용기준에 따라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최소 적정량을 사용하여야 함
- ② 사용금지 :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당 품목에 사용할 수 없음

□ 3. 유해물질 관련 규정

□ 가. 규정 개요 및 내용

» 규정 제정 기관 및 규정 게시 사이트

▪ 인도 유해물질 규정

- 2011년 인도 보건가족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산하 식품 안전표준청(FSSAI)에서 도출한 식품안전표준규정(Food Safety and Standards Regulations, 2011)에 수록되어 있음
- 이 중 다섯 번째 규정인 오염물질, 독소 및 잔류물 규정(Contaminants, Toxins and Residues)에 유해물질에 대해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음

* <https://archive.fssai.gov.in/home/fss-legislation/fss-regulations.html>

» 나. 유해물질 규정 주요 내용

- 금속 오염물질인 납, 구리, 비소, 주석, 카드뮴, 수은, 메틸수은, 크롬, 니켈 등의 식품에서의 최대 허용치
- 농작 오염물질 및 자연발생적 독소 물질의 목록, 식품에서의 최대 허용치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독성 물질의 목록, 식품에서의 최대 허용치
- 어류 및 수산물의 폴리염화비페닐(PCBs) 및 다륜성방향족탄화수소(PAH) 화합물의 식품에서의 최대 허용치
-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정의, 식품에서의 최대 잔류 허용치

- 항생제 및 타 약리학 작용물질의 목록 및 허용 한도
- 어류 및 수산물의 생물 독소의 허용 한도
- 기타 오염 물질의 목록 및 최대 허용치

□ 나. 유해물질 정의

» 인도의 유해물질에 대한 정의

- 식품안전표준규정(Food Safety and Standards Regulations, 2011)의 오염물질, 독소 및 잔류물 규정(Contaminants, Toxins and Residues)에 유해물질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음
- “오염물질”은 식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물질이 아니라, 환경오염의 결과로 곡물 재배, 축산 활동 및 수의학 활동을 포함한 식품 생산, 제조, 가공, 재료 준비, 처리, 포장, 운송 혹은 보관 과정에서 식품에 혼입되는 모든 물질로 정의됨

» 한국 유해물질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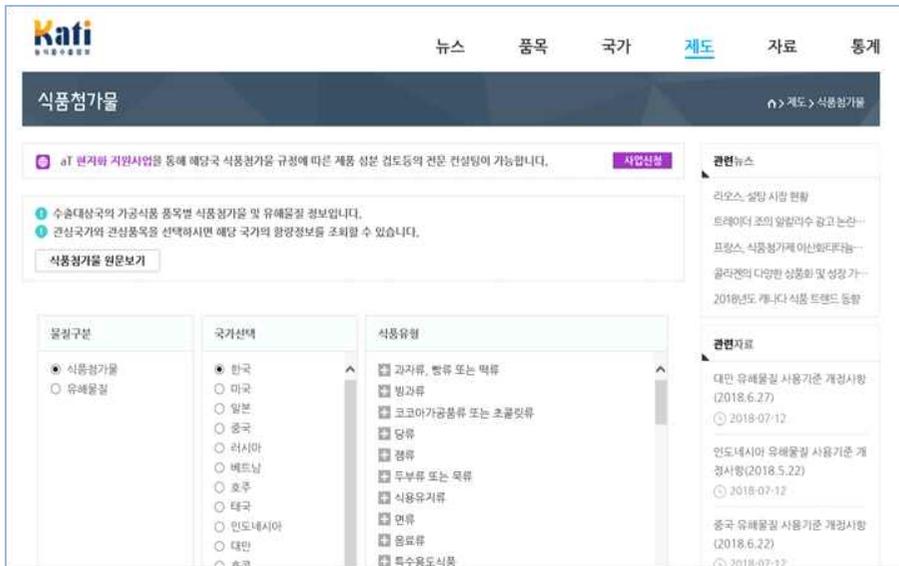
- 한국 식품위생법에서는 ‘위해’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 2조에서는 ‘유해물질’을 원재료 또는 제조과정 중 오염 또는 잔류의 가능성이 있어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미생물, 중금속, 잔류농약, 잔류용매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식품 및 기능성 식품관련법을 비추어 해석하자면 식품 중 유해물질이라 함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에 존재하여 인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적 요인으로 간주됨

- 한국의 유해물질 정의와 기준은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제시되어 있음⁸⁾

□ 4. 식품첨가물/유해물질 기준 데이터베이스 활용

- 주요 수출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에 대한 허용기준은 aT농수산물수출 지원정보→제도→식품첨가물/유해물질을 통해 검색이 가능함

* <http://www.kati.net/additive/additiveList.do>



[그림 2-4] 식품첨가물/유해물질 기준 DB 수출지원정보 사이트(aT Kati)

8)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specialinfo/infoMapCodex.do?menu_grp=MENU_NEW04&menu_no=2848

-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베트남, 호주,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홍콩, 아랍에미리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캐나다, 인도 등 17개국 식품첨가물과 관련하여 사용기준, 식품유형, 함량정보 등에 관한 정보와 유해물질의 허용 여부 및 한계치를 제공하고 있음
- 해당 정보는 관심국가와 관심품목을 선택하면 해당 국가의 함량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의 식품공전을 기준으로 매칭되어 있음
- Kati 홈페이지는 농·식품 수출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별도의 아이디가 없어도 홈페이지의 자료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내용에 대한 간단한 검색 결과는 [표 2-19], [표 2-20]과 같음

[표 2-19]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검색 결과 예시

번호	물질	식품 유형	기준	
			한국	일본
1545	acesulfame potassium	유당면	0.35g/kg 이하	0.35g/kg 이하 (특별용도 표시허가 및 승인을 받은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음)
1549	5'-deaminase	과자	일반사용기준	일반사용기준
1548	acacia (gum arabic)	포장육	일반사용기준	일반사용기준

[표 2-20] 유해물질 사용기준 검색 결과 예시

번호	물질	한국 식품 유형	인도		분류PVO*
			식품유형	함량정보	
1	triazophos	콩기름(대두유)	기름: 대두유	0.05mg/kg	p
2	spinetoram	콩기름(대두유)	기름: 대두유	0.02mg/kg	p
3	pyraclostrobin	빵류	빵류: 땅콩 케이크	0.05mg/kg (fixed at LOQ)	P

* 유해물질 분류: 농약(Pesticide), 동물용의약품(Veterinary medicine), 기타(Others)



제 6 절. 기타 식품안전 및 수입식품관련 이슈

□ 1. 식품관련 주요 비관세 장벽

» 식품과 관련된 규정 및 인증

인도 통관 시,인도 표준청(BIS) 인증, 동식물 허가 및 검역 확인서(Plant/Animal permit- Quarantine certificate), 식품안전표준청(FSSAI)의 식품 포장(food and product packaging) 규정 등 각종 규정 및 인증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 식품 라벨링 규정

수입식품 관련 규정 중 식품 라벨링(Labelling)이 제일 큰 애로사항 중 하나임. 예전에는 단순히 제품 정보를 스티커로 부착할 수 있었으나, 2013년 라벨링 및 포장 규정(Labelling and Packaging Regulation) 시행 이후 스티커 부착이 금지되고 포장지에 직접 인쇄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으며, 최근에 더욱 강화됨

라벨링 인쇄를 한 포장지를 새로 제작함에 따른 비용 상승 및 소량 주문 시 포장에 라벨 인쇄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 또한 스티커 라벨 부착 시 통관 거부 등이 발생

» 최고 소매가의 명시

통관 전 루피화로 표시된 최고 소매가(maximum retail price, MRP)를 라벨에 명시해야 함. 이 MRP는 세금 산출 근거로 활용됨

대부분의 경우 판매업자들은 최고가를 실패판매가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확한 최고가 예측이 중요

한번 정해진 MRP는 수정할 수 없으며,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관 물량부터 인상이 가능

따라서 이는 수출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

» 수입식품의 유효 기간

수입 식품은 수입 당시 제품 전체 유통기간의 60%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함. 이 규정은 수입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장애요소로 작용

» 항만보건소(Port Health Office, PHO)의 검사

모든 식품 화물은 통관 전에 항만보건소(PHO)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전까지 화물창고에 보관되며, 검사 통과에 실패하면 화물은 반송되거나 폐기 처분됨

대부분의 식품 통관은 인증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샘플링 테스트를 위한 실험 시설이 부족해 검사 대기 중인 제품은 유료 보관창고에 장시간 방치되는 경우도 많으며, 일부 창고는 식품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임

검사는 제품 운송 보관의 상태와 제품의 시각적, 물리적 상태 등을 확인함

» 신속하지 못한 샘플 검사

항만보건소(PHO)가 없는 항만은 해당 항만에서 가까운 중앙식품실험실 또는 보건당국(Directorate General of Health Service)에서 인가한 실험실에 샘플을 보내 검사를 받아야 함

샘플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까지 1일에서 1개월까지 소요돼 식품 유통기간이 손해를 보게 되고 샘플 테스트 비용이 발생하여 수입자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

실험실의 검사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검사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잘못된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발생

식용유와 유지, 콩류, 시리얼 제품, 분유, 연유, 색소성분 및 첨가물은 필수적으로 샘플 테스트를 거쳐야 함

» 세관의 수출품 재반출 거부

바이어의 구매 거부로 인한 수출품 재반출을 세관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운송된 제품에 대해 바이어가 구매를 거부할 경우, 수출업자는 제3의 바이

어에게 판매하거나 아니면 수출지로 재반출해야 하나, 이 경우 인도 세관에서는 원래 계약자(바이어)의 NOC(Non Objection Certification)을 요구함
바이어가 NOC를 써 주지 않을 경우, 재반출이 불가하게 됨. 현지 바이어가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구매를 거부한 후, 수출자의 재반출이 곤란해진 틈을 이용해 재협상을 시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물품을 인도받는 경우가 종종 있음

□ 2. 식품안전 이슈

» 식품안전표준규정의 개정

2016년 1월 식품안전표준규정의 내용을 일부 개정함. 식품 수입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식품 수입자는 반드시 해외무역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DGFT)에 식품 수입자로 등록하고, 식품 수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식품 통관 시,유통기한의 최소 60%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함

만일 수입자가 식품 수입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식품 수입을 시도 할 경우 식품 수입 라이선스와 수출입 코드(Import-Export Code)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모든 식품 수입자는 반드시 자신의 관세사(Customs House Agent, CHA)를 지정하여야 하며, CHA는 식품 수입 제반 절차 및 관련 서류 업무를 담당하며 식품 수입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수입자와 같이 책임을 짐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종류의 식품이 적재될 경우, 식품 검사관의 검사 및 샘플 채취 작업이 용이 하도록 포장해야 함

» 검역절차의 강화

인도의 경우 모든 살아있는 동물 및 신선육, 냉장 및 냉동육, 가금류와 계란분말, 유제품 등의 동물성 제품 및 부산물 등은 검역절차를 필히 거쳐야 함

현재 인도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항만보건소(PHO)에서 샘플 검사를 받고 식품안전표준청의 인증을 받아야 함

인도 정부에서 발행한 위생 수입 허가 없이는 수입이 금지됨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ASSI)은 지난 2015년 6월 Maggie 제품의 납성분 검출 파문 이후부터 Top Ramen, Wai-Wai, Yippee 등 다른 라면 제품 및 모든 식품에 대한 검역 절차를 강화함

Maggie 라면 사태 이후, 수입 식품에 대한 식품 검역 절차 및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통관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 중국산 우유 및 유제품 수입금지 조치

중국산 유제품 멜라민 파동으로, 2008년부터 중국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매년 연장하여 실시

중국산 우유를 원료로 하는 한국 식품제조업체는 인도 수출을 위해 사전확인 필요

» 규정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 규정 목록에 제시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 관련 제도를 살펴봐야 함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2018년 1월 1일 인도식품관련법에 규정되지

많은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함. 식품안전표준청(FSSAI)을 통해 수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해당 제품들로는 유산균, 식물성분 등이 첨가된 건강기능성 식품들이 있음

» 항생제 콜리스틴 사용 중지

가축 사료 성분으로 쓰이는 항생제 콜리스틴 사용 전면 중지

인도 보건가족복지부는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항생제 성분인 콜리스틴(Colistin)의 제조 금지를 발표함. 이는 콜리스틴의 제조, 판매 및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제재임

콜리스틴은 그동안 동물, 가금류, 수경 재배 및 동물이 섭취하는 보충제에 사용됐으며, 이는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콜리스틴은 항생물질 중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어 최후의 항생제라고 불리는 성분임. 최근 콜리스틴에 내성을 보이는 세균이 전세계적으로 발견되고 있음

» 포름알데이트 사용 중지

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어류 및 어류 조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포름알데이드(Formaldehyde)의 잔류허용기준을 수정함

민물에서 자란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 해수 및 해수와 담수가 혼합돼 있는 기수에서 자란 것의 잔류허용기준은 100mg/kg임

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의 양을 고려한 것이며, 인위적인 투입은 금지하는 것을 고려한 양임. 또한, 해당 수정안은 일시적인 것이며,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현재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다시 수정될 예정임

□ 3. 인도 수출 관련 Q & A

Q. 인도 식품시장 진출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인도의 식품 통관절차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으나, 개별 제품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명확하지 않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함

식품안전표준청의 식품통관 프로세스 상에는 육안검사 후 샘플링 검사를 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육안검사로 마치는 경우가 많으며, 육안검사 후 통관 전 샘플링 검사에 대한 (인증)결과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통관이 거부돼 반송 처리되거나 체화료를 물게 됨. 따라서, 통관 이전에 사전 인증을 받아두고 라벨상의 표기 내용이 인증받은 내용과 일치하도록 해야 함

Q. 인도 내 물류 유통에 있어서 주로 나타나는 애로사항들은 무엇인지?

물류 지연으로 인해 비용이 과다해지는 경우가 발생함. 인도는 인프라가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이 많음. 대개의 경우 항구로부터 회사까지 배달이 이루어지는 길이 정비되지 않은 곳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길이 험해 박스가 굴러떨어지는 일도 있고, 재래시장 등을 통과하느라 화물이 엉망이 될 때도 있음

특히 인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수도 뉴델리가 있는 북부경제권은 내륙지역이기 때문에 항구로부터 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항구에서 뉴델리까지 가려면 철도

운송으로 짧게 잡아도 5-7일은 소요됨. 여기서 제대로 물류를 관리하지 않으면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은 14-20일로 길어지게 됨

Q. 인도 통관에 있어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인도는 상대적으로 통관 프로세스가 느리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기존에는 속도를 올리기 위해 '뒷돈(undertable money)'이 필요했는데, 모디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에 대한 접근이 더 어려워졌음

적은 물량이나 크지 않은 샘플로 먼저 통관을 개시해 길을 트는 것이 중요함. 해당 통관코드로 해당 물건이 통관됐다는 내역이 만들어진다면 이후 통관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짐

Q. 인도의 경우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인도인과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인도 비즈니스맨이 가지고 있는 사업관행과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사업관행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특히 유의해야 함. 인도 바이어들을 직접 상담한 후 바로 거래에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실제 오더 및 대금결제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특히 정부 공무원과 업무를 할 때는 더욱 그러함. 인도 정부기관의 업무 처리는 매우 느린데, 단계별 사항을 한 발짝 먼저 시작한 후 인내심을 가져야 함

카스트 제도는 철폐됐지만 사회관행으로 남아있어 기업 내 엄격한 위계 문화로 반영되고 있기에 미팅은 가능한 의사결정자와 진행하는 것이 좋음. 인도인들은 책임회피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담당자 선에서 동의한 부분이 실제 계약을 체결하게 될 시 상대측 경영자에서 다른 말을 하거나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주요한 내용은 반드시 문건으로 남겨두어야 하며, 문서의 서명권자

가 누구인지, 그가 회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함

Q. 인도의 경우 수출 거래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인도의 대부분의 소비자는 가격에 민감함. 따라서 품질만을 강조해서는 성공하기 어려움. 제품의 포장이나 옵션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가격을 낮추는 것이 유리함. 가격 협상은 몇 차례에서 걸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 가격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한 경우에도 다음날 다시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마지막까지 가격의 마지노선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좋음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는 선적 시 바이어로 하여금 선적 전에 제품을 검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동의를 얻어 내는 것이 좋음. 단순히 샘플로만 합의하고 선적한 경우 나중에 제품의 불량이나 하자를 이유로 제품 도착 후 제품 수령을 거절하는 사례가 종종 있음. 또한 이를 빌미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은 기본임. 인도의 경우 영국의 식민지배의 경험으로 영미식 계약문화가 자리잡고 있음. 수출계약서는 물론 일상생활의 집 임차계약조차도 최소 4-5페이지에서 많게는 30페이지에 이르는 경우가 많음.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인도와의 상거래시 복잡한 계약서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거나 제대로 계약 조건을 따지지 않아 향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한국측에서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음. 아무리 사전에 계약조건을 상의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 계약서 작성을 일임할 경우, 서로 논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내용을 작성하여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가 발생함.

인도 업체는 강력한 상인 카스트 커뮤니티를 구성하며 구전 마케팅의 대표적 시장임. 이는 소개 영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선언적인 내용을 말로 약속한 것은 인도와의 거래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음. 오히려 나중에 분쟁의 불씨로 작용하게 되기에 모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함.

중요한 내용은 유선통화를 통해 서로 의사를 확인하더라도 반드시 수신확인이 가능한 메일을 상대측에 발송하여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음. 문제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구두로 의사를 표현하기보다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명형식을 갖춘 공식문서로 문제제기를 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음.

Q. 인도의 바이어와의 거래에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인도 바이어는 당장 구매를 할 것처럼 관심을 표현하다가도 막상 가격 협상이나 구매를 위한 상담은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는 인도상인의 특징상 일단 무엇이든지 관심을 보인 후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우 인도 상인은 상대방이 치르게 되는 금전적·시간적 손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무역 상담 초기부터 인도 바이어의 의도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인도 바이어들은 자신들이 다급한 상황에 처하거나 제품 구입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 아닐 경우 거래에 대해 별로 빠르게 반응하지 않으며 간단한 업무에 대한 처리도 오래 걸림. 이 외 서류 및 계약서를 중요시 하는 인도 바이어들은 수출 서류 미비나 사소한 서류상의 실수를 빌미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한국 업체들이 인도 바이어들과 연락을 시도할 때 바이어들에게서 회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바이어들이 메일을 아예 받아보지도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인도는 한국에 비해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아, 한국에서 대용량 첨부파일을 함께 보낼 경우 메일을 받지 못하거나, 메일에 많은 링크를 걸어 놓았을 경우 스팸으로 분류되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참고문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 KOTRA 국가정보 인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9), 2019 인도 진출전략.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6), 2016 검역타결품목조사 - 배, 베트남·인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8), 2017 인도 라면 시장 현황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9), 2019 인도 건조 김 보고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9), 인도 전문 식품수입 벤더현황

인도 라벨링 규정

<https://archive.fssai.gov.in/home/fss-legislation/fss-regulations.html>

인도 상업정보 및 통계총국(DGCIS)

www.kati.net (<http://www.kati.net/nation/basisInfo.do?lcdCode=MD192>)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

<https://fssai.gov.in/cms/food-safety-and-standards-regulations.php>

인도 CBEC(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

<http://www.cbec.gov.in>

인도 FSSAI

<http://fssai.gov.in/home/food-standards/Non-Specified-Food---Ingredients-Approval.html>

한-인도 CEPA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in/>

kati 농식품수출정보

www.kati.net (<http://www.kati.net/nation/basisInfo.do?lcdCode=MD192>)

부 록



부록 1

대한민국 신식품공전 식품 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품목코드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N001-001
		캔디류	N001-002
		추잉껌	N001-003
		빵류	N001-004
		떡류	N001-005
2. 병과류	2-1.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N002-001
		저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2-2.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믹스	N002-002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샤베트믹스	
	2-3. 병과	빙과	N002-003
2-4. 얼음류	식용얼음	N002-004	
	어업용얼음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3-1. 코코아가공품류	코코아매스	N003-001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기타 코코아가공품	
	3-2. 초콜릿류	초콜릿	N003-002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품목코드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4. 당류	4-1. 설탕류	설탕	N004-001
		기타설탕	N004-002
	4-2. 당시럽류	당시럽류	N004-003
		4-3. 올리고당류	올리고당
	올리고당가공품		N004-005
	4-4. 포도당	포도당	N004-006
	4-5. 과당류	과당	N004-007
		기타과당	N004-008
	4-6. 엿류	물엿	N004-009
		기타엿	N004-010
		텍스트린	N004-011
	4-7. 당류가공품류	당류가공품류	N004-012
5. 잼류		잼	N005-001
		기타잼	N005-002
6. 두부류 또는 묵류		두부	N006-001
		유바	N006-002
		가공두부	N006-003
		묵류	N006-004
7. 식용유지류	7-1. 식물성유지류	콩기름(대두유)	N007-001
		옥수수기름(옥배 유)	N007-002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N007-003
		미강유(현미유)	N007-004
		참기름	N007-005
		추출참깨유	참기름
		들기름	N007-006
		추출들깨유	들기름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N007-007
		해바라기유	N007-008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품목코드
		목화씨기름(면실 유)	N007-009
		땅콩기름(낙화생 유)	N007-010
		올리브유	N007-011
		팜유	N007-012 팜유
		팜올레인유	
		팜스테아린유	
		팜핵유	
		야자유	N007-013
		고추씨기름	N007-014
		기타식물성유지	N007-015
	7-2. 동물성유지류	식용우지	N007-016
		원료우지	
		식용돈지	N007-017
		원료돈지	
	7-3. 식용유지가공품	기타동물성유지	N007-018
혼합식용유		N007-019	
향미유		N007-020	
가공유지		N007-021	
쇼트닝		N007-022	
마가린류		N007-023	
모조치즈		N007-024	
식물성크림		N007-025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N007-026		
8. 면류		생면	N008-001
		숙면	N008-002
		건면	N008-003
		유탕면	N008-004
9. 음료류	9-1. 다류	침출차	N009-001
		액상차	N009-002
		고형차	N009-003
	9-2. 커피	커피	N009-004
	9-3. 과일·채소류음료	농축과·채즙	N009-005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품목코드
		과채주스	
		과채음료	
	9-4. 탄산음료류	탄산음료	N009-006
		탄산수	
	9-5. 두유류	원액두유	N009-007
		가공두유	
	9-6. 발효음료류	유산균음료	N009-008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9-7. 인삼, 홍삼음료	인삼, 홍삼음료	N009-009
9-8. 기타음료	혼합음료	N009-010	
	음료베이스		
10. 특수용도식품	10-1.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유	N010-001
		성장기용 조제유	
	10-2. 영아용 조제식	영아용 조제식	N010-002
	10-3. 성장기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N010-003
	10-4.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영·유아용곡류조제식	N010-004
	10-5. 기타영·유아식	기타영·유아식	N010-005
	10-6.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환자용식품	N010-006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유단백알레르기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10-7.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N010-007	
10-8. 임신·수유부용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	N010-008	
11. 장류		한식메주	N011-001
		개량메주	
		한식간장	N011-002
		양조간장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품목코드
		산분해간장	N011-003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N011-004
		고추장	N011-005
		춘장	N011-006
		청국장	N011-007
		혼합장	N011-008
		기타장류	N011-008
12. 조미식품	12-1. 식초	발효식초	N012-001
		희석초산	
	12-2. 소스류	소스	N012-002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12-3. 카레(커리)	카레(커리)분	N012-003
		카레(커리)	
	12-4.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고춧가루	N012-004
		실고추	
	12-5.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N012-005
		향신료조제품	
	12-6. 식염	천일염	N012-006
		재제소금(재제조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13. 절임류 또는 조림류	13-1. 김치류	김치속	N013-001
		김치	
	13-2. 절임류	절임식품	N013-002
		당절임	
	13-3. 조림류	조림류	N013-003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품목코드
14. 주류		탁주	N014-001
		약주	N014-002
		청주	N014-003
		맥주	N014-004
		과실주	N014-005
		소주	N014-006
		위스키	N014-007
		브랜디	N014-008
		일반증류주	N014-009
		리큐르	N014-010
		기타 주류	N014-011
15. 농산가공식품류	15-1. 전분류	전분	N015-001
		전분가공품	
	15-2. 밀가루 류	밀가루	N015-002
		영양강화 밀가루	
	15-3.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땅콩 버터	N015-003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15-4. 시리얼류	시리얼류	N015-004
	15-5. 찌쌀	찌쌀	N015-005
	15-6. 효소식품	효소식품	N015-006
	15-7. 기타 농산가공품	과채가공품	N015-007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16. 식육가공품	16-1. 햄류	햄	N016-001
		생햄	
		프레스햄	
	16-2. 소시지류	소시지	N016-002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품목코드
	16-3. 베이컨류	베이컨류	N016-003
	16-4. 건조저장육류	건조저장육류	N016-004
	16-5. 양념육류	양념육	N016-005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천연케이싱	
	16-6. 식육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N016-006
	16-7. 식육함유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N016-007
16-8. 포장육	포장육	N016-008	
17. 알가공품류	17-1. 알가공품	전란액	N017-001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17-2. 알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N017-002	
18. 유가공품	18-1. 우유류	우유	N018-001
		환원유	
	18-2. 가공유류	강화우유	N018-002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18-3. 산양유	산양유	N018-003
	18-4. 발효유류	발효유	N018-004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18-5. 버터유	버터유	N018-005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품목코드
	18-6. 농축유류	농축우유	N018-006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18-7. 유크림류	유크림	N018-007
		가공유크림	
	18-8. 버터류	버터유	N018-008
		가공버터	
		버터오일	
	18-9. 치즈류	자연치즈	N018-009
		가공치즈	
	18-10. 분유류	전지분유	N018-010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18-11. 유청류	유청	N018-011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18-12. 유당	유당	N018-012	
18-13.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단백가수분해식품	N018-013	
19. 수산가공식품류	19-1. 어육가공품류	어육살	N019-001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어육소시지	
		기타 어육가공품	
	19-2. 젓갈류	젓갈	N019-002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19-3. 건포류	조미건어포	N019-003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품목코드
		건어포	
		기타 건포류	
	19-4. 조미김	조미김	N019-004
	19-5. 한천	한천	N019-005
	19-6.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N019-006
20. 동물성가공식품류	20-1.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N020-001
		기타동물성가공식품	
	20-2. 곤충가공식품	곤충가공식품	N020-002
	20-3. 자라가공식품	자라분말	N020-003
		자라분말제품	
자라유제품			
20-4. 추출가공식품	추출가공식품	N020-004	
21. 벌꿀 및 화분가공품	21-1. 벌꿀류	벌집꿀	N021-001
		벌꿀	
		사양벌집꿀	
		사양벌꿀	
	21-2. 로얄젤리류	로얄젤리	N021-002
		로얄젤리제품	
21-2. 화분식품	가공화분	N021-003	
	화분함유제품		
22. 즉석식품류	22-1. 생식류	생식제품	N022-001
		생식함유제품	
	22-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N022-002
		신선편의식품	
		즉석조리식품	
22-3. 만두류	만두	N022-003	
	만두피		
23. 기타식품류	23-1. 효모식품	효모식품	N023-001
	23-2. 기타가공품	기타가공품	N023-002

부록 2

수입 금지 품목 리스트

수입 금지 품목 리스트(60개 항목, 2017년 12월)

연번	HS코드	품목
1	02074300	Fatty livers, fresh or chilled
2	02089010	Other meat and edible meat offal, fresh, chilled or frozen of wild animals
3	02091000	Of pigs
4	02099000	Others
5	03057100	Shark fins
6	04100010	Edible products of animal origi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of Wild animals
7	05040031	Guts of other animals for natural food casings of wild animals
8	05040041	Guts other than for natural food castings of wild animals
9	05040051	Bladders & stomachs of Wild animals
10	05051010	Feathers of a kind used for stuffing; down of wild birds
11	05059021	Other feather (excluding for stuffing purpose): of wild birds
12	05059031	Powder and waste of feathers or parts of feathers: of wild birds
13	05059091	Skins and other parts : Of wild birds
14	05061011	Bones, including horn-cores, crushed: Of wild animals
15	05061021	Bone grist :Of wild animals

연번	HS코드	품목
16	05061031	Ossein :Of wild animals
17	05061041	Bones, horn cones & parts thereof, not crushed :Of wild animals
18	05069011	Bone meal Of wild animals
19	05069091	Other :Of wild animals
20	05071010	Ivory
21	05071020	Ivory powder and waste
22	05100091	Ambergris, castoreum, civet and musk; cantharides; bile, whether or not dried; glands of wild animals
23	05119110	Fish nails
24	05119120	Fish tails
25	05119130	Other fish waste
26	05119921	Sinews and tendons Of wild life
27	05119992	Bovine embryo - Of wild life
28	15011010	Lard
29	15012000	Other pig fat
30	15019000	Others
31	15021010	Mutton Tallow
32	15021090	Other
33	15029010	Inrendered fats
34	15029020	Rendered fats or solvent extraction facts
35	15029090	Others
36	15020030	Rendered or solvent extraction fats
37	15020090	Fats of Bovine animals, Sheep or Goat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1503
38	15030000	Lard Stearin, Lard Oil, Oleostearin, Oleo-Oil and Tallow Oil, not Emulsified or Mixed ot otherwise prepared
39	15041099	Other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fish or marine mammal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연번	HS코드	품목
40	15042030	Sperm Oil
41	15042090	Other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fish other than liver oils
42	15043000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marine mammals
43	15060010	Neats Foot Oil and fats from bone or waste
44	15060090	other animal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45	15161000	Animal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46	15171010	Margarine of Animal Origin
47	15179030	Imitation lard of animal origin
48	1518004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boiled, oxidised, dehydrated, sulphurised, blown, polymerised by heat in Vacuum or in inert gas or otherwise chemically modified, excluding those of heading 1516; in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or vegetable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49	15220010	Degras
50	15220020	Soap Stocks
51	15220090	Other
52	35071011	Microbial rennet: Animal rennet
53	35071019	Other enzymes; prepared enzym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54	35071091	Animal rennet
55	35071099	Other animal rennet
56	43021940	Tiger-Cat skins
57	43031010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Of wild animals covered under Wild Life Protection Act,1972
58	43039010	other articles of fur skin of wild animals covered under Wild Life Protection Act, 1972

연번	HS코드	품목
59	8517	Telephone sets, including telephones for cellular networks or for other wireless networks; other apparatus for the transmission or reception of voice, images or other data, including apparatus for communication in a wired or wireless network (such as a local or wide area network), other than transmission or reception apparatus of heading 8443, 8525, 8527 or 8528.
60	96011000	Worked ivory and articles of ivory

출처: 인도 상공부 대외무역국(DGFT)

부록 3

수입 전매 품목 리스트

수입전매품목 리스트(33개 품목, 2017년 12월)

연번	HS코드	품목	비고
1	10011090	Durum Wheat, Other	Import allowed through FCI subject to para 2.11 of Foreign Trade Policy.
2	10019020	Wheat(not seed) for human consumption	
3	10019039	Meslin, other	
4	10020090	Rye other	
5	10040090	Oats, other	
6	10059000	Maize(corn), other Import of maize for use for poultry or animal feed will be permitted to the manufacturers of poultry or animal feed without a licence subject to actual user condition and registration of import contract/letter of credit with NAFED. NAFED shall also monitor actual imports.	
7	10061090	Rice in husk(paddy or rough) other	
8	10062000	Husked(Brown) Rice	
9	10063010	Rice, parboiled	
10	10063020	Basmati Rice	
11	10063090	Other semi milled or wholly milled rice, whether or not polished or glazed	
12	10064000	Broken Rice	
13	10070090	Grain sorghum, other	
14	10081090	Buck wheat, other	

연번	HS코드	품목	비고	
15	10082019	Jawar. other		
16	10082029	Bajra, other		
17	10082039	Ragi (Finger millet) other		
18	10083090	Canary seed, other		
19	10089090	Other Cereals; Other		
20	12030000	Copra		
21	15131100	Coconut(copra) oil and its fractions, Crude oil		
22	15131900	Coconut(copra) oil and its fractions: Other		
23	27101111	Special boiling point spirits (other than Benzene Toluol) with nominal boiling point range 55-115°C		Import allowed through IOC subject to para 2.11 of Foreign Trade Policy, except for the companies who have been granted rights for marketing of transportation fuels in terms of Ministry of P&NG's Resolution No. P-23015 /1/2001-MKT. Dated 8.3.2002 including HPCL, BPCL &IBP who have been marketing transportation fuels before the date.
24	27101112	Special boiling point spirits (other than Benzene, Benzol, Toluene and Toluol) with nominal boiling point range 63-70° C		
25	27101113	Other special boiling point spirits (other than Benzene, Benzol, Toluene and Toluol)		
26	27101119	Other motor spirit		
27	27101120	Natural gasoline liquid (NGL)		
28	27101190	Other natural gasoline liquid	Import allowed through IOC subject to para 2.11 of Foreign Trade Policy.	
29	27101910	Superior Oil(SKO)	Import subject to para 2.11 of Foreign	

연번	HS코드	품목	비고
30	27101920	Aviation turbine fuel(ATF)	Trade Policy and condition No.2 at import licencing note. Import allowed through IOC subject to para 2.11 of Foreign Trade Policy, except for the companies who have been granted rights for marketing of transportation fuels in terms of Ministry of P&NG's Resolution No. P-23015/1/2001-MKT. Dated 8.3.2002 including HPCL, BPCL &IBP who have been marketing transportation fuels before this date.
31	27101930	High Speed Diesel(HSD)	
32	27101940	Light Diesel Oil(LDO)	Import allowed through IOC subject to para 2.11 of Foreign Trade Policy.
33	31021000	Urea, whether or not in aqueous solution	Import allowed through STC, MMTC and India Potash Limited subject to para 2.11 of Foreign Trade Policy.

출처: 인도 상공부 대외무총역국(DGFT)

부록 4

인도의 화물 운송 관련 사항

인도는 국토가 광활하여 항공편 및 항만이 전국에 산재해 있음

항공운송은 뉴델리, 뭄바이 (구 Bombay), 콜카타(구 캘커타), 첸나이(구 마드라스) 등 4대 거점도시와 더불어 아메다바드(구자라트 주도), 방갈로르(중남부 카르나타카 주도) 등 주요 대도시에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음

델리와 뭄바이의 경우 미주, 유럽, 중동, 아시아 각국과 직항편이 매일 운행되고 있으며, 한국과 직항은 아시아나 항공이 델리-서울 주 3회 운행하고 있고, 대한항공은 뭄바이-서울 주 3회 운항함. 하지만 대부분의 항공사가 밤 늦은 시간에 도착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음

이외에 외국항공사 항공편정보는 다음과 같음

항공사별 운행구간 및 운항횟수

항공사	운영 구간	운항 횟수
에어인디아	뭄바이-델리-홍콩-서울	주 4회
타이항공	델리-방콕-서울	주 20회
	뭄바이-방콕-서울	주 10회
싱가포르항공	뭄바이-싱가폴-서울	주 14회
	델리-싱가폴-서울	주 14회
말레이시아항공	뉴델리-쿠알라룸푸-서울	주 14회
	첸나이-쿠알라룸푸-서울	주 14회
	뭄바이-쿠알라룸푸-서울	주 12회
제트 에어웨이 (대한항공 코드쉐어)	뭄바이-싱가폴-서울	주 14회
	뭄바이-태국-서울	주 3회

인도의 공항시설은 낙후되어 있었으나, 뉴델리 공항은 2010년 커먼웰스게임을 대비해 국제입찰을 통해 공항시설 현대화 공사를 추진했으며, 현재는 4대도시 인 델리, 뭄바이, 방갈로르, 첸나이는 현대적인 국제공항 시설을 완비함

인도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안선이 길어 서해안의 칸들라, 뭄바이, 모르무가오, 뉴망갈로르, 투티코린, 코친과 동해안의 첸나이, 비사카, 파트남, 파라디프, 할디아, 콜카타 등 많은 항구가 산재해 있음

가장 대표적인 항구는 뭄바이와 첸나이며, 우리나라 화물 대부분이 이들 두 항구를 이용하고 있음

특히 뭄바이 항은 제1항구로 무역 화물 물동량의 60% 이상을 소화하고 있으나, 항구시설의 노후로 화물의 적체가 심각하여 장비 현대화는 물론 추가 항구개발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한국에서 델리까지의 운송은 주로 뭄바이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해상운송 비용이 약 800달러, 육상운송(IHC) 비용이 약 800-1,000 달러, Port Charge(THC 등)가 약 400-500달러 가량임

* 항구 사용료 관련 내용: <http://mumbaiport.gov.in/>

뭄바이에서 델리까지의 육상운송은 철도를 이용하게 되며, 따라서 육상 운송비는 다른 항구에 비해 싼 편임

예를 들어 캘커타를 이용하게 되면 철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상 운송비는 비슷하나 육상 운송비는 훨씬 비싸지게 됨

* 철도 사용료 관련: www.fois.indianrail.gov.in, www.indianrailways.gov.in

인도는 육상 운송여건이 열악하여 한국에서의 해상운송 비용보다 인도 내 육상 운송비용이 비슷하거나 더 비싸지게 됨

한편 통관을 위해서는 통관 에이전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수수료는 화물가치의 0.5-2% 가량이 보편적임

운송 기간은 한국에서 뭄바이까지 약 17-18일 정도, 그리고 뭄바이에서 델리까지 3-4일 정도 소요됨

부록 5

인도 통관 및 관세 기타 사항

<p>한-인도 AEO 제도 (양국 관세청)</p>	<p>(AEO의 의미)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관세당국이 기존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상 검사를 실시하던 방식에서 수출입자, 곧 기업을 검사의 대상으로 하는 제도임</p> <p>(AEO혜택) AEO 인증을 받은 기업은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1) 수입검사율 축소, 2) 우선통관 및 검사, 3) 서류심사 간소화, 4) 비상시 우선조치 및 통관, 5) 세관연락관 상설(통관애로사항 지원)</p> <p>(AEO MRA의 의미) MRA는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약자로, 일국에서 AEO인증을 받으면 MRA체결국에서도 AEO자격을 인정하는 제도. 한국은 현재, 인도,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MAR를 체결하여 전면이행하고 있음</p> <p>AEO획득과 관련된 문의사항 * (한국, 관세청) 서울본부세관(02-510-1373, 85-88), 부산본부세관(051-620-6957-59), 인천본부세관(032-452-3633,38), 대구본부세관(053-230-5181, 82), 광주본부세관(062-975-8194) * (인도, 국제관세총국, Directorate of International Customs) Jeevan Bharti Building; 10th Floor; Tower-2 Connaught Place, New Delhi</p>
<p>인도의 통관절차</p>	<p>(최근 트렌드) 인도정부는 2016년 무역원활화협정(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를 받아들여 인도 관세법(Customs Act) 상에 반영하였으며, 이와</p>

<p>(딜로이트 인디아 회계법인)</p>	<p>더불어 모디정부의 기업환경 개선책에 따라 무역 원활화를 위한 통관, 관세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p> <p>* 주요 사례 : AEO제도 도입(2016년), 통합(수출입)신고 시스템 도입(2016년), 종이없는 통관행정: E-Sanchit(2017년), 사전심사제도 개선(2018년) 등</p> <p>(사전심사제도) 한국의 사전품목분류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수입관세율, 관세감면, 원산지규정 등을 사전에 조회할 수가 있음. 11개 통관관할 사무소 내에 Advance Ruling Authority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을 통해 서비스 사용가능</p>
<p>HS분쟁사 례 (한국 관세청)</p>	<p>(내용) 관세청은 대전 관세청 내에 관세평가분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으로 인한 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HS국제분쟁센터'를 운영하고 있음</p> <p>(배경) 품목분류의 국가 간 통일성 및 무역원활화를 위해 HS코드를 도입하였으나, 정책적 혹은 관습적인 사유로 인하여 상품에 대한 HS코드의 적용에 달라질 수 있음</p> <p>(대응방법) HS품목분류 적용분쟁 발생 시, 1) 1차적으로 업체가 현지세관을 접촉하여 설득함. 선진지역의 경우 품목분류사전회의 시 신청을 통해 예방조치 획득, 2) 분쟁국 관할 관세관을 통해 현지 세관과 접촉, 서한문 등을 발송, 3) 상호교섭에 의한 분쟁해결을 우선해야 하며, WCO 의제상정은 분쟁국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이에 주의해야 함</p> <p>HS국제분쟁신고센터 :042-714-7535(대표번호)</p>
<p>인도의 관세감면 제도 (딜로이트 인디아 회계법인)</p>	<p>인도는 무역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크게 1) FTA협정, 2) 대외무역정책(Foreign Trade Policy), 3) 인도 관세법(Customs Act), 4) 기타 인센티브로 구분할 수가 있음</p> <p>인도 관세법 내에서는 프로젝트와 연계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전승인에</p>

기반하여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해주고 있음. 이외에도 재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제도를 운영함

대외무역정책에서는 수출 혹은 투자조건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투자유치(Set up)와 관련해서는 자유무역지대(SEZ), 수출조건부 인센티브(EOU)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진흥을 위하여 자본재 수입과 관련해서는 EPCG(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원료 수입과 관련해서는 DFIA(Duty Free Import Authorization) 및 Advance Authorization 등의 제도 활용이 가능함
이외에도 국내신용장 제도와 AEO 등이 활용 가능함.

부록 6

주요 식품 관세율 현황

HS 코드	HS 기준	FTA 적용 여부	기본관세	CEPA 관세	원산지 기준
2103.9010	고추장	O	기본관세:30% 사회보장세: 기본관세의 10% 수입부가가치세: 12% 총관세: 48.96%	양허관세: 5% 사회보장세: 양허관세의 10% 수입부가가치세:12% 총관세: 18.16%	역내 부가가치세40% 초과 및4자리 세번변경기준
2009.8990	음료 (기타)	O	기본관세: 50% 사회보장세: 기본관세의 10% 수입부가가치세: 12% 총관세: 73.60%	양허관세: 5% 사회보장세: 양허관세의 10% 수입부가가치세:12% 총관세: 18.16%	역내 부가가치세40% 초과 및4자리 세번변경 기준
2008.3010	음료 (꿀 성분)	X	기본관세:30% 사회보장세: 기본관세의 10% 수입부가가치세: 12% 총관세: 48.96%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904.9000	스낵 (기타)	X	기본관세:30% 사회보장세: 기본관세의 10% 수입부가가치세: 18%	해당 없음	해당 없음

HS 코드	HS 기준	FTA 적용 여부	기본관세	CEPA 관세	원산지 기준
			총관세: 56.94%		
0808.3000	배 (날 것)	X	고시관세: 30% 사회보장세: 기본관세의 10% 수입부가가치세: 0% 총관세: 33%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록 7

주요 국가 통관 거부 현황

주요 수출국 대한민국 식품기업 통관거부 유형별 자료현황

							
	미국	유럽 연합	일본	중국	대만	홍콩	호주
 라벨링/포장	119	0	0	6	0	2	0
 서류미비	0	0	0	7	0	0	0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	48	1	9	11	5	0	0
 표준미준수	169	4	0	0	0	0	0
 식품변질	12	0	0	0	0	0	0
 사용상의 위험	0	5	0	0	0	0	0
 기타	11	0	0	0	0	0	0

출처: Tradenavi 통합무역정보서비스(한국무역협회), 2018년 기준

주요 수출국 대한민국 식품기업 통관거부 업종별 자료현황

							
	미국	유럽 연합	일본	중국	대만	홍콩	호주
 가공식품	66	0	6	17	1	2	0
 의료기기 및 의약품	60	0	0	0	0	0	0
 수산물	42	1	2	0	0	0	0
 잡제품	62	0	0	22	0	0	0
 농산물	22	0	1	2	4	0	0
 임산물	0	0	0	0	0	0	0
 기계	2	0	0	0	0	0	0
 생활용품	32	0	0	9	1	0	0
 축산물	0	0	0	0	0	0	0
 전기/전자	0	0	0	0	0	0	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0	6	0	0	0	0	0
 섬유/직물	0	0	0	0	0	0	0
 플라스틱/고무/ 가죽	0	0	0	0	0	0	0
 화학공업	1	0	0	0	0	0	0
 교육	0	0	0	0	0	0	0

출처: Tradenavi 통합무역정보서비스(한국무역협회), 2018년 기준

2019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인도 종합보고서

2019년 12월 인쇄

2019년 12월 발행

편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발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TEL: (061)931-0709 FAX: (061)931-0799

본 책자의 통계자료 및 분석내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기획부(061-931-0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자료는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www.aTFIS.or.kr)을 통해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알림】

본지에 기재된 분석내용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견해이며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식적 견해와는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책의 내용이나 각종 자료를 복제 및 전제하거나 웹상에 수집 및 게시하는 행위, 판매 등의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